법 률	시 행 령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36호]	**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재정경제부]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회계년도)** 국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②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등은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각종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등은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급여·여비·수수료등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4. 사용료·보관료·전기료등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5. 공사·제조비·물건매입대가·운임등과 보조금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수표 또는 국고금 대체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법 률	시 행 령
제4조 (출납기한과 회계년도소속구분) ①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년도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총사업비의 결정 및 사업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완성에 2년이상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1998.2.28, 1999.5.24> **제4조 삭제<1994.6.30>** **제2절 출납정리기한** **제5조 삭제 <2002.12.30>** **제6조 삭제 <2002.12.30>** **제7조 삭제 <2002.12.30>**
제5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7조 (기금의 설치) ①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삭제 <1991·12·31> ④삭제 <1991·12·31> ⑤삭제 <1991·12·31> ⑥삭제 <1991·12·31> ⑦삭제 <1991·12·31> **제8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제10조 (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국가의 채권과 채무)** ①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갱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제13조 (국가재산의 처분)** ①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재산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4조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 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1999.2.5, 1999.5.24> ④삭제 <2002.12.30> **제15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①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9.2.5, 1999.5.24> ②삭제 <1993·12·31> **제16조 (중·장기계획의 수립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삭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1999.5.24>	

법 률	시 행 령
③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17조 삭제 <1993·12·31>**	
제2장 예 산 **제1절 총 칙**	**제2장 예 산** **제1절 총 칙**
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률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8조 (차관물자대의 예산초과지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를 지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1994.12.23, 1998.2.28, 1999.5.24> ②삭제<1994.6.30>
제19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9조 (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20조 (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21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억원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본조신설 1999.4.9]
제22조 (계속비) ①완성에 삭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삭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국고채무부담행위) ①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절 예산의 편성**
제25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다음 년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년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제3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에는 법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3·9·23, 1994·12·23, 1998·2·28, 1999.5.24> 1.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 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별 설명서 3. 계속비의 사항별 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운영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계획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기타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 및 그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각목 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

법 률	시 행 령
	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공정표에는 세부단위사업별 사업비 및 그 발주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9·23, 1994·12·23, 1998·2·28, 1999.5.24>
제26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납입금의 한도액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납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년도 및 상환년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28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29조 (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독립기관"이라 한다)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독립기관예산의 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감사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30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열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열명서 4.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년차표에 관한 명세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년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년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장황에 관한 명세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리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11. 기타 재정의 장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법 률	시 행 령
제32조 (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추가갱정예산안) ①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5조 (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3절 예산의 배정** **제13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분기별로 이를 구분·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4조 (예산배정계획의 작성)**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법 률	시 행 령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 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9.2.5, 1999.5.24>	**제15조 (예산배정계획의 변경)**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2.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6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6·30>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제16조의2(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 법 제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4.9, 1999.5.24> 1. 국·사립대학 재정지원사업 2. 경지정리사업 3. 농업용수개발사업

법 률	시 행 령
	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5. 하천치수사업 6. 일반국도건설사업 7. 특정연구개발사업 7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인수사업 8.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본조신설 1994·6·30]
	제4절 예산의 집행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17조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또는 전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36조의2 (예산성과금 지급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삭제<1994.6.30>**

법 률	시 행 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37조 (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년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9.2.5>	**제19조 (세출예산의 이월대상 및 명세서의 내용)**
1. 명시이월비	①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신설 1994·6·30, 1995·7·6, 1999.4.9>
2.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1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법 률	시 행 령
②계속비의 년도별 년부액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년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장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신설 1999.4.9>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신설 1999.4.9, 1999.5.24> ④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제39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5절 예비비 및 수입대체경비** **제20조 (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법 률	시 행 령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41조 (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22조 (수입대체경비)**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의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 · 12 · 23, 1998 · 2 · 28, 1999.4.9, 1999.5.24, 2002.12.30> 1.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1999.5.24, 2002.12.30> ④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초과지출경비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상적 경비 등 간접적인경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9.4.9, 1999.5.24, 2002.12.30>
제3장 결 산	**제3장 결 산**
제42조 (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43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제23조 (세입세출결산보고서등의 제출)**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법 률	시 행 령
②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2.12.30>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년도 이월액 자. 불용액	3.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4.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3호의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을,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연부액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④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국가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08조에 규정된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4・6・30,1994・12・23, 1998・2・28, 2002.12.30>
제44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년도 6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감사원은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년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24조 삭제 <2002.12.30>**
제45조 (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46조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년도까지 당해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③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일반회계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 ①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년도까지 당해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12, 1999.1.21, 1999.12.31>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2.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상환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의 규모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본조신설 1991·12·27]	

법 률	시 행 령
제4장 삭 제 <2002.12.30>	제4장 삭제 <202.12.30>
	제1절 삭제 <2002.12.30>
제48조 삭제 <2002.12.30>	
제49조 삭제 <2002.12.30>	제25조 삭제 <2002.12.30>
제50조 삭제 <2002.12.30>	
제51조 삭제 <2002.12.30>	제26조 삭제 <2002.12.30>
제52조 삭제 <2002.12.30>	
제53조 삭제 <2002.12.30>	
	제27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28조 삭제 <2002.12.30>
제54조 삭제 <2002.12.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29조 삭제 <2002.12.30>
	제30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3절 삭제 <2002.12.30>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2.12.30>
	제4절 삭제 <2002.12.30>
	제33조 삭제 <2002.12.30>
제55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34조 삭제 <2002.12.30>
	제5절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1999.2.8>
제5장 수입 및 지 출 <개정 2002.12.30>	제5장 수입 및 지출 <개정 2002.12.30>
제1절 총칙	제1절 삭제 <2002.12.30>
제56조 (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6조 삭제 <2002.12.30>**
제57조 삭제 <2002.12.30>	**제37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38조 삭제 <2002.12.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39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2절 삭제 <2002.12.30>	
제58조 삭제 <2002.12.30>	
제59조 삭제 <2002.12.30>	**제40조 (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 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년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999.2.5, 1999.5.24>	**제41조 삭제 <2002.12.30>** **제42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1.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법 률	시 행 령
제3절 지 출	2. 제1호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제61조 삭제 <2002.12.30>	제3절 삭제 <2002.12.30>
제62조 삭제 <2002.12.30>	제43조 삭제 <2002.12.30> 제44조 삭제 <2002.12.30> 제45조 삭제 <2002.12.30>
	제3절의2 삭제 <2002.12.30>
	제46조 삭제 <2002.12.30> 제46조의2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46조의3 삭제 <2002.12.30> 제46조의4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46조의5 삭제 <2002.12.30> 제46조의6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46조의7 삭제 <2002.12.30> 제46조의8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46조의9 삭제 <2002.12.30> 제46조의10 삭제 <2002.12.30> 제46조의11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46조의12 삭제 <2002.12.30>
	제4절 삭제 <2002.12.30>
	제47조 삭제 <2002.12.30>
	제48조 삭제 <2002.12.30>
제63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64조 삭제 <2002.12.30>	제49조 삭제<1999.4.9> 제50조 삭제 <2002.12.30> 제5절 삭제 <2002.12.30>
제65조 삭제 <2002.12.30>	제51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66조 삭제 <2002.12.30>	제52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53조 삭제 <2002.12.30> 제54조 삭제 <2002.12.30> 제55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67조 삭제<1999.2.5>	
	제56조 삭제 <2002.12.30>
제68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57조 삭제 <2002.12.30> 제58조 삭제 <2002.12.30>
제69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70조 삭제 <2002.12.30> 제71조 삭제 <2002.12.30>	제59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72조 삭제 <2002.12.30>	
제6장 삭제<1995·1·5>	제6절 삭제 <2002.12.30>
제73조 삭제 <1995·1·5>	제60조 삭제 <2002.12.30>
제74조 삭제 <1995·1·5>	제61조 삭제 <2002.12.30>
제75조 삭제 <1995·1·5>	

법 률	시 행 령
제76조 삭제 <1995·1·5>	제62조 삭제 <2002.12.30>
제77조 삭제 <1995·1·5>	제7절 <삭제 1999.2.8>
제78조 삭제 <1995·1·5>	제63조 삭제<1999.2.8>
제79조 삭제 <1995·1·5>	제6장 삭제 <1995.7.6>
제80조 삭제 <1995·1·5>	제64조 삭제 <1995.7.6>
제81조 삭제 <1995·1·5>	제65조 삭제 <1995.7.6>
제82조 삭제 <1995·1·5>	제66조 삭제 <1995.7.6>
제83조 삭제 <1995·1·5>	제67조 삭제 <1995.7.6>
제84조 삭제 <1995·1·5>	제68조 삭제 <1995.7.6>
제85조 삭제 <1995·1·5>	제69조 삭제 <1995.7.6>
제86조 삭제 <1995·1·5>	제70조 삭제 <1995.7.6>
제87조 삭제 <1995·1·5>	제71조 삭제 <1995.7.6>
제88조 삭제 <1995·1·5>	
제89조 삭제 <1995·1·5>	
제90조 삭제 <1995·1·5>	

법 률	시 행 령
제91조 삭제 <1995·1·5>	제72조 삭제 <1995.7.6>
제92조 삭제 <1995·1·5>	제73조 삭제 <1995.7.6>
제93조 삭제 <1995·1·5>	제74조 삭제 <1995.7.6>
제94조 삭제 <1995·1·5>	제75조 삭제 <1995.7.6>
제95조 삭제 <1995·1·5>	제76조 삭제 <1995.7.6>
	제77조 삭제 <1995.7.6>
제7장 시 효	
	제78조 삭제 <1995.7.6>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79조 삭제 <1995.7.6>
	제80조 삭제 <1995.7.6>
	제81조 삭제 <1995.7.6>
제9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82조 삭제 <1995.7.6>
	제83조 삭제 <1995.7.6>
제98조 (시효중단의 효력)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4조 삭제 <1995.7.6>
	제85조 삭제 <1995.7.6>
	제86조 삭제 <1995.7.6>

법 률	시 행 령
	제87조 삭제 <1995.7.6>
	제88조 삭제 <1995.7.6>
	제89조 삭제 <1995.7.6>
	제89조의2 삭제 <1995.7.6>
	제90조 삭제 <1995.7.6>
	제91조 삭제 <1995.7.6>
	제91조의2 삭제 <1995.7.6>
	제92조 삭제 <1995.7.6>
	제93조 삭제 <1995.7.6>
	제94조 삭제 <1995.7.6>
	제95조 삭제 <1995.7.6>
	제96조 삭제 <1995.7.6>
	제97조 삭제 <1995.7.6>
	제98조 삭제 <1995.7.6>
	제99조 삭제 <1995.7.6>

법 률	시 행 령
	제100조 삭제 <1995.7.6>
	제101조 삭제 <1995.7.6>
	제102조 삭제 <1995.7.6>
	제103조 삭제 <1995.7.6>
	제104조 삭제 <1995.7.6>
	제105조 삭제 <1995.7.6>
	제106조 삭제 <1995.7.6>
	제107조 삭제 <1995.7.6>
	제108조 삭제 <1995.7.6>
	제109조 삭제 <1995.7.6>
	제110조 삭제 <1995.7.6>
	제111조 삭제 <1995.7.6>
	제112조 삭제 <1995.7.6>
	제113조 삭제 <1995.7.6>
	제114조 삭제 <1995.7.6>

법 률	시 행 령
	제115조 삭제 <1995.7.6>
	제116조 삭제 <1995.7.6>
	제117조 삭제 <1995.7.6>
	제118조 삭제 <1995.7.6>
	제119조 삭제 <1995.7.6>
	제120조 삭제 <1995.7.6>
	제121조 삭제 <1995.7.6>
	제122조 삭제 <1995.7.6>
	제123조 삭제 <1995.7.6>
	제124조 삭제 <1995.7.6>
	제125조 삭제 <1995.7.6>
	제126조 삭제 <1995.7.6>
	제127조 삭제 <1995.7.6>
	제128조 삭제 <1995.7.6>
	제129조 삭제 <1995.7.6>
	제130조 삭제 <1995.7.6>

법 률	시 행 령
제8장 국고금과 유가증권	제7장 유가증권 <개정 2002.12.30>
	제1절 삭제 <2002.12.30>
제99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31조 삭제 <2002.12.30>**
제100조 삭제 <2002.12.30>	**제132조 삭제 <2002.12.30>**
	제133조 (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2절 유가증권
	제134조 (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101조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명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135조 (금융기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4.9>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다만,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제3절 한국은행의 계산보고와 출납증명
	제136조 삭제 <1994.6.30>
	제137조 삭제 <2002.12.30>
제102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38조 (유가증권 수급계산서의 작성과 제출)**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103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9장 출납공무원	**제8장 출납공무원** **제1절 총칙**
제104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139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0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0조 삭제 <2002.12.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141조 삭제 <2002.12.30>
제10장 기록과 보고	**제142조 삭제 <2002.12.30>**
제106조 (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143조 삭제 <2002.12.30> 제144조 삭제 <2002.12.30> 제145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107조 (회계보고와 事業報告<개정 2002.12.30>)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9장 장부 및 보고서류 등** **제146조 삭제 <2002.12.30>** **제147조 (장부의 비치<개정 2002.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6・30>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2의2.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148조 삭제 <2002.12.30>** **제149조 삭제 <2002.12.30>** **제149조의2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150조 (한국은행이 비치할 장부) 한국은행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3.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4. 삭제 <2002.12.30> 5. 삭제<1999.4.9> 6.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 **제151조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개정 2002.12.30>)** ①삭제 <2002.12.30> ②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 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2조 (사업집행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6·30, 1994·12·23, 1998·2·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보고서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고 매분기 경과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0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09조 (재정장황에 관한 보고)**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53조 삭제 <2002.12.30>
	제154조 삭제 <2002.12.30>
	제155조 삭제 <2002.12.30>
	제156조 삭제 <2002.12.30>
	제157조 삭제 <2002.12.30>
	제158조 삭제 <2002.12.30>
	제159조 삭제 <2002.12.30>
제11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1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 (채무보증)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명·상환 또는 회수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2, 1994·12·23, 1998·2·28>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법 률	시 행 령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2, 1994·12·23, 1998·2·28>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 채무자 및 채권자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111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을 립안할 때에는 예산에 관한 법령은 기획예산처장관, 회계에 관한 법령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02.12.18>
제112조 (다른 법령에 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으로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 (보증채무의 관리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113조 삭제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제114조 삭제 <2002.12.30>	
제115조 (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16조 (특별회계의 특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7조 (예산집행의 감독) 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과 회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회계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118조 (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2조 (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2·5·11>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119조 삭제 <2002.12.30>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63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2.12.30>	
제1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3조 삭제 <2002.12.30>	
제1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4조 (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한 사항)** 이 영에 정하는 것외에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2002.12.30>

법 률	시 행 령
부칙 <제4102호,1989.3.31>	부칙 <제12866호,198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제40조제4항,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76조 및 제81조제3항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낙찰자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계약에 한하여 1990년 3월 31일까지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적격자로 하여 낙찰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를 낙찰자로 하고, 2인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적격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제2항"을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를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4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의2중 "시행령 제65조"를 "시행령 제56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시행령 제121조제1항"을 "시행령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③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를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법 률	시 행 령
부칙 <제4445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3.12.31>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46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4659호,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예산회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2조제2항"을 "예산회계법 제2조"로 한다. ⑤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⑥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6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의2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의3 및 제157조의4"를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시행령 제157조의3"을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중 "법 제48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시행령 제157조의4"를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법 제58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⑨재정증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예산회계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2조"로 한다. ⑩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 제89조"를 "예산회계법 제7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0조의2"를 "예산회계법 제74조"로 한다. ⑪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제2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14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중 "계약 및"을 삭제한다. 제123조중 ", 계약관"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⑫조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를 "예산회계법 제51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1조 또는 동법 제35조"를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로 한다. 제51조제5호중 "예산회계법 제66조"를 "예산회계법 제69조"로 한다.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063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⑫ 생략 ⑬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 제6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4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한다. ⑩ 내지 ⑪생략
부칙(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5662호,1999.1.21>	
제1조 (시행일)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742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내지 제5항, 제3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3항·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106조 본문, 제10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1조 및 제117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와"를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가"를 "기획예산처장관이"로 하고,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한다.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3247호,199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의 범위)**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 및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칙 <제13253호,199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법 률	시 행 령
②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②내지 <16>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中央官署의 長의 定義 및 收入의 직접 사용금지)"를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중 "第6條"를 "국고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부칙 <제13640호,1992.5.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853호,1993.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01호 기술용역육성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980호,1993.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295호,199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마목중 "第41條第1項 但書"를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48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支出"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6조 앞의 "第1節 總則"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다음의 "第2節 支出原因行爲"를 삭제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61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및 제5장제4절(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國庫金과 有價證券"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03조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동계약 대상자 제한규정의 유효기간)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8호, 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 및 제15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1항제4호, 제55조제1항내지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7호, 제58조제1항제13호·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0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8조제4항, 제89조제3항, 제89조의2제3항, 제90조제1항제7호, 제91조제3항, 제91조의2제2항, 제93조제1항제11호, 제100조제1항·제2항, 제102조, 제109조, 제114조제1항, 제119조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 제131조, 제132조제2항·제3항, 제133조, 제134조제2항·제3항,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제2항, 제143조제1항, 제146조제1항·제2항, 제149조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2항, 제158조,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내지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161조 및 제164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03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106조 (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의 제목중 "재정보고"를 "회계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14조・제119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81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 제83조, 제87조제1항, 제88조제3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제1항 본문·제1호·제5호·제3항, 제91조의2제1항, 제93조제1항제7호, 제95조제3항, 제104조제4항제5호, 제108조제2항, 제111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제3항, 제112조제6항, 제120조제1항, 제124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6조, 제128조제2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48조제3항중 "재무부"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중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월별자금계획"을 "의한 월별자금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을 "당해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월별자금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 제93조제1항제11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26> 내지 <327>생략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50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10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와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계약관"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부칙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2> 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16호,199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조·제11조제1항 본문·제8호 및 제4항·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항·제2항·제16조의2·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0조·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 및 제15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1조·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35조제5항·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7조제1항 및 제3항·제38조제1항 내지 제4항·제40조제2항·제44조제1항·제48조제3항·제52조제2항·제54조제1항제4호·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제56조제2항·제57조제1항제7호·제58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제63조제2항·제131조·제132조제2항 및 제3항·제133조·제134조제2항 및 제3항·제137조제1항 및 제2항·제138조·제139조·제141조제2항·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 및 제2항·제149조제2항·제152조제1항·제155조제2항·제158조·제159조제2항·제160조제1항 내지 제5항·제161조 및 제16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예산청장"으로한다. 제1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당해 중앙관서의 장"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0조제2항·제54조제2항·제132조제1항 및 제140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법 률	시 행 령
	부칙(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제16108호,19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5절(제35조) 및 제5장제7절(제63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228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예비타당성조사비예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동항제8호 본문·제4항 전단,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 본문, 제152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109>생략

법 률	시 행 령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8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 제목·제18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의 기관명칭에 관한 사항 및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중 "농산물검사소 출장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로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무관리규정) <제17129호,200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단서중 "전자서명"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17802호,2002.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무관리규정) <제17811호,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

법 률	시 행 령
	한 전자이미지서명"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변경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월별자금변경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1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장제1절(제36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5장중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법 제59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1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5장제3절(제43조 내지 제45조), 제5장제3절의2(제46조 내지 제46조의 12), 제5장제4절(제47조 내지 제50조), 제5장제5절(제51조 내지 제59조) 및 제5장제6절(제60조 내지 제6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다음의 "제1절 국고금"을 삭제한다. 제131조 및 제1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7조를 삭제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140조를 삭제한다. 제8장제2절(제141조 내지 제145조)을 삭제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7조의 제목 "(세입·세출부의 비치)"를 "(장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8조·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 제목중 "체신관서등"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3조 내지 제1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164조중 "수입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를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로 한다. ②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재정경제부]**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률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4·11·23]
제2조 (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소관으로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2조 (예비비의 사용신청)**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제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3조 (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부칙 <제1349호,1963.5.3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 이전에 예비비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상 긴급불가피하게 사용한 경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다.	**제4조 (지출)**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 (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칙 <제4180호,196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7호,1974.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기획예산처소관"으로 한다. ④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3>내지 <327>생략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9>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재정경제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4.61 대통령령 제1835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12.12 재정경제부령 제335호]**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량곡관리법·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각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립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으로 각각 칭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공무원과 위탁하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계약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제2장 예정가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제7조에서 이동<1996.12.31>]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 당해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품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9>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9.9>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9.9.9>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8.2.23, 1999.9.9>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1999.9.9>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11 12. 용역: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99.9.9> 1. 공사:100분의 15 2. 제조·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9.9>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④삭제<1999.9.9> **제10조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개정 1999.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3장 계약의 방법**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 (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9.9, 2000. 12. 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9.9> 1.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1999.9.9>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인감증명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02.8.24]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 (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1999.9.9>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33일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이 5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하며,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3.12.11> ⑦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와 50억원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5조 (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12.2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⑤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제19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대상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제22조 (경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대상)** 영 제1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2.3.25>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상수도(직경 1,00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있다. <신설 1998.2.2> **제19조(부대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3.25]	16. 하수도(단면적 20평방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공용청사(연면적 20,000평방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공동주택(16층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②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2.3.25> [전문개정 1996.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2.2>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1.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이내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이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2조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3.12.11>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제27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1999.9.9> 1. 공사 가.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삭제<1999.9.9>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28조 삭제<1999.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제25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1999.12.31, 2000.7.27, 2000.12.27, 2003.12.11, 2004.4.6>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제29조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개정 1998. 2. 23>)**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1. 계약의 목적 2. 품명·규격·수량·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지명상대자의 주소·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태 현황 6.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또는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리의 주민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④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4556호 임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아목, 제1항제8호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3.12.1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 **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9조 (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2조 (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삭제<2000.12.30> ②삭제<2000.12.30> ③영 제3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9.9, 2000.12.30> 1.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34조 (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낙찰자의 낙찰단가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개정 2000.12.27>)**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개정 1998.2.23>)**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1. 계약의 목적 2.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단가 또는 금액의 산출기초와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면허등의 번호 5. 계약상대자의 업태현황 6. 계약서안 7.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제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 제7호 다목·라목·바목 내지 아목, 제8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8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②삭제 <2002.7.30>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9>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제38조 (입찰공고)** 영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9.9.9> 1. 공사의 경우: 3억원 2. 물품제조의 경우: 1억원 3.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천만원 **제39조 (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 (입찰 참가신청)**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1999.9.9>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개정 1996.12.31>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12.31]	**제42조 (입찰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개정 1996.12.31>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제9조 (입찰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락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7조 (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1.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43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아회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6.30, 2000.12.27, 2003. 12. 11>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한 법인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1999.9.9> 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9.9> **제44조 (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립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3.12.11>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7. 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2.7.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7.30>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촵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2.2, 1999.9.9>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7.30> [전문개정 2000.12.27]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락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락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리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열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 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③삭제 <1999.9.9> ④삭제 <1999.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삭제 <1999.9.9>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절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지식기반사업"이라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2003.12.11>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다만,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03.12.11>	
	제44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제46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	**제47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할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3.12.11> **제47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서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8조 (개발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③삭제<2000.12.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48조 (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②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12.12>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0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 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삭제 <1999.9.9> ⑤삭제 <1999.9.9>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1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⑧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⑨삭제 <1998.2.2>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⑪삭제 <2000.12.27> [전문개정 1996.12.31]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이후일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④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후 60일이상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7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 함께 당해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당해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당해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제58조 (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9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61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 (보증금의 반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 (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2>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제65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	**제66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개정 1996.12.31>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계약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1999.9.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⑥삭제<1996.12.31>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제13조 (감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4조 (감독)**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으로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	**제67조 (감독 및 검사)**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 (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제55조 (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④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68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9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⑦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1999.9.9> **제56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 (대가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삭에 따른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 (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8조 (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1> **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 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②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9.9.9>
	제61조 (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	**제71조 (하자검사)** 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03.12.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999.9.9, 2004.4.6>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8.2.23>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9.9, 2002.12.30>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제7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1.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가 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2003.12.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해상장유가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직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하자보수보증금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7>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1996.12.31> ②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text{품목조정율}=\frac{\text{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text{계약금액}}$ 2. 등락폭=계약단가 × 등락율 $3.\ \text{등락율}=\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계약체결당시가격}}{\text{계약체결당시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0조 (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2002.12.30>	**제6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율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1999.9.9>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2조 (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 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금급율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다.<신설 1999.9.9>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9.9>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 요령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9.9.9>
제23조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0조 (개산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 (종합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6.12.31> **제71조 (종합계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제72조 (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제7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74조의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2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26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제75조 (지체상금율)**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000분의 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3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9.9>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7조 (불정당업자의 입찰삼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삭제<1997.12.13>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찹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2.2, 1999.9.9, 2000.12.27>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찹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찹전기공사업법·찹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찹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찹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제28조 (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삼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락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등<개정 1999.9.9>)**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9.9>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②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7>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1조 (심사·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후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1. 업체(상호)명칱주소칱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칱주민등록번호칱사업자등록번호칱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⑨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촵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9.9> ⑪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9.9> 15.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신설 2003.12.11> **제77조 삭제 <1998.2.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제79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개정 1996.12.31>)**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입찰 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8.2.23>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예정금액 4. 공사기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준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제79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본계획서에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20일까지 공사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 (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집행계획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개정 1999.9.9>)**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종합하여 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고 당해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2002.8.2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2.2] **제81조 삭제 <1996.12.31>** **제82조 삭제 <1996.12.31>** **제83조 삭제 <1996.12.31>** **제84조 (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개정 1999.9.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1997.7.10, 1999.9.9, 2000.12.27>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9.9>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삭제 <1999.9.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12.31, 1998.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제86조 (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85조 제5항 및 제87조제2항·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9.9> ④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6.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1999.9.9, 2000.12.2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제88조 삭제 <1999.9.9>**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제90조 (대안의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 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 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입찰금액이하이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중 채택된 공종에 대한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2.2>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2.2, 1999.9.9>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제91조의2 (건설사업관리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92조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시공과정·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고 및 기타	**제7장 공사자재의 관급<개정 1996.12.31>**
	제93조 (계약실적보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82조 삭제<1996.12.31>**
제33조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7.30>	**제83조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 현장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제94조 (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9.9, 2002.8.24>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립안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7] **제95조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계획에는 발주할 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7]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촵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촵운영하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4868호,1995.1.5>	부칙 <제14710호,1995.7.6>	부칙 <제51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2조 삭제 <1996.12.31>**	**제2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중 "계약 및"을 삭제한다. 제123조중 ", 계약관"을 삭제한다.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계약관"을 삭제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계약사무처리규칙 및 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을 각각폐지한다. ②외자구매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본문 및 제2호중 "조달청장"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으로 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6조"를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단서, 제18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및 제3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⑤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예산회계법등의 준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9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예산회계법 제6장 또는 동법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명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항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게시판에의 게시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동조제3항중"을 "제35조제1항중"으로, "동조제4항중"을 "제35조제2항중"으로, "동령 제85조중"을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입찰의 경우"로, "개찰일전 5일까지"를 "개찰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00조·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④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3조"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2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82호,19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그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를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104호,1999.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7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 또는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하거나,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또는 동규정 각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4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호,2002.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및 이 영 제6장 또는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4973호,1996.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5186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에 관한 적용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에 대하여는 납부된 현금의 전액을 그 현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부칙 <제274호,2002.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 제38조, 제44조제6호의2·제7호의2, 제45조, 제48조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5호,2003.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별표 2의 제1호 사목·제2호 바목 및 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를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대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2.24> [전문개정 1998.2.2] **제3조 (계약기간 연장시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 금액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433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내지 ⑤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통신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582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5614호,199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 동부칙 제3조의 규정은 종전의 제5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661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48호,1999.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12.27>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집행될 대형공사등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공고된 대형공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84호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6919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943호,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7019호,2000.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7344호,2001.8.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546호,200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9조 및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7585호,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7조제2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를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7688호,2002.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촵제33조촵제36조제12호의2촵제39조촵제40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155호,2003.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359호,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개정 2003.8.27 대통령령 제18094호]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개정 2003.8.30 재정경제원령 제003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1. 무기촵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선단체촵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4. 삭제 <2003.8.27> 5. 법 제7조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촵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8.27>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7>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촵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로 본다. <개정 2003.8.27> **제4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 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 발주를 하지 아니할 것 2.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3.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과정이나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에서 부품등의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또는 조달조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제6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제2조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용역과 기계·기재류·철재류·식료품류·동물류·화공품류(비료를 제외한다)·약품류·유제품·지류 및 목재류등의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 (계약방법) 특정조달계약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한다.	
제8조 (사용언어) ①특정조달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서 작성에 있어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이상의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9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자격자명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매회계연도초에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의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자격자명부상에 기재된 자가 동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10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과거 12월이내에 40일간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공고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제12조 (입찰공고의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2.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3. 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4.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5. 협정의 적용대상 여부 **제13조 (조달계획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촵공사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②조달계획공고에는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 각호에 규정한 사항은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규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의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한 경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입찰전에 공개·열람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제17조 (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7>	**제3조 (낙찰자등의 결정의 공고)** 특례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대상·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달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기타 낙찰자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 (낙찰정보등의 공개)** ①특례규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기존자격이 정지된 사유 및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명 및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②특례규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정보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의 공개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정보의 공개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정보의 공개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 (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명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 대하여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에 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④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작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작성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명부상에 등록된 업체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군의 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3.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관 및 등록경신절차 4. 기타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제22조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8.27>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촵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당해 물품등을 제조촵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촵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추가공사의 예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직전 공사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로서 추가공사를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촵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발주기관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자와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본계획에 따라 유사한 공사가 반복되는 경우의 신규공사로서 최초계약이 특정조달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최초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에 신규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8.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10.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제24조 (계약에 관한 기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1.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3.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1. 계약의 목적 2. 물품의 품명촵규격촵수량촵단가촵금액 등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의 이유 6.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라 함은 동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8.30> **제7조 (계약에 관한 자료등의 요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제25조 (계약실적보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②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8조 (계약실적보고)** ①특례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건수 및 추정가격과 계약금액 2. 고시금액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따라 물품·공사 및 용역을 유형별로 구분한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3. 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각호별로 구분한 물품촵공사 및 용역의 유형별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4. 고시금액이상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물품촵공사 및 용역에대한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5. 고시금액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촵공사 및 용역에 대한 원산지 국별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②제1항의 계약실적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8.30>
제26조 (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제27조 (조정청구)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이하 "조정청구"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②제1항의 규정외에 조정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8.27>	
제28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촵재정학촵무역학촵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특례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재정경제부촵외교통상부촵국방부촵행정자치부촵정보통신부촵건설교통부촵조달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개정 2003.8.30> ②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촵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조정청구된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제29조의2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촵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촵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국제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물품촵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촵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국제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외의 자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제32조, 제33조제2항촵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8.27]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접수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 ②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27> **제32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33조 (심사)**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조정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조정의 완료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제34조 (조정의 중지)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조정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정) ①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행위의 취소·시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준비와 조정 청구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3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비용부담) ①조정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조정청구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7>	**제10조 (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은 특례규정 제27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및 심사촵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8.30> **제11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특례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속기록 및 통역등 기타 조정에 관한 비용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제38조 (위원회의 운영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7>	**제12조 (위원회의 운영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국제상관례의 적용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국제상관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절차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제41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촵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촵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관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촵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8.27]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부칙 <제15187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공위성 제조·구매계약에 대한 적용제외시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외자구매계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외자구매계약규정"을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4조 (외자구매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자구매계약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94호,2003.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조달협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부터 적용한다. ③(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외자구매일반경쟁입찰참가자자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자구매예정가격의불비치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조 (입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외자구매일반경쟁입찰참가자자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구매에 관한 입찰참가자자격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7호,200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 례 규 정	특 례 규 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 량	
(1)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등"(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마.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10년
(2) "(1)"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하천시설물	
(1) 하천제방상의 수문	5년
(2) "(1)"외의 시설	3년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카. 부지정지	2년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	5년
(3) "(1)"및 "(2)"외의 시설	3년
하. 기타 토목공사	1년

거.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문	1년

너. 전문공사

(1)실내의장	1년
(2)토 공	2년
(3)미장 또는 타일	1년
(4)방 수	3년
(5)도 장	1년
(6)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창호제작 또는 설치	1년
(8)지붕	3년
(9)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10)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 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11)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온실설치공사	2년
(14)보우링그라우팅공사	1년
(15)건축물조립공사	1년
(16)판금	1년
(17) "(11)"내지 "(16)"외의 건물 내설비	2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포함한다)	5년
(2) 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나목 및 다목의 공사를 제외한다)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나목 및 다목의 공사를 제외한다)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공구공사(터널식을 제외한다	3년
나. 통신시설용 철탑·케이블설치공사, 지하관로 공사, 교환기등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	2년
다. 기타정보통신공사	1년

4.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 **1년**

[별표 2]<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0.12.30, 2002.8.24, 2003.12.1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1.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 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 다)이 100분의 300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 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의 시설이 손괴 되게 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사.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2.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50점이상 10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 의 3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바. 삭제 <2003.12.12>
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자.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3.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20점이상 5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 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아. 삭제<1999.9.9>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 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차.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영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법 률	시 행 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59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1999.1.21> 1. 합리적·효율적인 예산관리기법 2.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측정기법 3. 기타 국가의 실효성있는 지방재정지원방안	
제3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①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년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이하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제2조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입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법 률	시 행 령
④세입과 세출의 회계년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후 2월로 폐쇄한다. **제5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내무부"는 "교인적자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개정 1999.1.21, 2001.1.29> [전문개정 1994.12.22] **제7조 (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 (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지방채중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제484조·제485조 및 제4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본다.	**제4조 (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2.3.30> **제5조 (출납사무의 완결)**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본다. <개정 1998.7.16, 2001.1.29> [전문개정 1992.3.30] **제6조의2 (지방채의 발행대상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 률	시 행 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규약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기채하는 경우에 그 기채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일시차입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12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2.22>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을 승인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1.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 2. 지방채원리금의 상환부담이 과중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경우 3.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4.9.29] **제7조 (지방채의 종류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등 외국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9.15> **제8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법 률	시 행 령
제13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출자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12.31>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8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0조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 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12조 (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3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4조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 (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방채증권원부)**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 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9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등에 대하여는 이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 (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9.4.30>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2.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23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9]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11.30>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3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관리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7.16> [본조신설 1990.11.6] **제25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상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3.30,1994.12.23,1998.7.16,2001.9.15>

법 률	시 행 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장 경비의 부담**
제17조 (공공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제18조 (부담금과 교부금)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리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경비부담의 비율등)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16, 2001.9.15>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2001.9.15> **제27조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제28조 (보조금의 정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 (보조금의 신청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2.22]	**제28조의2 (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2001.9.15> ②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1998.7.16>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계획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본조신설 1995.5.16]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1.21>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1999.1.21, 1999.5.24>	**제28조의3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 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1999.5.24>	③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군의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④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2000.1.12]
제24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 (시·군·자치구의 부담경비의 정산)** 시·도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목 기타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시·군·자치구가 부담하는 경비의 집행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자치구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29조의2 (공사의 대행경비)** ①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경비는 소관회계 및 다른 대행공사의 경비와 구분하여 경리하되, 세계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부받은 경비를 집행한 다음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종료 후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5.16]
제25조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①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제29조의3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법 률	시 행 령
자치구는 그 소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납부하고 수탁기관은 공사집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공사의 대행)** ①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경비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26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21] **제28조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5.16]

법 률	시 행 령
제3장 예산	**제3장 예산**
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융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 1994.12.22> ⑤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9.1.21>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6, 1998.7.16, 2002.11.29> 1. 시·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2 이상의 시·도가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건축비(소요사업비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5.5.16, 2001.9.15>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실적,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9> ⑤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
제31조 (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법 률	시 행 령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5.16,1998.7.16>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2002.11.29> ⑦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5.16, 1998.7.16> [본조신설 1992.3.30]
제32조 (예산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30조의3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1.29>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9.15> [본조신설 1998.7.16]
제33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삭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삭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30조의4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3.30, 1993.9.23, 2001.9.15> 1.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제34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35조 (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와 다음 년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제31조 (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7.16> 제30조의2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뢰하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1.29> ②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8.7.16]
제37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개정 1994.9.29>
제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제33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9.29>

법 률	시 행 령
제38조의2(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3조의2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에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3조의3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3조의4(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 률	시 행 령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33조의5 (사후 예산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12] **제33조의6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법 률	시 행 령
제39조 (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예산의 전용)** ①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9.23, 1995.5.16> 1. 인건비 2.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1995.5.16> 4.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1994.9.29, 1999.4.30> **제35조 (예산배정계획)**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0>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2.3.30, 1994.9.29, 1999.4.30>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법 률	시 행 령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년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년도와 다음연도의 예산 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5. 이월사유
제4장 결산	**제4장 결산**
제41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3, 1995.5.16, 2000.1.12>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개정 1998.7.16>

법 률	시 행 령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년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4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것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40조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5장 수입	**제5장 수입**
제43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44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세입조사결정)** ①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납기관) ①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	

법 률	시 행 령
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입금출납원 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6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 (과년도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48조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제42조 (납입의 고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 목, 납입할 금액·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말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43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조세 기타의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납금의 납입)**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5조 (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①지방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있다. <개정 1995.5.16>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이내인 관서에서는 법 제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3.30> **제49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아 이를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비를 지출한 지출원이 징수관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0> **제50조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

법 률	시 행 령
	여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를 반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2.3.30]
	제5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3.30>
	제52조 (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금고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3.30]
	제53조 (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지출	**제6장 지출**
제**49조 (지출원인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예산의 재배정)**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위임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제5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와 다음 년도에 걸쳐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54조 (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있다. <개정 1993.9.23, 1999.4.30>
제51조 (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	

법 률	시 행 령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53조 (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지의 여부 및 소속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3> **제56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제57조 (지급명령 기재사항)** ①지급명령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성명·금액·지출과목·연도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3> ②지방자치단체의 계정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에 "요대체"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3.9.23> **제58조 (지급명령의 종류)** ①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제59조 (지급명령의 상환)** 지출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일상경비등의 범위)**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30,1993.9.23, 1994.9.29, 1999.4.30>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법 률	시 행 령
	2. 여비 2의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기타 직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 의 구입비 14.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4호의 경비는 교부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2.3.30, 1993.9.23, 1998.7.16, 1999.4.30>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제13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500만원 3. 제1항제5호의 경우 2천만원

법 률	시 행 령
	제61조 (자금교부의 제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30> 1.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교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제36조 각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2.3.30>
제54조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일상경비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비특별회계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 행위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2.3.30> ②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3.30>
	제64조 (임시일상경비출납원) ①일상경비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3.30>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3.30>

법 률	시 행 령
제55조 (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제65조 (선금급)**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9.23, 1998.7.16>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과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선금급하여야 한다. 다만,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법 률	시 행 령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6, 1998.7.16>
	제66조 (개산급의 범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9.29, 1998.7.16>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과 보조금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56조 (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67조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30, 1994.9.29, 1995.5.16, 1996.2.22, 1998.7.16, 1999.4.30, 2001.9.15> 1. 읍·면·동의 출장소 2. 소방파출소 및 소방출장소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4. 삭제 <1990.11.6> 5. 도시철도의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6. 화장장 7. 수원지관리사무소 8.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9.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10.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11. 119구조대 12. 기타 정원 3인이내의 관서
제5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과년도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소속년도의 각항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률	시 행 령
	제68조 (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1999.4.30] **제69조 (보충적 경비)** 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한 지방의회에의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위탁징수교부금 11. 체납 및 범칙처분비 12. 전염병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제세공과금 16. 관공영요금의 인상에 따르는 동 차액 17. 보험료

법 률	시 행 령
제7장 계약	**제7장 계약**
제59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립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 사항과 부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정부" 및 "국고"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감사원"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1990.11.6, 1993.9.23, 1994.12.23, 1995.7.6, 1998.7.16, 2001.9.15>
제60조 (계약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기준 및 한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로 본다.
제61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삼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삼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예정가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9조
제62조 (불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3. 경쟁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본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법 률	시 행 령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6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부"·"정부기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부조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조달계약"으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1.21, 2000.1.12>	**제71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2.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998.7.16> [전문개정 1995.5.16] **제71조의2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4. 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사업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본다. 5.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법 률	시 행 령
	6. 계약이행의 검사와 댓가지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 7.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있다. <개정 1994.12.23, 1998.7.16>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재무관"은 "경리관"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보며, 동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동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동시행령 제85조제6항 본문 및 동시행령 제9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5.7.6, 1998.7.16>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경우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5.16, 1995.7.6, 1998.7.1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내용에 의한다. <개정 2002.11.29>

법 률	시 행 령
	제71조의3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의 준용)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64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72조 (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7.16]
제65조 (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 (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①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3.30, 1993.9.23, 1995.5.16, 1995.11.30, 2000.1.12, 2002.11.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

법 률	시 행 령
	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3.30, 1993.9.23, 1995.5.16, 2000.1.12, 2002.11.29>
제66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67조 (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공금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75조 (유가증권취급의 특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9장 시효	
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70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71조 (납입고지의 효력)**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10장 재산 ### 제1절 공유재산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①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 **제73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제74조 (공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92헌가6,7(병합) 1992.10.1(1994.12.22 법4795)]	## 제9장 재산 ### 제1절 공유재산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30>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6>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등의 궤도차량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5> 1. 행정재산 : 다음 각목의 재산 가.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법 률	시 행 령
제75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1>	나.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다.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3. 잡종재산 : 제1호 및 제2호외의 모든 재산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을 말하며, 제1항제2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0.20, 2001.9.15, 2002.11.29>
제76조 (공부등록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불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79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삭제<1999.1.21> [전문개정 1994.12.22]	**제80조 (등기·등록 및 대장관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2001.9.15>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79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5.5.16]
제80조 (재산관리관등의 행위제한) ①재산관리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80조의2 (공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81조 (가격의 재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소관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등재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16> ②매각·교환·대부 또는 사용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된 가격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있다. ③국유재산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가격개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재평가와 제2항의 수시평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신설 2000.10.20>
	제82조 (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법 률	시 행 령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0.10.20>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개정 2000.10.20>)**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없다.<개정2000.10.20>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0.20>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4.9.29, 2000.10.20> **제83조의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4.30]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1995.5.16, 1996.4.27, 1998.7.16, 2000.10.20, 2002.11.29>

법 률	시 행 령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5.16, 2000.10.20, 2001.9.15, 2002.11.29>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적용 2003.1.1부터] 5. 삭제 <2002.11.29> [적용 2003.1.1부터]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법 률	시 행 령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④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5.5.16>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한다. <개정 1999.4.30>

법 률	시 행 령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1.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0.10.20>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양여하는 때에는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③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4.30] **제86조 (가산금)** ①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은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기한은 가산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제87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당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1.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 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3. 보존재산이 당해 보존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전문개정 2001.9.15]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감면, 가격평가, 매각대금납부방법, 대물변제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6, 1994.9.29, 1998.7.16, 1999.4.30, 2000.10.20, 2001.9.15, 2002.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삭제 <1994.9.29> 6.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삭제<2000.10.20>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1.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법 률	시 행 령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15.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6.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18.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19.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대부하는 때 20.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21.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 2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 2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 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4.9.29, 1999.4.30, 2000.10.20, 2002.11.29>

법 률	시 행 령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4.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5.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7.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③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건물있는 부지. 다만, 건물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에 한한다. 2.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3. 공유재산의 지분 4. 재해복구 기타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6. 재산가격의 2할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관리한 재산으로서 분쟁이 없고 연고가 확실한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법 률	시 행 령
	있다. <개정 1992.3.30, 1999.4.30, 2001.9.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2.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시에 대부료의 예정가액은 미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신설 1998.7.16> ⑥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9.15> ⑦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대부료 납부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9>
제83조의2 (잡종재산의 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동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률	시 행 령
⑤신탁회사의 선정범위, 신탁으로 발생한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기타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84조 (계약의 해제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잡종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그 대부·매수 또는 양수에 있어서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 매수자 또는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3.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4.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29>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88조제1항제16호·제22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1.9.15]

법 률	시 행 령
제85조 (불법시설 철거등) ①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②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제90조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0.11.6, 1998.7.16, 1999.4.30, 2000.10.20, 2001.9.15, 2002.11.29> 1. 삭제 <1990.11.6> 2.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 나.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다.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당해 용도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때 라. 제88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마. 제88조제1항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3. 기타의 물건은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새로 경쟁입찰을 하여도 대부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1.9.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법 률	시 행 령
	제91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②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9.29, 1998.7.16, 2002.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건물등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8.7.16, 1999.4.30, 2000.10.20, 2002.11.29>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90.11.6,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0.11.6, 1993.9.23, 1994.12.23, 1996.6.29, 1998.7.16, 1999.4.30, 2000.10.20, 2002.11.29>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

법 률	시 행 령
	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하고,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때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가. 첫째연도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둘째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삭제 <1999.4.30> **제92조의2 (대부료 등의 감면)** ①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1.6.30, 2001.9.15>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②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본조신설 1998.7.16]

법 률	시 행 령
	제93조 (손해보험계약) ①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0> ②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0.10.20> **제94조 (대부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관리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0.11.6, 2000.10.20>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0.8.8, 1990.11.6, 1993.9.23, 1994.9.29, 1998.7.16, 1999.4.30, 2000.7.1, 2000.10.20, 2001.9.15, 2002.11.29. 2002.12.3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삭제 <1990.11.6> 4. 제8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법 률	시 행 령
	5.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6.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9.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13.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법 률	시 행 령
	18.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19.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적용 2003.1.1부터] 21. 삭제 <1990.11.6> 2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22의2.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22의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할 때 23.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2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학교 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 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24의2.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25.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법 률	시 행 령
	2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29.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③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6> **제95조의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6] **제95조의3 (잡종재산 매각시의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95조 제2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9.15> [본조신설 1999.4.30] **제96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 ①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 법

법 률	시 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1994.9.29, 1998.7.16, 1999.4.30, 2000.10.20> ②제1항의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8.18, 1995.11.30, 1996.4.27, 1999.4.30> ③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2000.10.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8, 1998.7.1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9.29, 1998.7.16> ⑥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6.4.27, 1999.4.30>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법 률	시 행 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한다. <신설 1994.9.29, 2002.11.29> [적용 2003.1.1부터] ⑧공유림을 대부받아 조림·산림사업시설·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부지를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등에 관하여는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공유재산"은 "공유림"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매수"는 "교환"으로 본다. <신설 1995.5.16> ⑨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격은 유상이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이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한다. <신설 1998.7.16> ⑩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8.7.16, 1999.4.30>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가계산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등 시장상황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가격평정 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4.30> ⑫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의 실시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신설 2000.10.20>

법 률	시 행 령
	제96조의2 (현물출자 및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 현물출자인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제77조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의 매각시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0] **제97조 (공유재산개량시의 가격평정등)** ①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1.29> **제98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법 률	시 행 령
	제99조 (사용료 등의 귀속)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02.11.29>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2. 변상금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3. 매각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 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적용 2003.1.1부터] 4.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분양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다. 관리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라. 처분신탁 : 처분수입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가산금·변상금·매각대금 또는 신탁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15]

법 률	시 행 령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9.29, 2002.1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9.29, 1998.7.16, 1999.4.30, 2000.10.20, 2001.9.15, 2002.11.29>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③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법 률	시 행 령
	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9.4.30, 2001.9.15, 2002.11.29>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⑦제6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4.30, 2002.11.29>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 또는 교환차금의 잔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1.9.15> **제100조의2 (소유권의 이전등)** 제10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와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0> [본조신설 1994.9.29] **제100조의3 (잡종재산 등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개정 2000.10.20>)**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제91조·제92조·제96조·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9.15 .2003.6.30> 1.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

법 률	시 행 령
	산 2.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3.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0.10.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0.20> [본조신설 1999.4.30]
	제100조의4 (지적재산권의 대부·사용·매각) ①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과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91조·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②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중 저작권·상표권등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은 제91조·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관행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③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대부, 사용·수익허가 또는 매각의 경우 그 계약방법은 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0.20]

법 률	시 행 령
	제100조의5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총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제101조 (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0.20>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신설 2000.10.20> **제102조 (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00.10.20, 2001.9.15, 2002.11.29>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때

법 률	시 행 령
	3.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사업시행지구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삭제 <1990.11.6> 5. 공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노역을 한 현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6.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7.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할 때 8.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공동대표에게 양여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02조의2 (분수림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이를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01.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1.6] **제102조의3 (잡종재산의 사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에 투자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29] [종전 제102조의3은 제102조의4로 이동 <2002.11.29>] **제102조의4 (대물변제의 범위 등)**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물변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당해용

법 률	시 행 령
	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사업시행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9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4.30] [제102조의3에서 이동 <2002.11.29>] **제102조의5 (잡종재산의 신탁)** ①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1의 보수기준에 의한다.<개정 2000.10.20>

법 률	시 행 령
	1. 유사한 민간부동산신탁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2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회사의 보수 3. 2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신탁회사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결과 산출된 보수 ⑥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4.30] [제102조의4에서 이동 <2002.11.29>]
제87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제103조 (매립·간척등을 위한 예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시에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결과 조성 또는 용도 폐지되는 재산을 도급계약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급여할 것을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01.9.15> 1. 매립·간척사업 2.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구거정리사업 또는 제방축조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하는 재산의 가격은 당해 사업의 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평정방법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 ①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부계약의 해제 도는 해지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법 률	시 행 령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9.15> [전문개정 2000.10.20] **제105조 (변상금)**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6, 1994.9.29, 2002.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9.15> **제105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사 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02.11.29> [본조신설 1999.4.30] **제106조 (은닉재산)** 법 제88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의 이행을 착수한 재산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②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107조의2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제77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허가, 매각, 교환, 양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제2절 물품	**제2절 물품**
제90조 (물품의 범위)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제108조 (물품분류번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분류번호를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1조 (물품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92조 (물품의 분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 (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09조 (물품의 표준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단체규격을 따로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3.9.23, 2001.9.1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당해 규격서와 제정·개정·폐지사유서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제110조 (단체규격의 적부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상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이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이 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1993.9.23> **제111조 (단체규격 및 정부규격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규격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규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94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112조 (물품수급관리계획)**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30> 1. 통일적 및 계획적인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2. 중점통제가 요청되는 물품 3. 다액 조달물품, 고가물품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매분기별로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3.9.2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1.29>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대체성·소모감모율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7.16> ②삭제 <1993.9.2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96조 (관리전환) ①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	**제114조 (관리전환의 승인등)**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법 률	시 행 령
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7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 (물품관리관등의 행위제한)** 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99조 (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00조 (물품의 처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 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전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규격 및 그 용도등을 명백히 하여 그 관리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대상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9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7.16, 2001.9.15> **제115조 (무상관리전환)**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때 3.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각각 관리전환하는 때 4. 삭제 <1999.4.30> **제116조 (관리전환의 대가)** 물품의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하는 때의 그 물품의 대 가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17조 (취득)** ①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물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외국산물품을 수입하여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국산품대체 여부 및 경제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취득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개당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합중국통화 5천불이

법 률	시 행 령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요율·대부료의 산정방법·대금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출자등의 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상이거나 품목별 1회취득 총가격이 미합중국통화 5만불이상의 물품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물품 2.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3. 사용중인 물품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품 **제118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9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6>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져있는 경우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제120조 (물품의 정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정비대상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비기준지침을 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제121조 (대부료의 산정)** ①법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대부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그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

법 률	시 행 령
	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일부터 1월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에 관하여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11.29] **제122조 (무상대부와 양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0.10.20> ②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③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④제100조제1항 본문 및 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에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의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법 률	시 행 령
	에 한한다. <개정 1998.7.16, 2000.10.20, 2001.9.15, 2002.11.29> 1.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가.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또는 사무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나.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다.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2. 재활용의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물품 3.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4. 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대부(유상·무상을 포함한다)·교환 또는 양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부 또는 양여를 받는 자 및 교환상대방의 성명(기관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성명)·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경위 4. 물품의 상태 5. 대부·교환 또는 양여 하고자 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제123조 (불용결정)**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법 률	시 행 령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6. 처분방법
	제124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불용결정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매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인 결과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이상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붙이고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미만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이 경매의 절차를 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최고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공익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02조 (자연감모)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한다.	**제125조 (자연감모의 정리)**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7.16> 1. 소금 2. 곡물 3.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7.16>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제103조 (재물조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망실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126조 (정기재물조사)** ①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7.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제127조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법 률	시 행 령
	제128조 (손·망실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결정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발견시기의 당해 물품의 가격·감가정도·내용연수·수량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제129조 (판정의 청구)** ①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령한 변상조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년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30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개정 1998.7.16> 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7.16>

법 률	시 행 령
제104조의2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중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90조 각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130조의2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7조·법 제98조·법 제101조 및 법 제111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7.16>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기탁 받은 것. 다만,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물을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의하여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압류한 것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본조신설 1992.3.30]
제104조의3 (적용배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제130조의3 (적용배제)**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91조·법 제92조·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법 제97조제2항·법 제99조·법 제10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법 제102조 내지 법 제104조 및 법 제111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의하여 몰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 6. 도서·서화·예술작품·동식물등 기타 특수물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3.30]

법 률	시 행 령
제3절 채권과 채무	제3절 채권과 채무
제105조 (채권·채무의 범위) ①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133조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제131조 (채권관리관등의 현금취급업무제한) 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제132조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108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34조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35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3.30> 1. 과태료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법 률	시 행 령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인이 채무자인 채권 **제135조 (채권의 발행 또는 귀속의 통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을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36조 (납부의 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7조 (독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6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38조 (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 기타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139조 (이행기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36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0조 (채권의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기타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법 률	시 행 령
제107조 (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8조 (관리의 방법등)** ①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41조 (기타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 (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3조 (담보 및 증거물건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비·보존하여야 한다. **제144조 (징수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가 경과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4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

법 률	시 행 령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휴지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으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으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45조 (상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그 소관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이 있는 때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 (소멸에 관한 통지)**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와 제1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 (이행연기의 특약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해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소정의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기타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8조 (이행기연장의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로부터 5년(제1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의 재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제149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제150조 (채무명의의 취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명의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무명의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1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을 은닉·손괴 기타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허위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때 라. 제140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기타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법 률	시 행 령
	제152조 (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53조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므로 인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4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4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기타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5조 (채권계약의 약정)**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하는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법 률	시 행 령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하는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내에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절 공공시설 및 기금	**제4절 공공시설 및 기금**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승인에 앞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신설 1994.12.22>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3.9.23, 1999.4.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3>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8.7.16>
제11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11조 (출납원) ①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등으로 나눈다.<개정 1991.12.31>	**제157조 (출납원의 장부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8조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9조 (결손보전금의 지출)** ①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법 률	시 행 령
제1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11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1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원이 망실한 세입·세출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당해연도내에 회수할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2.3.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0조 (출납원의 망실보고)** 출납원과 그 대리인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2장 보칙	**제11장 보칙**
제117조 (장부의 비치와 보고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 (징수부등의 비치)** ①징수관·경리관 또는 지출원은 징수부·지출원인 행위부 또는 지출부를 각각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현금출납부 또는 물품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 (금고가 비치할 장부)** ①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3조 (계산서의 제출)** ①지출원은 소관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소관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0> **제164조 (금고의 일계표등 제출)** 금고는 출납에 관한 일계표·월계표 기타 필요한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9.1.21>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석 결과	**제165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30, 1995.11.30, 1999.4.30, 2001.9.15> 1.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8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법 률	시 행 령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9.1.21> **제118조의2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재정지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락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2.22]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4. 법 제10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5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16조의 지방재정계획보고서 7.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8.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35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9의2. 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0. 기타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기타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7.16> ③법 제1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5.16, 1998.7.16> 1. 세입예산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조상충용을 한 지방자치단체 3. 인건비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4.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④법 제18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95.5.16, 1998.7.16>

법 률	시 행 령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5.5.16> ⑥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재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5.5.16, 1998.7.16>
	제165조의2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작성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고, 심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5]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0.10.20>)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기타 재무회계와 공유재산·물품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물품관리관계법령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2000.10.20>
제1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 (시행규칙)** 이 영 및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7.16>
부 칙 <제4006호,1988.4.6>	**부 칙 <제12445호,1988.5.7>**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산의 사용·수익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기타 계약의 체결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④(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관한 임시특례) 이 법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제4466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95호,1994.12.22>**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1981년 4월 30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의 그 매립토지 또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때에는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에게 199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④법률 제3995호 축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가축시장 개설자에게 공유재산인 가축시장의 재산을 1990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가 1986년 12월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10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4조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707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의 총유재산이 시·군에 귀속된 경우 귀속전의 당해 이·동 주민이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여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당해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동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신설 1990.11.6>

법 률	시 행 령
부 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예산회계법등의 준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 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개정 1999.1.21> **부 칙 <제5647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제5조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관한 임시특례)** 이 영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5호, 제68조제9호, 제70조제2항·제3항·제4항, 제71조제2항·제3항, 제84조제2항, 제109조, 제110조, 제165조제2항, 제166조 및 제16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처분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제2항의"로 한다. ②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 및 제71조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5조의"로 한다. **부 칙(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18>생략<19>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지방자치법) <제6002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부 칙 <제6010호,19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13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감정회사"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⑤내지 <23>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제12870호,198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063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 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2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 칙 <제13156호,1990.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②(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9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기간은 제9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6>내지 <148>생략 **부 칙 <제13624호,199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981호,1993.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91호,1994.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부 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생략 <118>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본문, 제7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1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제70 조제1항제4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19>내지 <327>생략 부 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92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0>내지 <205>생략 부 칙 <제14646호,1995.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4710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70조의 제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마목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7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 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

법 률	시 행 령
	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 <제14815호,199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의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21>생략 <22>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3>내지 <32>생략 **부 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 제3항 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 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15093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

법 률	시 행 령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부 칙 <제15836호,1998.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267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694호,200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3 및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제20호중 "도시계획법 제82조"를 "도시계획법 제69조"로 한다. ③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제16983호,2000.10.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잡종재산의 매수·교환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쟁입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법 률	시 행 령
	당시 그 절차가 계속중에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과 잡종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8>내지 <152>생략 **부 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88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 칙 <제17363호,200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사 등 건축사업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단서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청사 등의 건축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6호, 제95조제2항제14호 및 제10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률	시 행 령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을 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의 대부계약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자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 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9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부료 등의 납입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 후단 및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100조제6항 전단(제91조제1항 단서 및 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내 인구집중시설중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한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매각에 대하여는 제89조제5호 및 제95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존 대부계약의 기간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7788호,2002.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3항제4호·제5호, 제95조제2항제20호, 제96조제7항 및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률	시 행 령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입찰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및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3항, 제100조제1항 단서·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0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연체료 부과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23>및 <24>생략 **제13조 생략**

■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0.11.24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율"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율은 시·도와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사업성격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도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간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7.11.14, 1998.11.9>

②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제3조 (기준부담율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율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율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제4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 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6호,1998.11.9>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00.11.24>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1989.1.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1989.12.4>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1991.7.15>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1997.11.14>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고보조사업의지방비담에대부한시·도와시·군·구의부담비율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개정 1998.11.9, 2000112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제2조제1항관련) (단위 : %)

연번	부처별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1	행정자치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50	50	30	70
2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	50	50	50	50
3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4		119구조구급대장비보강	100	0	100	0
5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0	100	0
6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7	교 육 부	공립전문대학운영비지원	100	0	100	0
8	문화관광부	지방문화원 및 향토사료조사수집비	50	50	50	50
9		지방체육시설지원	50	50	50	50
10		생활체육교실운영	50	50	50	50
11		지역향토축제지원	50	50	50	50
12		작은도서관도서구입지원	50	50	50	50
13		문화상품전개최지원	50	50	50	50
14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시설	50	50	50	50
15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지원	50	50	50	50
16		공립박물관건립	100	0	100	0
17		지방문예회관건립	50	50	50	50
18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운영지원	50	50	50	50
19		전통사찰정비	50	50	50	50
20		유명예술인기념사업	50	50	50	50
21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30	70	30	70
22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100	0	100	0
23		상설문화프로그램개발지원	100	0	100	0
24		전통예술상설공연	50	50	50	50
25	농 림 부	자영농과학생 급식비보조	0	0	100	0
26		밭기반정비	50	50	50	50
27		일반경지정리	50	50	50	50
28		한밭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29		농공단지조성지원	50	50	50	50
30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0	50	50	50
31		부적지감귤과수원정비	0	0	50	50
32		기계화경작로확장 및 포장	50	50	50	50

33	농 림 부	토양개량사업	50	50	50	50
34		대구획 경지 재정리	50	50	50	50
35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지원	50	50	30	70
36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50	50	50	50
37		지역특화사업	50	50	50	50
38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39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	50	50	50	50
40		축산물검사	50	50	50	50
41		환경농업지구조성	50	50	50	50
42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50	50	50	50
43	산업자원부	석탄비축	50	50	50	50
44		외국인투자유치(경상,자본)	50	50	50	50
45		농어촌전화사업	50	50	50	50
46	환 경 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50	50	50	50
47		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비지원	0	0	50	50
48		고도정수처리시설	50	50	50	50
49		도서지역식수원개발	50	50	30	70
50		폐금속광산오염방지시설	50	50	50	50
51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0	50	50	50
52		합병정화조설치지원	50	50	50	50
53		하수처리시설지원	50	50	50	50
54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	50	50	50	50
55		비위생매립지정비	50	50	0	0
56	보건복지부	모자보건관리	50	50	50	50
57		결핵환자보호시설운영	100	0	100	0
58		한센장애인보호	100	0	100	0
59		급성전염병관리	100	0	100	0
60		정신질환시설운영비	100	0	100	0
61		의료보호	100	0	70 80	시30 군20
62		부랑인보호	100	0	100	0
63		사회복지관운영	100	0	0	100
64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0	100	0	10
65		재가장애인보호	100	0	100	0
66		재가노인지원	100	0	50	50
67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68		가족계획시술	50	50	50	50
69		아동시설보호	100	0	50	50
7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71		모자보호 및 부녀시설 운영	100	0	50	50
7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73	보건복지부	아동건전육성	50	50	50	50
74		생계보호	50	50	50	50
75		교육보호	50	50	50	50
7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00	0	0	100
77		재가부모자가정 지원	100	0	50	50
78		아동결연 및 입양기관 지원	100	0	50	50
79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100	0	50	50
80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81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0	50	50	50
82		보육사업	100	0	50	50
83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50	50	50	50
84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8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86		노인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87		경로연금	70	30	50	50
88		노인시설보호	100	0	50	50
89		여성복지시설	100	0	50	50
90		병원선운영	100	0	50	50
91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92	노 동 부	고용촉진훈련	100	0	50	50
93	건설교통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00	0	100	0
94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	0	50	50
95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0	0
96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상환)	100	0	0	0
97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100	0	0	0
98	해양수산부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50	50
99		인공어초시설	100	0	100	0
100		도립종묘배양장 시설	100	0	100	0
101		시도 지도선 건조	0	0	100	0
102		2종어항건설	100	0	100	0
103		어장 정화	0	0	30	70
104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0	100	0
10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0	0	50	50
106		연어치어 방류 지원	0	0	100	0
107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108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70	30	50	50
109		오염해역 준설	50	50	50	50
110		공동양식어장 개발	30	70	30	70
111		어촌종합개발	50	50	50	50

112	해양수산부	지방 수산과학관 건립	100	0	100	0
113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00	0	50	50
114		양식용기자재 공급	0	100	50	50
115		종묘 매입방류	0	0	50	50
116		어선용기자재 공급	100	0	50	50
117		어장정화선 건조	100	0	100	0
118		육지소규모어항 개발	30	70	30	70
119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시범사업	100	0	0	100
120		농업기계화훈련 지원	100	0	30	70
121	산 림 청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122		임업협동조합운영비	100	0	0	100
123		영림계획	100	0	50	50
124		산불방지대책	30	70	30	70
125		조 림	30	70	30	70
126		육 림	30	70	30	70
127		사 방	70	30	70	30
128		자연휴양림 조성	50	5	50	50
129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0	100	0
130		임도건설	30	70	50	50
131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132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50	50
133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50	50
134		협 업체단기소득 조성	50	50	50	50
135		임산물저장시설	50	50	50	50
136	식품의약품 안 전 청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	50	50	50	50
137	문 화 재 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138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30	50	50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정 1995.10.19 내무부령 제66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역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만이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5억원(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이하

제4조 (지역사업자의 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는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종전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4호,1995.10.19>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제정 1959.2.27 대통령령 제1460호]

제1조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매년도 1월1일현재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단, 법 제4조, 법 제8조 및 법 제9조에 규정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 이를 산정하여 교부한다.

제2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이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에 미달하는 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이 보통교부금의 예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다.

$$\text{보통교부금의 예산총액} \times \frac{\text{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text{재정부족액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합산액}}$$

제3조 ①법 제6조에 규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각 측정단위(測定單位)의 수치(數値)를 각각 당해 측정단위의 단위비용(單位費用)에 승(乘)한 합산액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행정의 부문별(部門別) 또는 그 부문별 량(量)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측정단위마다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 의한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별표제1호와 같이 정하며 측정단위의 수치(數値)의 산정방식(算定方式)은 별표제2호와 같다.

제4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特別交付金)은 국가예산에 계상(計上)된 특별교부금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도(道)는 합계 100분의15, 시(市)는 합계 100분의10, 읍면(邑面) 및 읍면조합은 합계 100분의75로 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8조제1호의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災害)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든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이하 재정결함액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이외의 수입으로써 그 재정수요액 또는 재정결함액을 충족 또는 보진(補塡)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법 제8조제2호의 특별교부금은 당해시설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산출한 그 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및 도와 시는 100분의70이내 읍면 및 읍면조합은 100분의80이내에서 당해 실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 이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廢置分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調整)한다.

1.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그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할설치(分割設置)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 교부금은 법 제8조 및 법 제9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산정한다.

부칙 <제1460호,1959.2.27>

본령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문개정 2001.4.6 행정자치부령 제13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군·구 자체검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 및 시· 도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30호,200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정 1994. 01. 05. 법율제4697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 07. 30.대통령령제17689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0.21. 재정경제부령 제0004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라 함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한다. 2. "수요물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라 함은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비축·공급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함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기타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운송·조작·보관·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98·7·9] 1.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3. 기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제4조 (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기타의 기관으로서 물자의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당해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당해 연도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당해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0·21] **제3조 (선금의 선납고지)** ①조달청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 대하여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선납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조달청장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수요물자중 창고에 저장되어 공급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물품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수요기관의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르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할 수 있거나 행하도록 규정한 사업 **제4조 (선물거래)**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내용과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7·9] **제6조 (선물거래)** ① 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소를통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위한 단가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요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회계연도에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2(복수물품 공급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서식의 출급 및 수령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중 저장품이 아닌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자(이하 "비저장품"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 2부(단가계약품목의 경우에는 1부)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분할납품요구서를 계약자 및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비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8·1 **제5조 (수요물자중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 ①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달요청서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수요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공고하는 일괄구매 품목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1. 품목명세서(2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계약물품에 대한 낙찰자 수, 계약수량의 배정비율 등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2·7·30] **제8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품질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가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참가자 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수요물자의 구매수수료와 시설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계약 및 설계대행 등의 용역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한다. [개정 98·7·9] **제9조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식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2. 영문규격서 3. 관계기관의 추천서(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인 경우에 한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사유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기타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②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삭제 [98·10·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품질별 가격의 차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보관·조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있어서 대량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결정)** 수요물자의 구매수수료와 시설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계약 및 설계대행등의 용역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한다. [개정 98·7·9] **제11조 (조달물자의 공급가격 결정등)** ① 수요물자(저장품을 제외한다)의 공급가격은 당해 물자의 구매원가(물품대금 및 조작비 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포함한다)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요물자의 공급이	**제6조 (저장품판매대금의 결정)**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품목별 가격의 전국적 통일을 위하여 재고품을 재평가하고, 도매가격등 시중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관·조작·운송등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연된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7·9] ② 비축물자의 판매대금과 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공급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및조작비 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당해 물자의 수급 및 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신설 98·7·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8·7·9] **제12조 (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 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등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7·30] ③ 조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7·30]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요물자 수수료 또는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재고물자의 조기소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0·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02·7·30] ⑤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당해 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제②항에서 이동('02·7·30)]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대금 및 수수료를 기한내에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서 가산·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③항에서 이동('02·7·30)]	
제7조 (시설관리의 위탁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조달물자외의 물자를 수탁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1.물자조작 및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기타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 (조달절차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개정 98·7·9] 1.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2.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경우 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6.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구매위임)** ①영 제14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9·29, 98·10·21] 1. 소량·소액 구매물자 또는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이 수요 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 하여금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그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비축물자의 인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9·29, 98·10·21]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규정에 의한 보증서등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사채권(보증사채권에 한한다)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 4. 판매대금이상의 재력을 가진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④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공사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7·9]	**제10조 (공사집행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수요기관이 공급하는 자재의 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국가기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 2.지방자치단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동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 3.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공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직접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재해 및 사고의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하는 경우 3.시공·감독, 하자보수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 과 미리협의한 경우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공사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등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기타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체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6]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계약서류 기타 당해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년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계획확정후 20일이내에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9]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조달물자의 사고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의 본선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조달의 이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설치 미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 [신설 98·10·21] **제12조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5·9·29]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1. 설계변경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합의서 ④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제13조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은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 의장법에 의한 등록의장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선정절차·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당해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해제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당시의 구체적인 공사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빙서류 4. 계약집행상황등에 관한 기타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부과사유서(산출기초 및 금액징수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 최초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달기금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199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전화번호)

수 신 발 신 인

물 품 요 청 서

①수요 기관 번호				②증 빙 번 호	
③물 품 수 령 인		④인감		⑤대 금 총 액	

아래 물품을 공급 요청하오며 위 수령인감으로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은 귀청 고지서에 의거 기일내에 납부하겠음

⑥일련번호	⑦정부물품 분류번호	⑧품 명	⑨단 위	⑩단 가	⑪수 량	⑫금 액

3308-6(2-1)일(1)
83.6.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2

[별지 제2호서식]

출 급 및 수 령 증

수 신 발 신 : 조달청○○지청장 [인]

①대금총액	②증빙번호
아래와 같이 물품을 출급하오니 물품 요청서에 신고된 수령인감으로 수령하시기 바람	아래 물품을 정히 수령함 물품수령자 : ○ ○ ○ [인]

③일련번호	④정부물품 분류번호	⑤품 명	⑥단위	⑦단가	⑧수 량	⑨금 액
					수 수 료	

3308-5(2-1)일(1) 190㎜×268㎜

83.6.29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신문용지 5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8·10·21]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받음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조달요청

1. 우리부(처, 청)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아래 물품을 조달요청하니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물자대금 및 수수료는 귀청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경과시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귀청의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①수요기관번호		②회 계 명	
③수요기관명(영문)		④접수번호	

⑤ 일련번호	⑥ 정부물품 분류번호	⑦ 품명(영문)	⑧ 규격	⑨ 단위	⑩ 수량	⑪단가 / ⑫총액	⑬ 수요기일	⑭ 납품장소	⑮ 연구구매 예 상 액

※ 1. 2품명이상인 경우 매 품명단위로 작성.
2.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의 물품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므로 수요기관명 및 품명을 영문으로 병기.
3. 건설자재 공급희망업체 :

발 신 명 의

40014-01511일 210㎜×297㎜
97.12.31 승인 (신문용지(재활용품) 54g/㎡)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98·10·21]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받음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외자조달요청

1. 우리부(처, 청) 수요 아래 외자물품을 조달요청하니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구매관련 대금은 귀청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경과시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귀청의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1. 수요기관명(영문) :	2. 수요기관번호 :
3. 회 계 명 :	4. 자 금 명 :
5. 조달요청금액 :	6. 선적희망기한 :
7. 도착항구(공항)명 :	8. 최 종 도착지 :
9.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 :	
10. 물자대 및 보험료 예산과목 및 예산액(₩) :	
11. 제세공과금 예산과목 및 예산액(₩) :	
12. 조달청 제경비 지급과목 및 예산액(₩) :	
가. 물자구매수수료	나. 물자취급수수료
13. 검정방법 :	14. 보험부보조건 :
15. 포장방법 :	

※ 단, 단가계약된 품목은 1부씩만 제출함.

붙임 : 1. 품목명세서(2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식을 기재한 것이어야 함) 2부
2. 영문규격서 3부
3. 관계기관의 추천서(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인 경우에 한함) 2부
4. 품목별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2부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사유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부
6. 국산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2부
7. 기타 차관협정서, 안내서등 참고자료 2부

발 신 명 의

40014-01611일 210㎜×297㎜
97.12.31 승인 (신문용지(재활용품) 5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4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TEL :) 시행일자 : . . . ( )
(FAX :)

수 신 발 신 :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수요기관 번호 : 납품요구 번호 :

대 계약자 : 계약번호 제 호(. .)로 조달청과 귀사간에 계약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조달청 : 상기 계약번호에 의거 해당 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품요구 하였기 통보합니다.

순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 수 량	단 가 / 금 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 조건
		계						
		수수료						
		합 계						

특 수 조 건 : (계약서상 명시된 특수조건에 따른다)

분 할 납 품 : (가부를 표시한다)

검사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을 표시한다)

40014-01111일 210㎜×297㎜
94.12.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8·10·21]

물품납품 및 영수증

증빙번호					
계 약 번 호		납품요구번호		납 품 기 한	
계 약 일 자		납품요구일자		검사요청기한	
수 요 기 관		수요기관번호		회 계 명	
계약(납품요구) 금 액		지 체 상 금		지 체 일 수	
감 가 액		선 급 금		지 급 액	
물 품 대		수 수 료		징 수 결정액	
조달청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신청검사장소		

아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니 인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전화 :) ※ 단체수의계약물품의 경우 납품업체명 : 대표자 : 인	아래 물품은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검사요청일 년 월 일 검사완료일 년 월 일 소속검사관 인
수요기관 물품출납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 아래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달청 확인자 인	아래 물품을 정히 영수합니다. 검수요청일 년 월 일 검수완료일 년 월 일 소 속 출납공무원 인

순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및 규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원산지
					물품대		
					부가세		
			계		합 계		
하자보수보증금수납필		[인]		세금계산서 접수필		[인]	

40014-01311일
97.12.31 승인
210㎜×297㎜
(신문용지(재활용품) 5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6

[별지 제6호서식]

조 달 청

OFFICE OF SUPPLY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수 신 : 년 월 일

TO 통지번호 : 제 호

제 목 : 물자공급통지서

수요기관 _____ 모선명 _____ 출항지 _____

END USER NAME OF VESSEL LOADING PORT

계약번호 _____ 입항지 _____ 원산지 _____

CONTRACT NO. PORT OF ARRIVAL ORIGIN

신용장번호 _____ 입항일자 _____ 선하증권번호 _____

L / C NO. ARRIVAL DATE B / L NO.

품 명 COMMODITY	수 량 Q'TY	중 량 W / T	단 가 UNIT PRICE	금 액 TOTAL PRICE	수수료 CHARGE

위 물자는 당청을 통하여 수입된 조달물자임을 확인하오니 조달물품의 장치 관리 및 통관절차 요령에 따라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달 청 장

3305-44일(1) 190㎜×268㎜
83.6.29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7

[별지 제7호서식]

조 달 청
비 축 물 자 배 정 통 지 서

배정통지서번호 : □□-□□-□-□-□□□□ 배 정 일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귀하

물 자 소 재 지 : 방출인도조건 :

실 수 요 자	품명 및 규 격	단가 수량	단가	금 액		계약번호	원산지	모선명	입 항 일 자
					현금	□□-□-□□□□			
□□□-□□-□□□□□	□□□□				외상	□□□□□-SM□□	□□□□		□□-□□-□□
					소계				
					현금	□□-□-□□□□			
□□□-□□-□□□□□	□□□□				외상	□□□□□-SM□□	□□□□		□□-□□-□□
					소계				
					현금	□□-□-□□□□			
□□□-□□-□□□□□	□□□□				외상	□□□□□-SM□□	□□□□		□□-□□-□□
					소계				
계					현금				
					외상				
					소계				

위와 같이 공급하오니 이 물자배정통지서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시고 현물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3305-1일(2) 296㎜×210㎜
84.12.12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8

[별지 제8호서식]

비 축 물 자 인 수 증

배정통지번호 :

배정통지일자 : 년 월 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상기품목을 이상없이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조달청 (지청)장 귀하

3305-11일 190㎜×268㎜

84.12.12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9

[별지 제9호서식]

년도 공사집행계획서

순위	시공관서	공사명	공사현황	당예산액	신계속공사	공사내역					발주예정일	비고
						총공사규모	전의도집계액	당해연도액	잔여공사액	당해연도공사회수	완공연도	

기재요령 : 1. 총공사규모 : 당해 공사의 총예산규모
2. 잔여공사예산액 : 익년도이후 본공사 소요추정 예산액
3. 당해연도 공사회수 : 당해연도의 공사집행회수
4. 비고 : 회계명

3307-3(2-1)A 380㎜×268㎜

81.4.13 승인 (신문용지 5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10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8·10·21]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받음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 .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조달요청

1. 우리부(처, 청)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아래 물품을 조달요청하니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물자대금 및 수수료는 귀청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경과시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귀청의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①수요기관번호		②회 계 명	
③수요기관명(영문)		④접수번호	

⑤ 일련번호	⑥ 정부물품 분류번호	⑦ 품명(영문)	⑧ 규격	⑨ 단위	⑩ 수량	⑪단가 / ⑫총액	⑬ 수요기일	⑭ 납품장소	⑮ 연구구매 예 상 액

※ 1. 2품명이상인 경우 매 품명단위로 작성.
2.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의 물품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므로 수요기관명 및 품명을 영문으로 병기.
3. 건설자재 공급희망업체 :

발 신 명 의

40014-01511일
97.12.31 승인

210㎜×297㎜
(신문용지(재활용품) 54g/㎡)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98·10·21]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받음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외자조달요청

1. 우리부(처, 청) 수요 아래 외자물품을 조달요청하니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구매관련 대금은 귀청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경과시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귀청의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1. 수요기관명(영문) :	2. 수요기관번호 :
3. 회 계 명 :	4. 자 금 명 :
5. 조달요청금액 :	6. 선적희망기한 :
7. 도착항구(공항)명 :	8. 최 종 도착지 :
9.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 :	
10. 물자대 및 보험료 예산과목 및 예산액(₩) :	
11. 제세공과금 예산과목 및 예산액(₩) :	
12. 조달청 제경비 지급과목 및 예산액(₩) :	
가. 물자구매수수료	나. 물자취급수수료
13. 검정방법 :	14. 보험부보조건 :
15. 포장방법 :	

※ 단, 단가계약된 품목은 1부씩만 제출함.

붙임 : 1. 품목명세서(2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식을 기재한 것이어야 함) 2부
2. 영문규격서 3부
3. 관계기관의 추천서(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인 경우에 한함) 2부
4. 품목별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2부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사유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부
6. 국산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2부
7. 기타 차관협정서, 안내서등 참고자료 2부

발 신 명 의

40014-01611일
97.12.31 승인
210㎜×297㎜
(신문용지(재활용품) 5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1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8·10·21]

조 달 청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계약체결통지서

귀부(처·청)에서 . . . 요청하신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 공 사 명	(시설권 호)
2. 계 약 금 액	
3. 계 약 자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 공 연 월 일	
7. 기 타	

첨 부 : 1. 계약서 및 특수조건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기초

3. 기타 참고서류

3307-4D 190㎜×268㎜

81.4.13 승인 (신문용지 5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12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98·10·21]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 .	
수 신 : 조달청장		발 신	인
제 목 :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			
당부(처·청)수요공사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관 리 번 호			
②공 사 명			
③계 약 자	(대표 :)		
④계 약 연 월 일	. . .	⑤착공연월일	. . .
⑥당 초 계 약 금 액			
⑦변경금액(증 감 액)			
⑧ 변경후 계약금액			
설 계	⑨설 계 자		
변 경	⑩설계심사자		
⑪당 초 준 공 기 한	. . .	⑫준공연기기한	. . .(일간)
⑬지체상금부과여부	(%)		
⑭최 근 공 사 진 도	%		
⑮기 타 변 경 사 항			
첨 부 : 1. 설계변경신청서(설계변경사유, 변경일자, 변경내용 포함) 2. 합의서(별지 제12호의2서식)			

40014-00611일
90.12.21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2서식]

합 의 서

시설공사관리번호	제 호	계 약 번 호	제 호
공 사 명			
공 사 현 장			

당사는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상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 의 내 용

○ 계약금액변경 ○ 준공기한연장

당초계약금액 : 변경전 준공기한 :

변경계약금액 : 변경후 준공기한 :

증 : ○ 내역변경

감 :

변경후 계약금액 :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조 달 청 장 귀하

40014-01211일
94.12.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13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8·10·21]

	기 관 명	
문서번호 :	( ) . . .	
수 신 : 조달청장	발 신	인
제 목 : 공사계약해제요청서		
당부(처·청)수요공사에 대한 계약을 별첨 사유에 의하여 해제하고자 하오		
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유 번 호	(시설권 호)	
공 사 명		
계 약 자	(대표 :)	
당 초 계 약 금 액		
변경후 계 약 금 액		
계 약 연 월 일		
착 공 연 월 일	. . .	
착 공 기 한	. . .	
해 제 연 월 일	. . .	
최 근 공 사 진 도		
첨 부 : 1. 구체적인 해제사유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빙서류		
4. 계약집행상황등 기타 참고서류		

3307-6A 190㎜×268㎜

81.4.13 승인 (신문용지 54g/㎡)

법명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1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8·10·21]

기 관 명			
문서번호 :		( ) . . .	
수 신 :		발 신	인
제 목 : 준공통지서			
당(귀) 부(처·청)수요공사의 준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권 유 번 호	시설권 호	계 약 연 월 일	. . .
공 사 명		당초 계약 금액	
		변경후계약금액	
계 약 자	(대표 :)		
착공연월일	. .	준 공 기 한	. . .
		설계준공연월일	. . .
하 자 보 수 보 증 금	율 ——— 100	적 립 금 액	
	적 립 일 자 : . . .	적립기간 . . . 부터 (년) . . . 까지	
첨 부 :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 작성) 2. 준공검사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 작성) 3. 지체상금부과서(산출기초 및 금액징수연월일 포함)			

3307-5D 190㎜×268㎜

81.4.13 승인 (신문용지 54g/㎡)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제06836호]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 02. 14. 대통령령제16708호]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 02. 18.재정경제부령제121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동산을 제외한다. [개정 97.12.13, 99.12.31] 1. 현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95.12.29]	**제2조 삭제 [2000·2·14]**	**제2조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의한 명령·보고·통지·청구 기타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다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기재사항의 정정)**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 및 표준서식등에 기재한 사항을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법규에의거한 출납계산의숫자및기재사항 의정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7·3·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7·3·3, 2000·2·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5조 (분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기능별.성질별 및기관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소속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 소속분류의 전환 기타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3조 (물품분류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분류한 물품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물품분류표를 작성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물품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정부물품분류번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당해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정부물품분류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는 군번호·급번호·품명번호 및 규격번호로 구성한다. ③군번호·급번호 및 품명번호는 조달청장이 정하고 규격번호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물품분류번호가 없는 물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달청장에게 정부물품분류번호의 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정부물품분류번호의 부여·배열·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제5조 (정부물품분류번호)**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1. 군·급·품명 및 규격의 명칭은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어로 간명하게 표시할 것 2. 정부물품분류번호는 물품에 대한 고유의 식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할 것 3. 물품별·품명별 및 규격별분류는 기능별분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성질별분류를 혼용할 수 있다. ②정부물품분류번호는 11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되 그 배열 및 표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군번호는 첫머리에 2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2. 급번호는 군번호 다음에 2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3. 품명번호는 급번호 다음에 3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4. 규격번호는 품명번호 다음에 4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조 (표준화)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주요물품에 관하여,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관하여 각각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물품의 표준화)**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물품의 취득 또는 사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이하 "대표규격"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산업표준이 제정된 물품에 관하여는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5. 급번호와 품명번호 사이 및 품명번호와 규격번호 사이에는 -로 연결할 것 **제6조 (정부물품분류번호의 제정·변경 요청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정부물품분류번호가 없는 물품이 있거나 정부물품분류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또는 정부물품분류번호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물품분류안을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대한 정부물품분류번호의 제정이나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부물품분류번호를 확정하여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부물품분류작업의 협의등)** ①조달청장은 물품분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물품분류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거나 분류하고자 하는 물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들에게 정부물품분류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물품분류작업의 의뢰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물품분류안을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규격제정의 원칙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처규격·정부규격 및 대표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표준성·경제성·최신성등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물품규격은 물품의 수요시기·품질등을 감안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전까지 제정 또는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규격의 변경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3년마다 물품규격을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규격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규격을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규격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물품규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 및 시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처규격 및 정부규격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공신력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규격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이 부처규격 및 정부규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규격번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및 정부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규격번호는 기관명·군번호·급번호·일련번호· 개정횟수로 구성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기관명은 정부규격의 경우에는 "정부"로, 부처규격의 경우에는 부처명을 두자로 약칭하여 첫머리에 표기할 것 2. 군번호 및 급번호는 정부물품분류번호의 군번호 및 급번호를 기관명 다음에 표기할 것 3. 일련번호는 물품규격의 제정순으로 급번호 다음에 4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4. 개정횟수는 개정순번에 따라 가, 나, 다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기할 것 **제13조 (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물품규격서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7조 (총괄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31] ②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개정 99.12.31] ③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99.12.31] 1.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상황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사의 실시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등 주요 사항의 관보게재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4. 기타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④조달청장이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물품관리상황에 관한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99.12.31] ⑤조달청장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제6조 (물품의 관리상황의 시정)** ①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14]	**제14조 (물품관리사무의 총괄·조정)**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당해 중앙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처분 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 (감사의 종류)**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0·2·18] ②정기감사는 매년도 수립한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외의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97·3·3] **제16조 (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7·3·3, 2000·2·18]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9.12.31] **제8조 (관리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 **제9조 (물품관리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행할 수 있다. **제10조 (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사무의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5. 재고관리 6. 불용품의 처분 및 재활용 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등의 기록과 보고 9. 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 물품의 취득·분배·보급 11. 기타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17조 (실지감사실시의 통보)** 조달청장은 실지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3·3] **제18조 (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자료의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참여 2. 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 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증표)**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 2000·2·18] **제21조 (누설금지)**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당해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대한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대한 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 삭제 [95.12.29]	제9조 내지 제14조 삭제 [96·7·26]	
제4장 물품의 관리	**제4장 물품의 관리**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5조 (수급관리계획) ①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중앙관서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한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9.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등)** ①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서 사본을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6·7·26, 2000·2·1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2·29] **제16조 (물품수급관리계획수립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시달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시달하고 동계획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시달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시달받은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물품 2. 제1호의 물품외의 물품으로서 일괄하여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16조 (물품의 정수관리) ①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물품의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국회.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소관에 속하는 주요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당해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1.11.30, 95.12.29, 99.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물품 기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삭제 [99.12.31]	**제17조 (물품의 정수관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야 할 주요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 및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기능·업무량 및 정원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삭제 [2000·2·14] [전문개정 96·7·26]	**제24조 (물품의 정수관리)** 조달청장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하는 때에는 그 물품에 관한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8]
제17조 삭제 [95.12.29]	**제18조 삭제 [2000·2·14]**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6·7·26]** **제21조 삭제 [2000·2·14]**	**제25조 (내용연수)** ①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여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3·3]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의 물품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용연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3·3]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재고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의 유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26조 (재고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보급기 준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물품의 재고관리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현황보고서에 의하되 상반기의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결과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재물조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재물조사)** ①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6·7·26]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제27조 (재물조사)** 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하여야한다. **제28조 (특별재물조사)** ①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월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3·3, 2000·2·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9조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중 출급을 모두 중지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재물조사의 가액)** 재물조사시의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에 의한다. [개정 97·3·3]
제20조 (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는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기재하고 그 증감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6·7·26]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31조 (재물조정)** ①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의 사유에 의한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고, 형태·용도·성능 및 가격이 유사한 품명에 한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1.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2. 수불의 착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증감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승인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삭제 [97·3·3] ④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표준서식등의 적요란에 승인일자와 근거 및 문서번호를 기재하고 표준서식등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3·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망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삭제 [97·3·3]
제21조(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6월 10일까지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99.12.31]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증감과 현재액의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국회의 정기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의 작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제32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①삭제 [97·3·3]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97·3·3]
제22조 (관리전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다만,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관리전환의 승인)**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96·7·26, 2000·2·14] 1. 6월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제33조 (관리전환의 협의등)**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관리전환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수량 및 가격 2.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관리전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에 대한 관리전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간의 관리전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물품의 정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을 때에는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관리전환하는 물품 3. 동일 물품관리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에 관리전환하는 물품 4. 취득단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중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당해 관서에서는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을 불용결정하여 관리전환하는 물품 5.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하는 물품 **제26조 (중앙관서 상호간의 관리전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대한 관리전환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조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1. 1년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취득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물품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을 요하는 물품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전환승인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명백히 하여 조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상호간의 관리전환)** ①법 제22조제3항에	을 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 3.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4.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97·3·3, 2000·2·18] **제34조 (관리전환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그 물품을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당해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이를 인도하는 시기·장소·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관서에서 당해 물품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2·14] 1.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24조 (표준서식)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28조 (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3.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4. 물품청구서 5. 물품출급증 6. 반납 및 인수증 [전문개정 2000·2·14]	**제35조 (표준서식)**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97·3·3, 2000·2·1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외의 서식등을 비치하고자 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3·3]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을 전산화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물품증감현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8] **제36조 (금액의 기록)**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서식에 기록하여야 할 물품의 가액은 그 물품의 취득금액에 의한다. 다만, 취득금액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한다. [개정 97·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물품이동상황의 정리)**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에 물품의 이동상황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물품이동의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3·3] **제38조 (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일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3·3]
제25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제29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산개발과 입·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7·26]	**제39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함에 있어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기타 서류를 전산화일로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화일의 형태·구조·사용코드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은 이 법 기타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①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	**제30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물품 2.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2절 취득	**제2절 취득**	
제28조 (취득)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31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청구한 바에 따라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물품의 취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③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취득에 관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의한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하게 된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 및 장소 3. 취득의 원인 ④제34조제4항의 규정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 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취득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이 관리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요를 조회중인 경우 그 조회중인 물품과 동일한 품명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기자재취득을 위한 사전검토)** ①물품관리관은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이 5천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총가격이 5만미합중국달러이상인 외국산 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규격의 적정성, 운용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책 및 경쟁성 유무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검토하고 기자재 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득관계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으로 제작자가 지정된 기자재 2.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제33조 (물품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6·7·26] 1.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3.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관리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조회중인 사용가능한 물품과 동일한 품명의 물품인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절 보관 **제30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32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등의 처리)**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물품(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을 제외한다)중 사용할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 **제35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국가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출납의 시기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제41조 (물품의 보관)**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기능별· 성질별·품명별·규격별·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에 대한 이동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비치하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물품스티커(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물품스티커)를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7·3·3] **제42조 (국가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그시설의 장소 및 사용기간과 그 시설에 보관할 물품의 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 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기타 관계공무원에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를 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출납증명서류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출급명령· 수령명령 또는 인도명 령을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 및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그 명령서 사본 기타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하는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44조 (국가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①물품관리관은 국가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 기타 관계공무원은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절 사용 **제33조 (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사용** **제38조 (사용)** ①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6조 (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출급을 위한 출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상용의 사무용잡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한정하여 행하고, 기타 물품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필요한 수량을 한정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물품사용공무원)** ①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물품의 사용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용중인 물품의 반납)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그에 해		**제48조 (반납)**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분류번호·품명·수량·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물품반납의 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반납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사용공무원에 대하여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밖에 물품을 인도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 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물품의 사용전환)**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①물품사용공무원은 당해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8] ③제48조제2항 전단의 규정은 물품운용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절 처분	**제5절 처분**	
제35조 (불용의 결정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99.12.31]	**제39조 (불용결정의 기준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불용의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의방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제40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96·7·26, 2000·2·14] 1. 취득단가 100만원미만의 물품 2. 사용불가능한 물품 ②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1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전환·양여·매각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2000·2·14]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 및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제52조 (불용결정의 통보)** ①영 제3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0·2·18] ②영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불용결정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18] 1. 영 제40조제1항 각호의 물품 2. 변질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삭제 [2000·2·18] 4. 보관 또는 취급에 있어서 폭발·발화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 5. 기타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제53조 삭제 [2000·2·18]
제36조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99.12.31]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1조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6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매각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매각 또는 대부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 (불용품의 상태분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상태분류기준에 의하여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상태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활용가능품과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5조 (활용가능품의 처리)** ①조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각 중앙관서에 당해 물품의 소요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내용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수리비 지출한계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7조 (불용품처분의 요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중 관리전환.양여 또는 매각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아니하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결과 소요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관리전환을 하게 하고, 소요기관이 없거나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의 방법을 통보한다. **제56조 (불용품의 해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물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7조 (불용품의 폐기 및 해체의 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폐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해체· 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해체·폐기조서에는 그 폐기 또는 해체에 관련된 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8] ③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물품을 해체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불용품처분의 정리)**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된 때에는 장부등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연월일 2. 별표 2의 물품상태분류기준에 의한 물품의 상태 ②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된 때에는 장부등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8조 (불용품의 양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양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매각의 특례)** 조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요청받거나 무상으로 양여받은 불용품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31] **제40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조달청장은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처분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처분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불용품이 매각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이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	**제42조 (불용품의 양여)**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1.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유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매각·양여·대부·해체· 폐기 등) 2. 처분연월일 3. 처분금액(매각대금·대부료등)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제59조 (불용품처분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중 불용의 결정이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의 유무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하다. **제61조 (불용품처분의 요청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행하는 불용품처분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처분요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0·2·1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물품의 이송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한 불용품의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신설 99.12.31]	인 또는 단체 **제43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①조달청장은 법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각하기 위하여 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89·8·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원매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관한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지시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경매 또는 수의계약)** ①조달청장은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결과 경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이상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붙여야 하며,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미만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서 신청자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63조 (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등은 매각할 물품에 대하여 입찰희망자 또는 원매자가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3조의2 (재활용품의 관리·수리·처분) ①조달청장은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원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수리·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	**제63조의2 (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 또는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본조신설 2000·2·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4] **제43조의3 (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중 당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2·14] **제44조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1조 (대부의 제한) ①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이를 대부할 수 없다. ②물품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제할 수 있다. **제42조 (출자등의 제한)** 물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45조 (대부료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당해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등을 참작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0·2·14] ③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제42조제3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4조 (무상대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금 **제43조 (자연감모)** 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44조 (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 제조 기타의 계약자에게 관급할 수 없다.	**제6절 자연감모** **제46조 (자연감모)**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곡물·소금 2.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14]	**제65조 (자연감모발생의 보고)** ①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긴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발생보고서에 의하되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명·자연감모량·자연감모가액·자연감모 율 2. 자연감모발생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 확인한 자의 소속·직위·성명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6조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감모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발생통보서에 의하여 행한다. 1.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감모가 생긴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발생사실을 일괄하여 통보할 것 2.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긴 때에는 제6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그 조사확인서류의 사본을 첨보하여 통보할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5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사용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손망실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할 수있다.<개정 2001.4.7>	**제47조 (손망실처리)** ①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이외의 물품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조건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 (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물품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동 물품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8] 1. 물품관리관계공무원에 대한 판정의 개요 및 변상명령의 연월일 및 금액 2. 당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상황 3. 당해 사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상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한 자의 소속·직위· 성명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7조 (준용규정)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동산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13조.제24조. 제26조.제27조.제30조.제31조.제 42조.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가 국가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을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수사 등을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서 보관된 동산 3. 법령에 의하여 통고처분 또는 국세체납처분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압류한 동산 4.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동산 [전문개정 99.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손망실처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⑥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판정의 청구)** ①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삭제 [2000·2·1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8조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의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교체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49조 (적용배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제50조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제51조 (적용배제)**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5조·법 제9조 내지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8조 내지 제25조·법 제28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3조 내지 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12·29, 2000·2·14]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의하여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써 취득한 물품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선물 7. 서화, 예술작품 8. 도서, 박물관보존물품 9. 불용품중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양여받은 불용품	**제68조 (검사)**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정기검사는 매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물품 및 표준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7·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가 소속된 물품관리관 또는 그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3] **제69조 (관계인의 참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0조 (검사서의 작성)** ①제68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附則 <제3947호,1987.1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家債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3項중 "物品管理法 第41條"를 "物品管理法 第47條"로 하고, "同法 第11條"를 "同法 第10條"로 하며, "同法 第26條"를 "同法 第31條"로 한다. ②軍需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物品管理法 第10條第4項·第11條 내지 第13條·第15條·第20條 내지 第25條·第28條·第29條·第31條·第33條 및 第35條"를 "物品管理法 第7條·第9條第3項·第10條 내지 第12條·第26條 내지 第28條·第30條·第32條 내지 第34條·第36條·第42條 및 第44條"로 한다. 第8條중 "物品管理法 第11條와 第12條"를 "物品管理法 第10條와 第11條"로 한다. 第10條第3項중 "物品管理法 第19條第3項"을 "物品管理法 第22條第3項"으로 한다. 第11條중 "物品管理法 第22條"를 "物品管理法 第28條"로 한다. ③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중 "物品管理法 第15條"를 "物品管理法 第7條"로 한다.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②조달청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는 그 관리 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0·2·1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그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검사공무원인 때에는 그 물품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에는 검사를 한 공무원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한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1조 (시험·검사)** ①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은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의 시험·검사에 관한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에관한규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 (통지의 생략)** 제23조제3항·제40조제1항·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附則(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物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 但書중 "國會와 大法院"을 "國會·大法院 및 憲法裁判所"로 한다. ⑧省略 **附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868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物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중 "豫算會計法"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 한다. ③내지 ⑥省略 **第4條 省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및 제12조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 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로 한다. 제22조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제23조·제24조·제28조· 제29조·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②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7·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부등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장부등의 서식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附則 <제5048호,1995.12.29>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제6077호,1999.12.31>**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第5條第1項"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동조제4항제4호 및 동조제5항제5호중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46조제1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제25호를 삭제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豫算會計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都給經費"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⑧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3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1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8.26 건설교통부령 제0037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본조신설 1999.9.1]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정 1999.9.1>)** ①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1999.9.1, 2000.7.10, 2001.8.28, 2002.9.18>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삭제 <2001.8.2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4.15>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등을 말한다) 7. 삭제 <2003.8.26>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제2항 각호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2.9.18> **제3조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개정 1999.9.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야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제3조 삭제 <2001.8.25>** **제4조 삭제 <2001.8.25>** **제5조 삭제 <2001.8.25>** **제6조 삭제 <2001.8.25>**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개정 1999.4.15>**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8.6>**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12.31>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개정 1999.8.6>)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개정 1999.9.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5, 1999.9.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본조신설 2003.8.2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6조 (실제확인)**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제11조 (건설업등록의 공고<개정 1999.8.6>)**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6]	**제7조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등)**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8조 (건설업등록등의 공고<개정 1999.9.1>)**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1999.4.15]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9.18]	<개정 1999.9.1, 2003.8.26>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9.18]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		<개정 2001.8.28, 2002.9.18>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조제4항의 규정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9.18> ⑤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⑥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제11조 (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8.6>)**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4.15> ②삭제<1999.4.15>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4.15>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개정 1999.4.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2002.1.26>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을 것 나. 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이며 가. 삭제 <1999.8.6>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 제1호 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⑤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14조 삭제 <1999.8.6>**	[본조신설 2002.9.18] **제11조 삭제 <2003.8.26>** **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개정 1999.9.1, 2003.8.26>)** 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9.1, 2003.8.26> **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개정 1999.9.1>)** 건설업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9.1> **제14조 삭제 <1999.9.1>** **제15조 삭제 <1999.9.1>** **제16조 삭제 <1999.9.1>** **제17조 삭제 <1999.9.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자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9.4.15>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1999.4.15>**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개정 1999.8.6]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개정 1999.8.6>)**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1.8.25> ②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8.6> ③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삭제<1999.4.15>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8.6>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개정 1999.8.6, 2000.5.1>)**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제18조 (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제19조 삭제 <1999.8.6>** **제20조 삭제 <1999.8.6>**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삭제 <1999.8.6>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22조 삭제 <1999.8.6>** **제23조 삭제 <1999.8.6>** **제24조 삭제 <1999.8.6>**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9.18>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3.8.26>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5]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1. 삭제 <2002.1.26> 2. 삭제 <2002.1.26> 3.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니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제21조(건설업등록증등의대여금지<개정 1999.4.15>)**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양도하는 때 4. 삭제 <2002.9.18> 5. 삭제 <2002.9.18> ⑦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9.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전문개정 1999.9.1]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9.18>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지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1999.9.1]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1999.9.1]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02.9.18>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국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18]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②삭제<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 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자 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9.18>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6>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8.26>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02.9.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3. 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잔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전문개정 1999.9.1]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등<개정 2003.8.2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6. 보유기술자수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③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1>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발전소,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9.1>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제27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02.9.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개정 1999.4.15>)**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1999.8.6>**	사본 등의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9.18]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25조의4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자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4.15>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개정 2002.1.26>)**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삭제 <2003.8.26>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고현황 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26조 (하도급계약등의 통보서<개정 1999.9.1>)**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통보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1>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③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⑥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신설 2002.1.26>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제27조 (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9조 (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개정 1999.8.6>)**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③삭제 <1999.8.6>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신설 1999.4.15>		
제30조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국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제33조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②국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27조 (공사일부의 하도급)**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개정 1999.9.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를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	**제34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9.18> [전문개정 1999.8.6]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3.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text{공사기간(월)}} \times 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전문개정 1999.4.15]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2.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삭제 <2002.9.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8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1> 1.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7조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③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0조 삭제 <1999.9.1>**
제39조 삭제<1999.4.15>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43조 삭제<1999.4.15>**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본조신설 2002.9.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제38조 삭제 <1999.8.6>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 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 을 정할 수 있다.	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제40조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	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1.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 삭제 <2003.8.26>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34조 (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50조 (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 삭제 <1999.8.6>** **제46조 (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개정 1999.4.15> **제52조 (건의와 자문등)** ①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4.15>	**제47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 (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제49조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4.15>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8.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 1인 4.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8.6>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1999.8.6>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1999.4.15>	**제53조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54조 (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제1호 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99.4.15>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동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 있다.<개정 1999.4.15> **제57조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민사집행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99.4.15>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9.4.15>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 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1999.8.6>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65조 (조사 및 검사<개정 2002.1.2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8.6>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6> **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등)**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개정 1999.8.6>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9.4.15>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제62조 (수수료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64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①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4.15>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2항제6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 (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4.15>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99.4.1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 (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1. 건설교통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 2.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각 1인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3인 2.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제69조 (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2조 (조정신청의 통지)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제71조 (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4조 (처리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76조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4조 (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7조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 (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4.15> **제79조 (비용의 분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 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제7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69조 내지 제79조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관할,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시정명령등	**제9장 시정명령등**	
제81조 (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1. 삭제<1999.4.15>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5.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9.18>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 (영업정지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2.9.18]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지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8.6>	**제36조 (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개정 1999.4.1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제82조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 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1999.4.15> 4. 삭제<19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제83조의2 (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 ①법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시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8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97.12.13]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하며,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37조 (보고서식)** ①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1.25, 1999.9.1> ②삭제 <1999.9.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체 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④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제9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1999.4.15>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1. 삭제<1999.4.15> 2. 삭제<1999.4.15>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3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3. 삭제 <1999.8.6>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삭제 <1999.8.6>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7. 삭제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종합관리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삭제 <2002.1.2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3.8.21> **제87조 (권한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 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2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3의2.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 삭제<1999.4.15> 6. 삭제<1999.4.15>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1. 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건설사업관리협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92조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전문개정 1999.8.6]	
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93조 (벌칙) ①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2003.11.29>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철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1999.4. 15, 2002.1.26, 2002.12.18, 2002.12.18>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1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제98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삭제<1999.4.15>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제89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9.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4.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1999.4.15> 6. 삭제<1999.4.15> 7. 삭제<1999.4.15> 8.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0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2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부과징수한다.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2004.3.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지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9.8.6>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지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8.6>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4.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부칙 <제15433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113호,1997.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업체진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업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양수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하는 건설업양도인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무하도급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27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 등에 대한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6.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녹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영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영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	**제8조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98년 6월 30일까지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4호,19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199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47호,2000.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이화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영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녹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 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 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②(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부칙 <제295호,2001.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2.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영위기간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녹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녹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371호,2003.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0조의2제4항제18조제7항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영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이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을 한 유특관이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3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이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1종)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1종)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난방시공업(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난방시공업(제3종)
온돌시공업	난방시공업(제2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	**부칙 <제16512호, 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제1조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약>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6514호, 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 증축"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65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자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	**부칙 <제16790호,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조합법시행령) <제16798호,2000.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7347호,2001.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6112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40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802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740호,2002.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92호,2003.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38호,2003.7.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미장방수공사업 조적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 │창호공사업 철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 │지붕판금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54>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10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4.19 대통령령 제1837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1214, 1992128, 199515, 19961230, 1999.2.5>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제1조의2 (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②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1997.3.31> ③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신설 1997.3.31> ④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7.3.31> ⑤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법 률	시 행 령
3. 삭제 <199515> 4. 삭제 <199515> ③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199515> ④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 또는 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0.1.21> 1.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사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물품의 판매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신설 1997.3.31, 1999.3.31> ⑥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⑦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0.8.17. 2003.11.29, 2004.3.29, 2004.4.19>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등록업자 3. 삭제 <2000.8.17> 4. 삭제 <2000.8.17> 5. 삭제 <2004.4.19>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전문개정 1995.4.1]

법 률	시 행 령
3. 물품의 수리 4. 건 설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61230> ⑧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7.12.13, 1999.2.5, 2003.5.29, 2004.1.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⑩이 법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 수리 또는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신설 1999.2.5>	

법 률	시 행 령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4.1.20>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20> 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3.31>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 (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1.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법 률	시 행 령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법 률	시 행 령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8113, 2004.1.20> ③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신설 1996 1230, 1999.2.5>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1992128>	

법 률	시 행 령
제8조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	

법 률	시 행 령
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③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법 률	시 행 령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1998113, 2004.1.20> **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삼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5]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5>	

법 률	시 행 령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5>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5>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1998-1-13, 2004.1.20> ⑧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률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률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2-12-8, 1999.2.5>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3.31, 2001.9.29, 2004.4.19>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

법 률	시 행 령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개정 19971213, 2004.1.20>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③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7.3.31]

법 률	시 행 령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0>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4.1.2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4.1.2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4.1.20>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19]

법 률	시 행 령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①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8113, 2004.1.20> **제1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 동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률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신설 19961230, 1999.2.5>	

법 률	시 행 령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자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 **제23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거래가 종료된	**제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 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0, 1995.4.10, 1997.3.31> **제6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

법 률	시 행 령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전문개정 1992-128]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량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개정 1990-113, 1996-1230> ③협의회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7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4·1, 1997·3·31, 1997·12·31, 1999·3·31>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다만, 소프트웨어개발업·엔지니어링활동업·건축설계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제조위탁을 제외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 설치)	법 제2조(정의)제9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위탁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②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4·14, 1997·3·31>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1993.2.20, 1997.3.31>

법 률	시 행 령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단체)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1990.4.14, 1997.3.31> **제10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분쟁의 조정등)** ①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3.31> ③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법 률	시 행 령
	1990·4·14, 1997·3·31> ④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14, 1999.3.31> ⑤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의2 (자문위원)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3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1990.4.14> **제13조의2 (자문위원)** ①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25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1999.2.5> ②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19961230> ③삭제 <1990113>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법 률	시 행 령
제25조의2 (공탁) 제25조(시정조치)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2128]	**제14조 (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공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본조신설 1993.2.20]
제25조의3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4.1.20> 1.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2.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4의2.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5.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은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4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14조의3 (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및가산금) 내지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3.31, 2004.4.19> [본조신설 1997.3.31]

법 률	시 행 령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515, 19971213> **제2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1995.1.5>)**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회의개의 및 의결정족수) 내지 제45조(위원의 기명날인) 및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를,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동법 제53조(이의신청) 내지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②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제2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19961230>	

법 률	시 행 령
제29조 (벌칙)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2004.1.20> 1. 삭제 <19961230> 2. 삭제 <19961230>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의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내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시정조치)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4.1.20> 1.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법 률	시 행 령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2128]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61230>	
제32조 (고발) 제30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법 률	시 행 령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2128] **제33조 (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개정 199515, 1997828, 19971213> **제3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779호,1984.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198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 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부칙 <제11676호,198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의 전문건설협회가 이 영에 의하여 수행할 사항은 전문건설협회의 설립일까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에 설치된 전문회원전국협의회가 이를 행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3844호,1993.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567호,199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7항중 "소방법 제42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514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6조제7조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행위에"로 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동법 제25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486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2조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2조제4호·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329호,1997.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제1항 별표 제2호, 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제4항 및 제5항,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와 제14조의2(준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16222호,19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부칙(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89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생략 **제11조 생략** **제34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5234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25조의3(과징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7385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건설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및 <54>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이자제한법폐지법률) <제5507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률"을 "공정법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률"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소방법) <제5756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제2조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부칙 <제5816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6198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371호,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유형별 점수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정조치유형별 점수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2조제6항제1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3>생략 **제6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0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4.1 대통령령 제18356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3.27>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전문개정 1999.3.31]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법 률	시 행 령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률,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법 률	시 행 령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 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1.7.24>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법 률	시 행 령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삭제 <1999.3.31>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법 률	시 행 령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회사정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3.2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이상으로서 당해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법 률	시 행 령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본조신설 1997.3.31] **제4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2조(정의)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법 률	시 행 령
	④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4조의2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신설 1999.2.5>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2.5>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12.30>]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법 률	시 행 령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지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2.5]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④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⑤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법 률	시 행 령
	제6조 (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3.31>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개정 2001.3.27, 2002.3.30>)**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법 제27조(시정조치)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2001.3.27, 2002.3.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②기타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전문개정 1997.3.31]
	제9조의2 (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

법 률	시 행 령
	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1>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삭제 <2004.4.1>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2.5>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3.31, 1999.3.31>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

법 률	시 행 령
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당해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1996.12.30, 1999.2.5>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에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로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개정 1999.3.31>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의2 (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제1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5호 가목 및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3.30> [본조신설 1999.3.31] **제12조의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1999.3.31] **제13조 삭제 <1999.3.31>** **제14조 삭제 <1999.3.31>**

법 률	시 행 령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	
제7조의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9.2.5]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신고인·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

법 률	시 행 령
	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8조의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 ①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3.27]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2001.3.27>] **제15조의3 (지배목적의 주식소유)**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이를 지배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3.31]

법 률	시 행 령
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라목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라.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한 지주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	[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2001.3.27>] **제15조의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4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등의 역무의 제공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본조신설 1999.3.31] [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2001.3.27>] **제15조의5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에서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3.27> 1.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가.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나.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등의 역무의 제공 다.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라.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등의 공급 마.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2.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제15조의3(지배목적의 주식소유)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9.3.31]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2001.3.27>] **제15조의6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 률	시 행 령
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②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및 당해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연간은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명칭·소재지·설립일·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 4.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총액·부채총액·자산총액등 재무현황 5. 자회사가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주주현황·주식소유현황·재무현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2. 자회사의 주주명부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회사의 영업보고서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31] [제15조의5에서 이동<2001.3.27>]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개정 2002.1.26>)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법 률	시 행 령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본조신설 1999.2.5]	**제16조 삭제 <1999.3.31>**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개정 2002.3.30>)**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3.30> 4. 삭제 <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법 률	시 행 령
	②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신설 2002.3.30>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산정된 부채비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부채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0분의 100 미만인 기업집단.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정된 부채비율로 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제3항제1호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면제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부채비율 $$\text{부채비율} = \frac{\text{연결대상 국내계열사 자산총액}}{\text{기업집단 국내계열사 자산총액}} \times \frac{\text{연결재무제표상 총부채액}}{\text{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액}} + \frac{\text{비연결대상 국내계열사 자산총액}}{\text{기업집단 국내계열사 자산총액}} \times \frac{\text{비연결대상 국내계열사 총부채액}}{\text{비연결대상 국내계열사 자본총액}}$$

법 률	시 행 령
	③삭제 <1999.3.31> ④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①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6>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또는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 2003.3.31] 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제17조의2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개정 2002.3.30>)** ①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2.3.30>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2.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을 활용하는 산업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관련 산업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 ②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2.3.30> 1.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3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합병할 예정으로 동종의 영업[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당해영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존 또는 신규 핵심사업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당해핵심사업부문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6> 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2.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1.26>	4.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5.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당해신설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당해영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신설회사의 출자자지분중에서 최대일 것 나. 당해신설회사가 같은 계열회사가 아닐 것 6. 삭제 <2002.3.30> 7.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를 신청한 회사 또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를 매각할 목적으로 당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7의2. 당해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7의3. 동일인이 계열회사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8. 삭제 <2002.3.30> 9.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원료 또는 부품을 주로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10.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업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

법 률	시 행 령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순자산액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연간은 다음 각호의 1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회사의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2.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통신우수신기술 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신기술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도입기술 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 마.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기술 ③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7.24, 2002.3.30> 1. 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다만, 제2항제9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2. 제2항제2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④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2.3.30>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⑤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 본문의 규정은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적용한다. <신설 2002.3.30>

법 률	시 행 령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9.12.28]	1. 출자총액제한회사(이하 이 항에서 "출자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 경우 출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이하 이 항에 서 "피출자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영업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을 기준으로 하되, 그 영업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2위(그 비중이 100분의 15 이상인 영업에 한한다)인 영업을 포함하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나. 피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으로서 그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가.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가 판매하거나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피출자회사 전체 판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가 판매하거나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출자회사 전체 판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가 유지·관리·보수하거나 피출자회사의 매출중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라.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가 유지·관리·보수하거나 출자회사의 매출중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100분의 50

법 률	시 행 령
	이상인 경우 마.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에 원재료·부품 등으로 공급하거나 피출자회사의 전체 원재료·부품 등에서 출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바.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에 원재료·부품 등으로 공급하거나 출자회사의 전체 원재료·부품 등에서 피출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출자회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4.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 가. 인·허가사항, 정관 등에 의하여 출자회사가 영위하는 제1호 가목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명백한 회사 나. 출자회사가 당해 설비 또는 용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설비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1. 신청서 및 출자내역 증명서류 2. 제2항제10호,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매출액비중·거래비중 등 증빙서류 3. 기타 요건충족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당해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3.27> [본조신설 2000.4.1]

법 률	시 행 령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개정 2001.1.16>)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8, 2002.1.26>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개정 1997.8.30, 1997.12.13, 1998.2.24, 2002.1.26>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1998.1.13>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삭제 <1998.2.24> ④삭제 <1998.2.24>	**제17조의3 삭제 <1998.4.1>** **제17조의4 삭제 <1998.4.1>** **제17조의5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개정 2001.3.27>)** 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1.3.2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법 률	시 행 령
[본조신설 1992.12.8] **제10조의3삭제 <2001.1.16>**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1996.12.30, 2002.1.26>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본조신설 1993.3.20] **제17조의6 (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3.27> [전문개정 1998.4.1] **제17조의7 삭제 <2001.3.27>**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④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본조신설 2000.4.1]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2001.1.1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본문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

법 률	시 행 령
2. 임원겸임의 경우 3.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촵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촵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기업결합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및제8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⑤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는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16> ⑦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16>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16>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2.30]	<개정 1999.3.31, 2001.3.27> ⑦삭제 <1999.3.31> [전문개정 1997.3.31]
제13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6>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2.1.26> ③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2001.1.16>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법 률	시 행 령
④삭제 <1996.12.30>	3.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3.27>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6. 제4호·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2.3.30>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개정 2002.1.26>)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②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12.30, 1999.2.5>	**제20조의2 삭제 <2001.3.27>**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개정 2002.3.30>)**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0.4.1, 2002.3.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법 률	시 행 령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촵제3항,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1.1.16, 2002.1.26> 1.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연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연간은 지정일 또는 편입일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이하 이 호에서 "회사정리절차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등이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0.4.1, 2002.3.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0, 2002.3.30> ④법 제14조의3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2.3.3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를 각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개정 2002.3.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법 률	시 행 령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8.2.24, 2002.1.26> **제14조의2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12.30,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촵제3항,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1.1.16, 2002.1.26> 1.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연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연간은 지정일 또는 편입일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⑦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3. 지정일 이후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서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이하 이 호에서 "회사정리절차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등이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8.2.24, 2002.1.26>	
제14조의3 (계열회사의 편입촵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촵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2.5]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1999.2.5>]	
제14조의4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내지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촵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의	**제21조의2 (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법 률	시 행 령
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998.1.8, 1998.2.24, 2002.1.26>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2. 삭제 <1998.2.24>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6.12.30] [제14조의3에서 이동<1999.2.5>]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21조의3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2001.3.27, 2002.3.30> 1.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가 회사의 내부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업결합외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1)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3)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나. 당해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행위 다. 대규모로 수요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제16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법 률	시 행 령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1. 당해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법위반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2002.1.26> **제17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8.2.24, 1999.12.28>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6.12.30, 1998.2.24, 2001.1.16> ③삭제<1999.2.5>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22조 삭제 <1999.3.31>** **제23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4호·제5호,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및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개정 2001.3.27> [본조신설 1999.3.31]

법 률	시 행 령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16, 2002.1.26> 1.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본총액을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8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3호 본문촵제4호촵제5호 또는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17조의2 (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일 또는 편입일 이후에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과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다. ③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의 대상 주식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 또는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

법 률	시 행 령
③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2.1.26>]	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식의 발행회사 2. 제1호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중 대상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총주식수 및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식수 ④대상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상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동되는 주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또는 이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식 중 직전에 공시된 주식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2.3.30>]
제17조의3 (이행강제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6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제23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법 률	시 행 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②이행강제금의 부과촵납부촵징수촵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사실의 등기일,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매사업연도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 사유·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법 률	시 행 령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02.3.30>]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제16조(시정조치)제1항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②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③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1999.12.28>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전문개정 1992.12.8]	**제23조의4 (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새로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2. 최근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본조신설 2000.4.1] [제23조의3에서 이동 <2002.3.30>]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입찰·정찰·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

법 률	시 행 령
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1999.2.5>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4조의3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3.2.20]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법 률	시 행 령
⑤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2.12.8> **제20조 삭제 <1996.12.30>** **제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7.3.31]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법 률	시 행 령
	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개정 1997.3.31>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①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률	시 행 령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3.31> **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7.3.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신설 1997.3.31>

법 률	시 행 령
제22조의2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개정 2001.1.1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참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본조신설 1996.12.30]	④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33조 삭제 <1999.3.31>** **제34조 삭제 <1995.4.1>** **제35조 (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①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75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법 률	시 행 령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3.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안에서 감경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것 [전문개정 2001.3.27]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1999.2.5>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한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1999.2.5>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촵대여금촵인력촵부동산촵유가증권촵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촵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37조 (공정경쟁규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삭제 <1999.3.31> **제38조 삭제 <1999.3.31>** **제38조의2 삭제 <1997.3.31>**

법 률	시 행 령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5>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전문개정 1996.12.30]	
제6장 사업자단체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 삭제<1999.2.5>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1999.2.5>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제39조 삭제 <1999.3.31>**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①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제41조 삭제 <1999.3.31>** **제42조 삭제 <1997.3.31>**

법 률	시 행 령
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제28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법 률	시 행 령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촵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제45조 삭제<1999.3.31>**
제3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제46조 삭제<1999.3.31>**
제31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6조의2 삭제<1997.3.31>**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	**제47조 (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법 률	시 행 령
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2.12.8>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음반·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전문개정 1997.3.31]
제33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국제계약이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4.12.22]	**제48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①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와 당해 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3.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3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찹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1996.12.30>	

법 률	시 행 령
제3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전문개정 1995·4·1]
제9장 전담기구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개정 1997.3.31>**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촵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법 률	시 행 령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7조(사무처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신설 1996.12.30, 1998.2.28>	
제37조의2 (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9조 (소회의의 구성)** ①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5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제37조의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1.16>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제53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법 률	시 행 령
[본조신설 1996.12.30] **제38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2.5> **제39조 (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9.2.5> ②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43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참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5조 (위원의 서명·날인<개정 1999.2.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4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51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3조 (위원의 수당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6.12.30, 2001.1.16>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신고인의 성명·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개정 2001.1.16>)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촙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3.27>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2001.3.27> ③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

법 률	시 행 령
의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2002.1.26>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유효기간 2001.4.2]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활사용목적·활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유효기간 2001.4.2] 정보	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2001.3.27>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개정 1997.3.31, 2001.3.27>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3.31, 2001.3.27> **제57조 (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법 률	시 행 령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연간 동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유효기간 2001.4.2]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5> [유효기간 2001.4.2]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58조 (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8조의2 삭제<1997.3.31>**
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53조 (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구조·점유율·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53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54조 (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법 률	시 행 령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1996.12.30> **제55조의2 (사건처리절차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신설 1997.3.31>**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촵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②삭제 <2004.4.1>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61조의2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법 률	시 행 령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3.31]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법 률	시 행 령
되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의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2.5>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⑤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64조 (독촉)** ①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64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1999.3.31] **제64조의3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5(과징금징수 및 체납처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법 률	시 행 령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55조의6 (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64조의4 (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 (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6조의2 (기록의 송부등)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57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법 률	시 행 령
②제1항 본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개정 1996.12.30>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삭제 <1996.12.30>	
제13장 보칙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	

법 률	시 행 령
가격촵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례규촵고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례규촵고시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례규촵고시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4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65조 (권한의 위임촵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촵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법 률	시 행 령
있다.<개정 1996.12.30> **제14장 벌칙** **제6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법 률	시 행 령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8.2.24, 1999.2.5, 2002.1.26> 1. 삭제 <1996.12.30>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6.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제1항,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또는 제3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1.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한 자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법 률	시 행 령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유효기간 2001.4.2] 7. 삭제 <1994.12.22> 8. 삭제<1999.2.5> [전문개정 1992.12.8]	
제69조 (벌칙) 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9.2.5, 2002.1.26> [유효기간 2001.4.2] ②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제65조 (과태료의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69조의2 (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66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3.31]

법 률	시 행 령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촬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유효기간 2001.4.2] ②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촬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2.12.8]	
제70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촬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법 률	시 행 령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6.12.30, 1996.12.30> **제71조 (고발)** ①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신설 1996.12.30> [전문개정 1992.12.8]	
부칙 <제4198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촵승인촵인정촵지정촵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촵승인촵인정촵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촵신청촵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촵신청촵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부칙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촵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촵제22조제1항촵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촵제23조제1항촵제25조제1항촵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촵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④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3842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566호,199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한 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신주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5328호,19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4항·제17조(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제3항 및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는

법 률	시 행 령
제27조촵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19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③및 ④생략 **부칙 <제451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내지 <22>생략 **부칙 <제15767호,1998.4.1>**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790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83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촵인사촵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부칙 <제16221호,19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체납된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6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430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685호,199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77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당해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신규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법 률	시 행 령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235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주택은행법) <제5403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부칙 <제17176호,2001.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방법)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주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317호,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4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종전의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증권거래법) <제5498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8356호,200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5528호,19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제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예외인정기간은 2000년 3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법 률	시 행 령
제9조 생략 **부칙 <제5813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5항촵제6항촵제7항촵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5항촵제6항촵제7항촵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16> ③(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표시촵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81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촵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촵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촵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촵광고의 자율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⑥내지 ⑫생략 **부칙 <제6043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및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년1월 1일부터 2002년 3월	

법 률	시 행 령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년 4월 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주식은 2001년 4월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71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②(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51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년 4월 1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법 률	시 행 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7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12.15 건설교통부령 제00382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이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이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노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이·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제2조 삭제 <1997.7.21>**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1997.7.21]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제2조 (중대한 재해)**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본조신설 2001.8.13] **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8.13>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18]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영영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95.8.4]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공모 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사업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1997.8.25>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상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1.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검측감리"라 함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시공감리"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전문개정1997.1.13]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3.3.12> ④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1.7.30>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제6조 삭제 <1995.8.4>**	2.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⑦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의 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전문개정 1995.10.12] **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13, 1997.8.25, 1999.12.6, 2001.8.13>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8.25>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99.12.6, 2001.8.13> ④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令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2001.1.16>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97.7.21, 1997.12.9, 1999.1.21, 2001.7.30. 2003.11.2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19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⑤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⑦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⑧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1.5, 1997.1.13>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30>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30>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7.30> ⑤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제4조의3 (사용자의 보고의무)** ①건설관련업체는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소재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6, 2001.8.13>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2001.8.13>[전문개정 1997.8.25] **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0.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6.11, 1995.1.5> ④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1993.6.11, 1995.1.5>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5.8.4] **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2003.11.29>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변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④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본조신설 1995.10.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③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13> ④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본조신설 1995.8.4] **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6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보고의무) ①제6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는 건설기술자의 취업및 퇴직상황 기타건설기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본조신설 1995.1.5]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7.1.13>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2. 삭제<1999.4.15>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이상 받은 때 8.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9.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 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0.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2.12.26,1994.12.23,1995.8.4,1997.7.21, 1998.2.2, 1999.10.30, 2003.3.12>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하천법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1997.7.21>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 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8.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9. 삭제 <1993.12.31>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5.8.4>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5.8.4>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3.3.12>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9.10.30>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2.26> ⑥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제11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19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26, 1993.12.31, 1994.12.2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995.8.4, 1999.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10.30>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15조 (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2.12.26, 1995.8.4> ②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1994.12.23, 1995.8.4, 1999.10.30>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0.30> ②삭제 <1999.10.30> ③삭제 <1999.10.30> ④삭제 <1999.10.30>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2.12.26, 1995.8.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의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2001.7.30> ④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5.8.4, 1999.10.3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이상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없다. <개정 1992.12.26>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0.30>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개정 2001.7.30>)** ①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본조신설 1999.10.30] **제3장 삭제 <1999.1.29>** **제22조 삭제 <1999.1.29>** **제23조 삭제 <1999.1.29>** **제24조 삭제 <1999.1.29>** **제25조 삭제 <1999.1.29>** **제26조 삭제 <1999.1.2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개정 2001.1.16>	제4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제3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제1절 삭제<1999.1.29> 제7절 삭제<1999.1.29> 제8절 삭제<1999.1.29> 제9절 삭제<1999.1.29> 제10절 삭제<1999.1.29> 제11절 삭제<1999.1.29> 제12절 삭제<1999.1.29> 제13절 삭제 <1993.6.11> 제14절 삭제<1999.1.29>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개정 2001.1.16>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9.10.30>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4.18]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1994.12.23, 1999.10.30>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개정 2001.7.30>)**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⑧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⑤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신설 2001.7.30>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7.30> [본조신설 1999.10.30]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1.29> ②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 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협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및 접수 2.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제31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매년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2001.7.30>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삭제 <1995.8.4> 5. 삭제 <1995.8.4>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10.12> ②삭제 <1995.10.12> ③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기간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4.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제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6] **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2.6> ②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8>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10.30] **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전문개정 1999.10.30]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삭제 <1997.7.21>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1999.12.6] **제12조의2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4.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②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7.1.13>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1999.10.3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대령 15569, 1999.10.30, 2002.1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전문개정 1995.8.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1993.6.11]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7.12.13, 2001.1.16> ②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	**제34조의2 (신기술의 보호기간)**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3.12> [본조신설 1999.10.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3.6.11,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3 삭제<1999.4.15>**	**제34조의3 (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31] **제35조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1999.10.30>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12조의3 삭제<1999.12.6>** **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2조의5 삭제 <1999.12.6>** **제12조의6 삭제 <1999.1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시설물의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설계기술·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발주는 당해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한다. <신설 2001.7.30>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35조의2 삭제 <1999.10.30>** **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예정용역사업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5.8.4, 1999.1.21> **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1997.8.25,1999.2.18,1999.12.6, 2001.8.13, 2003.4.18>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이 경우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등에 심의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6 삭제<1999.4.15>** **제20조의7 삭제<1999.4.15>**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	**제37조의2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7.30]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01.7.30>] **제37조의3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7.30] [제37조의2에서 이동<2001.7.30>]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 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3. 삭제 <2001.8.13> 4.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모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④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②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③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3.4.18> ④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1999.12.6, 2001.8.13, 2003.4.18> ⑤삭제 <1999.12.6> ⑥용역현황관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3.4.18> [전문개정 1995.10.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8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2.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전문개정 2001.7.30] **제38조의3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①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기술공모에 의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①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18> ②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별표 7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2.18>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3 (기술·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영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개정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1.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③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등 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4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전문개정 2000.3.28] **제38조의5 (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공사의 필요성	2.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4. 설계비가 5억원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5.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4 삭제 <2003.4.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38조의6 (타당성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2003.4.18>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의 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3.4.18>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0.3.28]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996.9.7, 1997.8.25,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개정1997.1.13, 2001.1.16>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제13조의6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등)** ①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은 별표 8의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8.13, 2003.4.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4. 점검내용 ②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건설교통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신설 2001.8.1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④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단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2003.4.18> ⑤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20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13] **제13조의10 삭제 <1999.12.6>** **제14조 삭제 <1999.1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타당성, 개발에 있어서의 지역간 균형 및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호의 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수행방식 [전문개정 2000.3.28]	
제22조 (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②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1.16> ③삭제<1999.4.15> [본조신설 1995.1.5]	**제38조의9 (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복합공종)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3.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기본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명시할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할 것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등을 명시할 것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실시설계를 하는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타당성조사를 하는 때 [전문개정 2000.3.28] **제38조의10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3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38조의11 (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제38조의10의 규정은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8.25] **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1995.10.12]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②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본조신설 1995.10.12] **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당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2 (측량 및 지반조사)**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	**제14조의6 삭제 <1999.12.6>** **제14조의7 삭제 <1999.1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15조 (품질보증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건설공사)** 영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2, 1997.8.25,1999.2.18, 1999.12.6>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1997.8.25] **제15조의3 (품질보증계획의 내용등)** ①영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12.6> 1. 문서 및 자료관리 2. 구매 3. 고객지급품의 관리 4. 제품식별 및 추적성 5. 공정관리 6. 검사 및 시험 7.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6 (준공)**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6.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7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①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 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8. 검사 및 시험상태 9. 부적합품의 관리 10. 시정 및 예방조치 11.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12. 품질기록의 관리 13. 내부품질감사 14. 교육훈련 15. 부가서비스 16. 통계적 기법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은 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5] **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①법 제24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행한 자 및 설계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수행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자를 말한다)의 공사참여기간·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8 (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전문개정 1997.8.25] **제17조 삭제 <1997.8.25>** **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8.25> ②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0.12, 1997.8.25> **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축척·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9 (유지·관리)** ①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20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8.13>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2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③삭제 <1997.8.25> ④삭제 <1997.8.25> ⑤삭제 <1997.8.25> ⑥삭제 <1997.8.25> **제21조 삭제 <1997.8.2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10.30, 2001.7.30>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시행령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동법 동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동법 동조제10호의 관계시설, 동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동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21>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5, 2001.8.13>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4.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시정조치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0.30> [본조신설 1995.8.4] **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주요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본조신설 1995.8.4] **제39조의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③영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제21조의4 (안전관리비)**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3. 발파·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1.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영 제4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장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등 관련분야의 설계혹 기준을 적용할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7.30]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6으로 이동 <2001.7.30>]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제22조 삭제 <1997.8.25>** **제23조 삭제 <1999.12.6>** **제24조 삭제 <1997.8.25>** **제25조 삭제 <1997.8.25>**
	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30]	**제25조의2 (공장인증등)** ①영 제4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3.4.18> 1. 삭제 <2003.4.18> 2.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영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며,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공장인증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999.2.18> ④삭제 <1999.2.18> [본조신설 1997.8.25]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①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9조의5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7.30] **제39조의6 (설계등의 표준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7.21] [제39조의2에서 이동<2001.7.30>]	**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등)** ①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성과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23 삭제<1999.4.15>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1997.1.13>[본조신설1995.1.5]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④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⑤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의 확인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전문개정 1997.7.21] **제41조 (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법 제24조	**제27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3.4.18> 1.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시험실 배치평면도 및 면적검토서를 말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증서 사본 3. 기술인력의 성명·자격 및 경력 등과 기술인력의 보유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분야를 증명하는서류 5. 기타 시험업무처리의 요령및 인력·장비의 관리·운 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본조신설 1997.1.13]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이하 "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1.7.30>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전문개정 1997.7.21] **제42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등)** ①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	서식의 품질검사 전문기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④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⑤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⑥영 제49조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 영 제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의 변동을 말한다. <신설 1997.8.25, 1999.1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30> 1. 경영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30, 2003.11.29> 1.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7.1.13]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6]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97.7.21] **제43조 (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0.30> ②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전문개정 1997.7.21] **제44조 삭제 <1999.10.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때 2.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본조신설 1997.1.13]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여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신설 1999.4.15> [전문개정 1997.1.13]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4.15>)**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②삭제 <1993.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전문개정 1997.7.21] **제46조 삭제 <1997.7.21>**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3. 삭제 <2001.7.30>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 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7.21]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	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30> ④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⑥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7.30>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비·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7.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발주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6조의6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3.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8.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4.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2.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④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01.7.30]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30]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7.30]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01.8.13]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01.8.1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7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 등) ①삭제 <2001.7.30>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8.12.31, 1999.2.1, 2000.3.28, 2001.7.30>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②삭제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제47조의3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본조신설 2001.7.30] **제47조의4 삭제 <1999.10.30>** **제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분야 2. 건축분야 ③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1.7.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7.7.21] **제47조의6 (공장인증의 유효기간)**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은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7조의7 (공장인증의 취소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8조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5.24, 1997.7.21, 1999.1.21, 1999.5.24, 2001.7.30, 2002.9.11>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방부 조달본부 5. 조달청 중앙보급창 6. 지방해양수산청 7. 삭제 <1995.8.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1.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현황 3. 시험실시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실적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이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1999.10.30>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9.10.30>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1. 종합분야 2. 토목분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건축분야 4. 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섬유·용접)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가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지의 여부 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토목분야·건축분야 및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행할 수 있다. <신설 1997.7.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9.10.30>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1995.1.5>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1999.10.30>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분야 4. 삭제 <1997.7.21> 5.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6.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⑦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8.4, 1997.7.21>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제49조의2 삭제 <1995.8.4>**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	**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제28조의3 (기타 구조물공사)**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제28조의2에서 이동 <2001.8.13>] **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7.8.2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1997.1.13, 2001.1.16>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전문개정 1993.6.11]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16]	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더. 관람집회시설공사 러. 전시시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버. 송전공사 서. 변전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저. <삭제>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1의2. 준설공사 1의3.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1의4. 굴토·정지등 단순토공사 2. 구조물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3. 창고·축사등의 건축등 단순공사 4.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1995.10.12] **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4.18> ②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제30조 삭제 <1999.2.18>** **제31조 삭제 <1995.10.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2000.3.28>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50조의2 삭제 <1995.8.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8조 (감리전문회사) ①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1997.1.13,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6.11, 1995.1.5, 1997.1.13>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1993.6.11,1995.1.5,2001.1.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1993.6.11, 1995.1.5>	**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14, 1993.12.31, 1995.8.4, 1999.10.30, 2001.7.30> ②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1995.8.4> ③삭제 <1999.10.30> 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⑤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8.4, 19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⑦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에 갈음한다.<개정 1997.1.13> ②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3, 2001.1.16> [본조신설 1995.1.5]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 <1995.1.5>]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1.1.1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10.30, 2001.7.30> 이 위탁한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는 이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①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1.7.30> ②삭제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④삭제 <1997.7.21> ⑤삭제 <1997.7.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삭제 <2001.1.16> [본조신설 1995.1.5]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④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의2에서 이동<1995.1.5>] 제28조의5 삭제<1999.4.15> 제28조의6 삭제<1999.4.15>	⑥삭제 <1999.1.21> ⑦삭제 <1997.7.21> ⑧삭제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7.21, 2001.7.30>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7.30>	**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②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③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④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⑤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7.30>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제출하여야한다.<신설 1995.10.12, 1999.12.6. 2001.8.13> ⑥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6> **제33조 삭제 <1995.10.12>** **제34조 (감리원의 업무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8.13>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및 준공검사 3. 행정지원업무 4. 설계도서의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책임감리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 종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③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0.3.28, 2001.7.30> 1. 삭제 <2001.7.30> 2. 삭제 <2001.7.30> 3. 삭제 <2001.7.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3.12> ⑥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⑨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1.8.13>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등)** ①영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8.13>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②삭제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제35조 삭제 <1999.2.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의 상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30> [전문개정 1995.8.4] **제52조의2 삭제 <1999.10.30>** **제52조의3 (발주청의 지원업무)** ①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②발주청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감리용역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0.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본조신설 1995.8.4]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5.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1.1.16> 4. 삭제 <2001.1.16>	**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5.8.4, 1997.7.21> ②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③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④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⑤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8.4,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녹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의3 (등록취소등의 공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3년간 5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정지기간중 책임감리등을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임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때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 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9. 2년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을 때. 이	②삭제 <1999.1.21> ③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1999.1.21> [전문개정 1993.12.31] **제54조의2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②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31] **제54조의3 삭제 <1999.10.30>** **제54조의4 삭제 <1995.8.4>** **제54조의5 삭제 <1995.8.4>** **제54조의6 삭제 <1999.10.30>**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6.5.13, 1997.8.25, 1999.12.6, 2001.8.13> 1. 삭제 <1999.12.6>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서 7. 삭제 <2003.4.18> 8.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9.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0.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12.6>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0.12, 1999.2.18>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감리원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④삭제<1999.4.1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제54조의10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7.30]	**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12.6> [전문개정 1995.10.12]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②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의2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경력확인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감리원증교부신청서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감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 감리원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감리원증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7.1.13, 1999.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3.6.11>	**제54조의7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8.4]	재교부신청서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거나 당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직한 때에는 감리원증을 회수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⑤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청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⑥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그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12.6>[본조신설 1995.10.12]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	**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1999.12.6>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개정 1999.12.6> [전문개정 1997.8.2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7.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제54조의9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원 및 당해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54조의10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7.30]	**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0.12> 1.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2.18> **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①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1.1.16> ⑤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전문개정 1995.1.5]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3.7.29> 1. 건설공사설계기준 2.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등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21> 1.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건설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관련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등을 작성하여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감리전문회사휴업·폐업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④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2] **제40조의4 삭제 <1999.12.6>** **제41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3조제1항 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설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4.15> [전문개정 1993.6.11] **제36조 (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시공에 관한 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개정 1997.7.2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7.21> [전문개정 1995.8.4] **제56조 삭제 <1999.10.30>** **제57조 (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1. 건설기술용역사업 :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건설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삭제 <2001.7.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1997.7.21,	는 국가 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전문개정 1995.10.12] **제41조의2 삭제 <1999.12.6>** **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기준을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단체를 2이상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1997.1.13, 2001.1.16>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1999.10.30, 2001.7.30> ④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42조의2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제43조 삭제 <1999.12.6>** **제44조 삭제 <1995.10.12>**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등** **제45조 (시공 및 용역평가<개정 2001.8.13>)**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8.13> ②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이상 진척된 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1995.10.12, 1997.8.25, 2003.4.18> ③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1997.8.25> ④삭제 <2003.4.18> ⑤영 제57조제1항제2호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공종반복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25> ⑥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를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1997.8.25> ⑦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신설 1997.8.25> ⑧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당해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8.13>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지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4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제58조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개정 2001.7.30>)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제57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 위반여부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4. 기술개발투자실적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또는 용역성과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의 평가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1.7.30>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7.21, 1999.10.30, 2001.7.30>

⑨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신설 2001.8.13>

제45조의2 삭제 <2001.8.13>

제46조 삭제 <1997.8.25>

제47조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

<개정 2001.8.13>)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용역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1.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

하자발생률	감점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인 때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2. 최근 3년이내에 당해 발주청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 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기타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6 (보고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1.1.16> [본조신설 1993.6.11]	**제58조의2 삭제 <2001.7.30>**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최근 1년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삭제 <1997.8.25> 5. 삭제 <1995.10.12>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2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15점미만 2 15점이상 3 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8.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 또는 용역평가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당해 연도에 1건 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6조의7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59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개정 2001.7.30>)**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7.21, 1999.10.30, 2001.7.30>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9. 삭제 <2001.8.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제47조의2 삭제 <2001.8.13>** **제48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개정 2001.8.13>)**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안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1995.10.12, 1997.8.25,1999.12.6, 2001.8.13, 2003.4.18>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일 것 2. 삭제 <1999.12.6> 3. 삭제 <1995.10.12> 4.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개정 1999.4.15> **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설립<개정 1999.4.15>)** ①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①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삭제 <1997.1.13>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1.7.30>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2001.7.30> **제59조의2 삭제 <2001.7.30>** **제59조의3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5.8.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7. 삭제 <1997.8.25> ②발주청은 영 제5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하며, 별지 제88호서식 또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6, 2001.8.13, 2003.4.18> 1. 발주청 2.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4. 지정전문분야 **제48조의2 삭제 <2001.8.13>** **제48조의3 (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1997.8.2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중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1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13>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2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총회의 구성·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등에	**제59조의4 삭제 <1997.12.31>**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 **제59조의5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6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분회·지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8.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장 보칙 **[제6장을 제7장으로 변경<개정 1995.1.5>]** **제36조의17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1.12.31>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8 삭제<1999.4.15>**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7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37조의3 삭제<1999.4.15>**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1993.6.11, 1995.1.5, 2001.1.16>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1999.1.29>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5.31, 1993.6.11,	**제60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7.7.21, 1999.10.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7.21, 1997.12.31, 1999.10.30, 2001.7.30>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삭제 <1999.10.30>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995.1.5, 2001.1.16. 2003.5.29> **제40조의2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1.1.16>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삭제<1999.4.15> [본조신설 1997.1.13] **제8장 벌칙** **[제7장을 제8장으로 변경<개정 1995.1.5>]** **제4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1.1.16>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③삭제 <1999.1.2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전문개정 1995.1.5] **제41조의2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2.30]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1999.10.30, 2001.7.30> [전문개정 1995.8.4] **제60조의2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중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61조 (업무의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1.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4.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의2. 삭제<1999.4.15> 1의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삭제<1999.4.15>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1999.4.15>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1993.6.11] **제4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9.4.15> 2.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5.1.5] **제42조의3 삭제 <1997.1.13>**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종합 관리 9.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10.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12.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4.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5.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15의2.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11.29> 1.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주택법 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0.30]	
	제62조 (주요시설물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1.16>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9.1.29, 1999.4.15, 2001.1.1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기타 경력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2.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자 5. 삭제<1999.4.15>	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7.7.2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삭제<1999.4.15> 9. 삭제<1999.4.15> ②삭제<19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5> **제44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3.6.11, 2001.1.16>		
부 칙 <제3934호,198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부칙 <제34호,1995.10.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1996년 5월 31일이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변경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건설기술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제4562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1. 기술계 건설기술자 : 1996년 6월 30일까지 2.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 : 1996년 9월 30일까지 3. 기능계 건설기술자 :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종전의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대행하여 온 건설기술교육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참가제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공고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호,199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19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19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외국인 감리원의 경우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3항제2호·동항제3호 및 제14조의4와 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제40조의4제1항 및 별표 1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부칙 <제492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규정의 적용례) 수수료산출기준에 별표 19의 개정규정(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1999.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을 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의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1999년 3월 1일 현재 교육훈련중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 <제13790호,199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409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④(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7호,1999.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별표 8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하반기의 평균누계부실벌점을 산정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 산출기준에 관한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93호,2001.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3, 제3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부칙 <제5140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

시 행 령

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개정된 기술자격자
토목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부칙(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시 행 규 칙

제2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중 영 제7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제13조의3,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기간만큼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	**부칙 <제355호,2003.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평가표에 관한 적용례)** 시공평가에 관한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의 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심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행한 신기술심사관련 업무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역현황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현황의 유지·관 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건설기술자경력수탁관리기관이 행한 용역현황관리관련 업무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역현황관리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연구원·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16>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제5964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 내지 <205> 생략 **부칙 <제1474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 제4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6369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86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52조제1항 제7호의2가목	2월
10.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제52조제1항 제7호의2나목	
11.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제52조제1항 제7호의2다목	
o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때		3월
o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아니한 때		2월
o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반한 때		1월
12.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52조제1항 제7호의2라목	2월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建設交通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鐵道廳長"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7조제1항 제8호가목	영업정지 2월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제7조제1항 제8호나목	영업정지 1월
다.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제7조제1항 제8호다목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때		영업정지 3월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7조제1항 제8호라목	영업정지 2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7054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161호,1996.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 | | +----------+----------+----------+----------+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5441호,1997.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측량법시행령) <제15535호,199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 및 <22>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5614호,199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16086호, 19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내지 <47>생략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부 칙 <제16591호, 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65호,2000.3.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7329호,200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N정에 의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5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941호,2003.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54>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 감리용역계약통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8.13>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http//www.○○.○○ ○○ 국 ○○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감리용역 계약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계약(□최초, □변경, □기성,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	
시 공 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 전면책임감리 □ 부분책임감리 □ 시공감리 □ 검측감리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다중이용시설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계약대상자	
선정방식	□ 수행능력평가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기타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 (감리이행비율 :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계 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 고
	차수별기성		. . . ~ . . .	
	금차수행분		. . . ~ . . .	
	계약잔여분		. . . ~ . . .	
	총 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 작성요령
1. "사업개요"란의 "사업내용" 기재 예시
 - 도로 :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 연면적( )㎡, 층수( )층
2. "계약형태"란의 "감리이행비율"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은 공동계약 또는 감리자변경 등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이행지분을 기재함
3. "차수별기성"란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연차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금차수행분"란은 연차별 계약중 진행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함. "총괄"란은 "계약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함
4.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고, "변경 후"란의 내용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이 일치하여야 함
5. "완공" 통보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중 "총괄"란을 반드시 기재함
6. "기간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리원현황통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1.8.13>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http//www.○○.○○ ○○ 국 ○○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감리원현황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 업 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배 치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직무 분야	근무형태 (상주/ 비상주)	직 책 (책임/ 보조)	공사 종류	비고
. .		-						
. .		-						
. .		-						
. .		-						

2. 철수확인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철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철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항목	당 초	정 정 내 용
	-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통보할 내용)
	-		"	"
	-		"	"

※ 작성요령

1. "감리구분"은 전면책임부분책임시공감리검측감리공동주택다중 이용시설로 구분
2. "직무분야"는 "영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비고"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당해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
3. "공사종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 기재
4.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
5.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정정통보할 경우에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1.8.13>

(제1쪽)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감리업종		관리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2. 재정실태

회계연도	자기자본비율			유 동 비 율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3. 상훈내역

연월일	상훈종류	수여기관	공적내용	사 업 명

4. 제재처분내역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사 업 명

5. 감리용역사업현황 (금액 : 천만원)

구 분	합 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합 계												
완 료												
진행중												

가. 완료된 사업

연번	감리종류	용 역 명	감리기간	사업개요	교체율	발주청	감리비 (천만원)

※ 작성요령

"3. 상훈내역" 및 "4. 제재처분내역"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상훈 및 제재내용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관리번호 : ○ 회사명 :

나. 진행중인 사업

1) 총괄내역

사업건수	건	배치총원	명	교체총원	명	교체율(%)	

2) 건별 사업현황

용 역 명		감리종류	
발 주 청		감리기간	. . ~ . .
설계업체		시공업체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 공사기간 : . . ~ . . ○ 사업규모 : ○ 감리이행비율 : %		

계 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만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차수별기성		~	
	금차수행분		~	
	계약잔여분		~	
	총 괄		~	

○ 참여감리원현황

구 분	계	등 급 별			직 무 분 야 별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계								
자격소지								
학경력								

연번	참여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자격 및 학력	배치구분	참여기간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 관리번호 : ○ 회사명 :

6. 부실벌점

연번	연 도/ 반기구분	측정기관 / 경감사례	기관평균 부실벌점	반기평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 용역수행(□ 전체, □ 부문별)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협 회 장 (인)

수 수 료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리원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126>

(제1쪽)

감리원경력확인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무분야 및 감리원등급		주소		

기술자격	취득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직무분야	해당등급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학과	졸업/ 학위	직무분야	해당등급

교육훈련	기 간(일)	종 류	기 관	수료증번호

상훈	연월일	종 류	상훈기관	공 적 요 지	사업명

제재	연월일	종 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사업명

※ 기재요령

1. "직무분야"란에는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를 기재
2. "상훈" 및 "제재"란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상훈 및 제재(관련 기술자격 포함)내용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경 력				
근무기간 (근무일수)	등급 직위	주요 경력사항	직무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공사종류 / 업무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분야별 경력기간 : 총 일
영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비고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공사 업무분야별로 종사기간을 구분하여 기록

○ 감리용역 완성비율 : %(참여건수 : 건, 완료건수: 건)

※ 기재요령

1. "근무기간" : 계획공정기간(상단)과 실제 참여기간(하단)을 구분 기입
2. "주요경력사항" : 근무처발주처사업명감리비감리원등록기간 등을 기록

(제3쪽)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 실 벌 점

연번	연 도/ 반기구분	측정기관/ 경감사례	기관평균 부실벌점	반기평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 전체, □ 부분별)경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수 수 료
원

■ 감리원보유현황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01.8.13>

감 리 원 보 유 현 황 확 인 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감리업종		관리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2. 등급별직무분야별 인원수

구 분	계	등 급 별			직 무 분 야 별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계								
자격소지								
학경력								

3. 기술인력 명단

연번	직무분야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직위	자격취득연월일 / 졸업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최종출신학교

발급용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보유(□ 전체, □ 일부)현황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 협 회 장 (인)

	수 수 료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교육기관지정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19951012>

지정번호 제 호

교 육 기 관 지 정 서

○ 명 칭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지 정 조 건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30307-07511일 210㎜×297㎜

95.9.5승인 (인쇄용지(2급) 60g/㎡)

■ 교육훈련상황통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8.13>

			발 신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협회장 보 냄 : 인							
제 목 : 교육훈련상황(분기)통보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과 정 명	교육기간	주 소	수료번호	비고
※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자기디스켓 1부							

30307-07611일 210㎜×297㎜

96.5.1 개정 (인쇄용지(2급) 60g/㎡)

■ 교육수료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95.10.12>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증 번 호 :

위 사람은 19 . . . ~ 19 . . . 까지 ( )교육 제 기

건설기술자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장 인

30307-07711일 210㎜×297㎜

95.9.5승인 (인쇄용지(2급) 120g/㎡)

■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8.13>

(앞 쪽)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번호 | | | | | | | | | * 뒤의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 진)	① 한글		② 기 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
	성	한자	학 . . . ~ . . .			
	명	영자	력 . . . ~ . . .			
		영자 이름 성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③거주지 (전화 :)

④ 근무처 이력	근무기간	회 사 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근무기간	회 사 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			
	~				~			
	~				~			
	~				~			
	~				~			

⑤ 직무분야 분야 예)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 안전관리환경교통전기 등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

⑥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⑦ 교육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 . . ~ . . .		
	. . . ~ . . .		
	. . . ~ . .		

⑧ 상훈	연월일	종 류	시 행 청	근 거

30307-07821민
97.7.18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120g/㎡)

(뒤 쪽)

연번	⑨참여기간	⑩참 여 사업명	⑪발주자	⑫직무 분야	⑬전문 분야	⑭공사 종류	⑮담당업무	<16>공법	<17>직무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붙임의 연번 8에서 연번 번까지 포함	수 수 료 원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1. 졸업증명서
2. 기술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3. 경력확인서

년 월 일

성명(본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협회장 귀하	실명 확인

※ 작성요령

1.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성명은 예외).
2. 기재요령은 참여사업(현장이동)을 기준으로 작성
3. "① ~ ③"란에는 인적사항과 최종학력을 기재
4. "④근무처이력"란에는 지금까지 근무했던 회사명과 업종(건설관련업제조업 등)을 기재
5. "⑥기술자격"란에는 소지한 기술자격을 모두 기재
6. "⑦교육훈련"란에는 최근 이수한 교육훈련 사항을 기재
7. "⑧상훈" 란에는 건설관련업무수행으로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기재
8. "⑨참여기간"란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기재
9. "⑩참여사업명"란에는 자신이 참여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⑪발주자"란에는 해당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
11. "⑤⑫직무분야"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의한 기술분야를 기재(별도 예시)
12. "⑬전문분야"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기재(별도 예시)
13. "⑭공사종류"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의 종류를 기재(별도 예시)
14. "⑮담당업무"란에는 해당사업 참여시 담당한 업무를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 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진단 유지관리사업관리연구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별도 예시)
15. "<16>공법"란에는 해당사업에서 실제 적용한 공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16. "<17>직위"란에는 해당사업 참여당시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30307-07822민
97.7.18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120g/㎡)

■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1.8.13>

건 설 기 술 자 경 력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1. 소속회사 변경

현 재 소속회사	회 사 명		입 사 일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주 소	전화(~)		
전 소속회사	회 사 명		입 사 일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퇴 사 일	
	주 소	전화(~)		

2. 기술경력변경

연번	참 여 기 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공사 종류	담당 업무	공법	직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합니다.

첨 부 1. 경력확인서
2. 기타 관련서류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 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 기술자격학력교육훈련상훈 및 경력확인서에 의해 경력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증빙서류에 본인확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경력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999.12.6>

(제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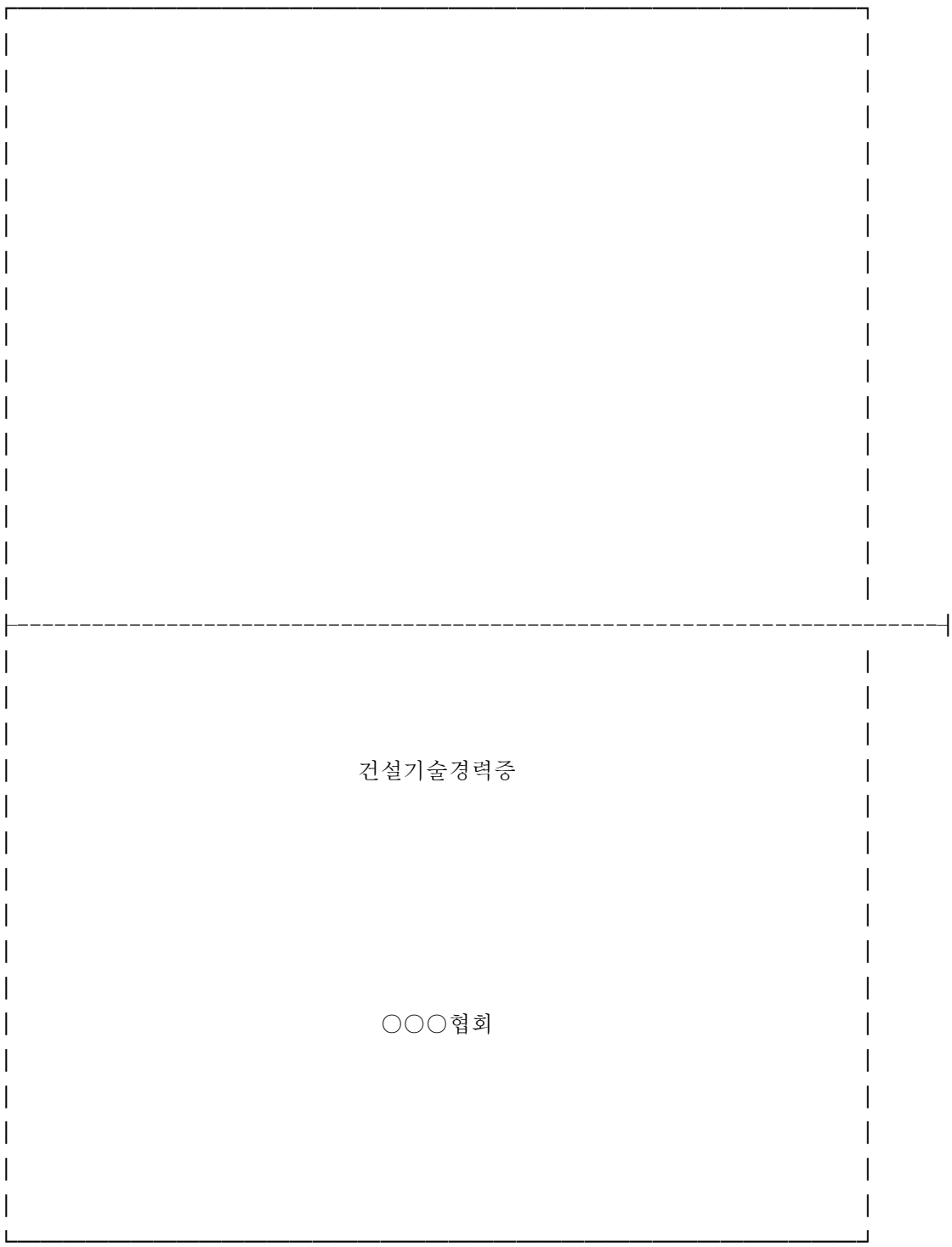

30307-081131일
97.7.18 승인

140㎜×180㎜
(보존용지(1종)특급 265g/㎡)

(제2쪽)

유 의 사 항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근무처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기재란의 부족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갱신받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4.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 급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증 명
사 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인)

30307-081132일 140㎜×180㎜
97.7.18 승인 (보존용지(1종)OCR 105g/㎡)

(제3쪽)

▶ 기술등급

일 자	분 야	기 술 등 급	확 인

▶ 기술자격

종 목 및 등 급	합 격 일	등 록 번 호

30307-081133일 140㎜×180㎜
97.7.18 승인 (인쇄용지(특급)OCR 105g/㎡)

(제4쪽)

▶ 학 력

졸 업 일	학 교 명	학 과(전공)	학 위

▶ 교육훈련

졸 업 일	과 정 명	기 관 명	교육기관의장(인)

30307-081134일 140㎜×180㎜
97.7.18 승인 (인쇄용지(특급)OCR 105g/㎡)

(제5쪽)

▶ 소속회사 변경

입 사 일 ~ 퇴 사 일	회사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회사의 장 확인	
				입 사	퇴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7-081135일 140㎜×180㎜
97.7.18 승인 (보존용지(1종)OCR 105g/㎡)

(제6쪽)

▶ 주소변경사항

일 자	변 경 내 용	확 인

30307-081136일 140㎜×180㎜
97.7.18 승인 (보존용지(1급)OCR 105g/㎡)

■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997.8.25>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최종학력	발급일자	담당자 확인

30307-08211비 297㎜×210㎜

97.7.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1.8.13>

발급번호	건 설 기 술 경 력 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소 속 회 사		(전화 :)		
신 청 분 야	분야			
발 급 사 유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실명확인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협회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999.12.6>

(앞 쪽)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회 원 번 호								No. -			
성 명	한 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부실벌점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 업 일		학 교 명			학 과(전 공)		학 위			
교육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상훈	연 월 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 월 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 월 일	종 류		근 거		제 재 기 관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 사 명		근무기간	회 사 명		근무기간	회 사 명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주 요 경 력					
참여기간	사 업 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 고
(참여일)	발 주 자	공 법	전문분야	직 위	
~					
~					
~					
~					
~					
~					
~					
~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999.12.6>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회사명 : 업종 :)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분야 및	교육훈련	
					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술등급	기간	과정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7-08511일

97.7.18 승인

297㎜×210㎜

(인쇄용지(2급) 60g/㎡)

■ 건설기술자취업및퇴직상황보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9.12.6>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서(년도 상/하반기)

보고자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담 당 자		연 락 처	
	주 소			

1.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입사일	퇴사일	담당업무 (※ 비고3참조)

2. 사무소 소재지 등의 변경(※ 변경사항이 있는 란만 기재 하십시오)

변경전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인

○○○협회장 귀하

비고 : 1.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은 매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사무소소재지의 변경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담당업무 : 계획, 조사, 측량, 연구, 건설기술정보처리,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감리(건축사법),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유지관리, 시설물철거, 건설장비시운전, 사업관리, 자재의 구매 및 조달, 공사견적, 시공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화약관리자, 강의, 비건설기술업무 기타(상세히 기재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기술지정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12.6>

(앞 쪽)

신 기 술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90일
신 기 술 명 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기술내용 (요 약)					
신기술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신기술내용 및 범위(신기술의 세부내용과 도면 등 포함 2. 신청기술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서 3.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전망 4.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5. 기타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등 신기술관련 삼사자료	신청시 1만원 (수입인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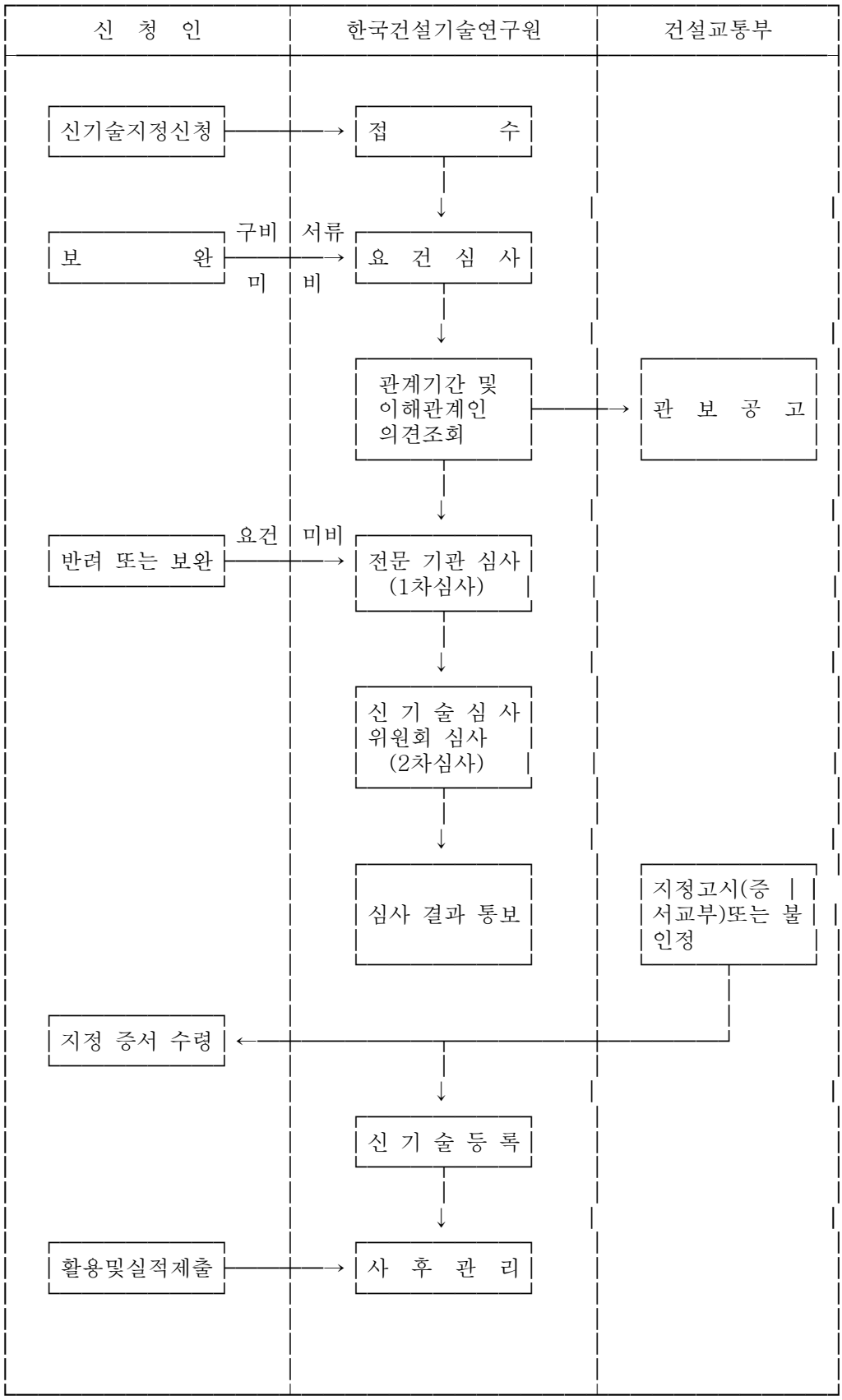

■ 신기술지정증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951012>

제 호

신 기 술 지 정 증 서

○ 명 칭 :

○ 개 발 자 :

○ 보호기간 :

○ 기술개요 :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인

30307-08811일 210㎜×297㎜ 95.9.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951012>

신기술지정증서 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상호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 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30307-08911민 210㎜×297㎜ 95.9.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신기술활용실적(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1.8.13>

신 기 술 활 용 실 적

신기술 명칭	(지정 제 호)	기술 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시공연도	공사명	발주자	활용형태	지역	건설실적	공사금액(백만원) 총공사비	공사금액(백만원) 신기술공종 공사비	계약형태	비고 (계약관계)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구체적으로 표기하되 ( )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교육기관민간 또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2. 활용형태는 시공시험시공납품설계반영제3자의 기술사용 또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3. 지역은 시도별로 표기하고 해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합니다.
4. 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하며, 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5. 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계약형태는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합니다.
7. 비고(계약관계)는 도급하도급직영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8. 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찰참가제한사항통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1999.12.6, 2001.8.13>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 협회장 귀하 발 신 : (인)

제 목 : 입찰참가제한사항 통보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제한된 설계등 용역업자	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신고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제한분야		제한개시	년 월 일	제한만료 년 월 일
제한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시행령 조 근거)			
제한사유				
기타				

30307-12111일 210㎜×297㎜

95.9.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건설기술용역계약[변경]통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9.12.6. 2001.8.13>

발 신 기 관 명

(○○ 용역업체)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FAX번호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협회장 발신 (직인) (○○용역업체)

(전화 02-523-7545, 전송 02-523-4894)

제 목 건설기술용역 계약(변경)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1. 용역명			
2. 수주업체명	주계약업체	(대표자)	
	공동도급업체	(대표자)	
3. 사업개요			
4. 계약금액	(총액 및 당해연도 계약액)		
5.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 계약형태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 자격능력 평가방식	
	□ 수의계약	□ 지명경쟁입찰방식	
	□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 공개경쟁입찰	
7.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 기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등급 : 기술자격 :	
		학 력 : 회 사 명 :	
		사업참여기간 : 부터 까지(년 월)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등급 :	
		사업참여기간 :	
		회사명 :	
8. 기타 참고사항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율 등			

※ 행정기관이 아닌 업체 등의 경우에는 과명,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등용역수행실적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951012, 2001.8.13>

설계등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신고번호	
전문분야		용 도			

연번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계약 기 간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책임자성명)	발주청명
1						
2						
3						
4						
5						

이 하 여 백

(필요한 경우 별지에 표기 가능)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등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협 회 장 (인)

수 수 료
원

30307-12311일
95.9.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 부실벌점총괄표[건설관련업자·설계등용역업자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1.8.13>

부실벌점총괄표(건설관련업자설계등 용역업자 등)

(기관명 :) (년도 반기)

① 업체명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③ 총공사비 (백만원)	④ 공사기간	⑤ 점검일자	⑥ 점검종류	⑦ 부실내용 (번호)또는 경감내용 (번호)	⑧ 부실벌점 또는 경감점수	⑨ 벌점 합계	⑩ 평균 부실 벌점

※ 작성요령

1. "⑥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
2. "⑦부실내용(번호) 또는 경감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호관련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경감내용을 기재
3. "⑨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 부실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의 합계를 뺀 벌점을 기재
4. "⑩평균부실벌점"은 공사별 벌점합계를 최종집계한 후 점검회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점검결과 부실벌점이 "0"점인 경우에도 점검회수에 포함(평균부실벌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고, 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307-09311비 257㎜×364㎜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 부실벌점총괄표[건설기술자·감리원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1.8.13>

부실벌점총괄표(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기관명 :) (년도 반기)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업체명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④ 점검 일자	⑤ 점검 종류	⑥ 부실내용 (번호)또는 경감내용 (번호)	⑦ 부실벌점 또는 경감점수	⑧ 벌점 합계	⑨ 평균 부실 벌점

※ 작성요령

1. "⑤점검종류"는 현장점점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점특별안전 점검 등을 기재
2. "⑥부실내용(번호) 또는 경감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호관련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경감내용을 기재
3. "⑧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 부실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의 합계를 뺀 벌점을 기재
4. "⑨평균부실벌점"은 공사별 벌점합계를 최종집계한 후 점검회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점검결과 부실벌점이 "0"점인 경우에도 점검회수에 포함(평균 부실벌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고, 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307-09411비 257㎜×364㎜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 점검요원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951012>

점 검 요 원 증

증 명 사 진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30307-09811일 90㎜×60㎜

95.9.5 승인 (인쇄용지(특급) 195g/㎡)

■ 건설현장점검대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01.8.13>

건설현장 점검대장

번호	연월일	점검자				점검목적	점검내용	점검소요시간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실시공현장표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951012>

부실시공 현장표지	
위 치	
발 주 자	
시 공 자	
공 사 명	
지 적 사 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현장으로 지적 되어 시정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30307-09911일 1,200㎜×900㎜

95.9.5 승인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통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신설 2001.8.13>

(앞 쪽)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
담당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최초□ 변경□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				
발주방식	□ 설계시공분리방식 □ 설계시공일괄방식 □ 기타				
현장소재지					
2. 건설사업관리현황					
참여단계	□ 설계이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단계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상식 □ 기술가격분리방식 □ 적격심사방식 □ 기타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용역이행비율)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 고	
	차수별기성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총 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4. 참여기술자 현황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년 월 일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계획공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술등급을 기입
2. "직무분야"는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일반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한 직무분야를 참고하여 당해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하고, 전문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7개 분야로 구분 기재. 다만, 전문분야는 발주청의 요구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3. "근무형태 및 직책"은 아래 항목중에서 선별 기재
   - 근무형태 : 1. 상주 2. 비상주
   - 직 책 : 1.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 일반 참여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1999.12.6>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1999.12.6>

■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1997.8.25>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일련번호	② 연월일	③ 시험검사 재료 구분	④ 시험검사	⑤ 시험성과 항목	⑥ 시험검사자	⑦ (감리원)의	⑧공사감독자 확인

30307-02611비
97.7.18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1997.8.25>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30307-02811일 210㎜×297㎜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 공장인증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1.8.13>

(앞 쪽)

공 장 인 증 신 청 서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공 장 명			공장등록번호	
공장소재지			(전화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 설 부 문		기 타	

신청분야 및 등급(○으로 표시)

교 량				건 축			
1 급	2 급	3 급	4 급	1 급	2 급	3 급	4 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공장의 등급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4.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수 수 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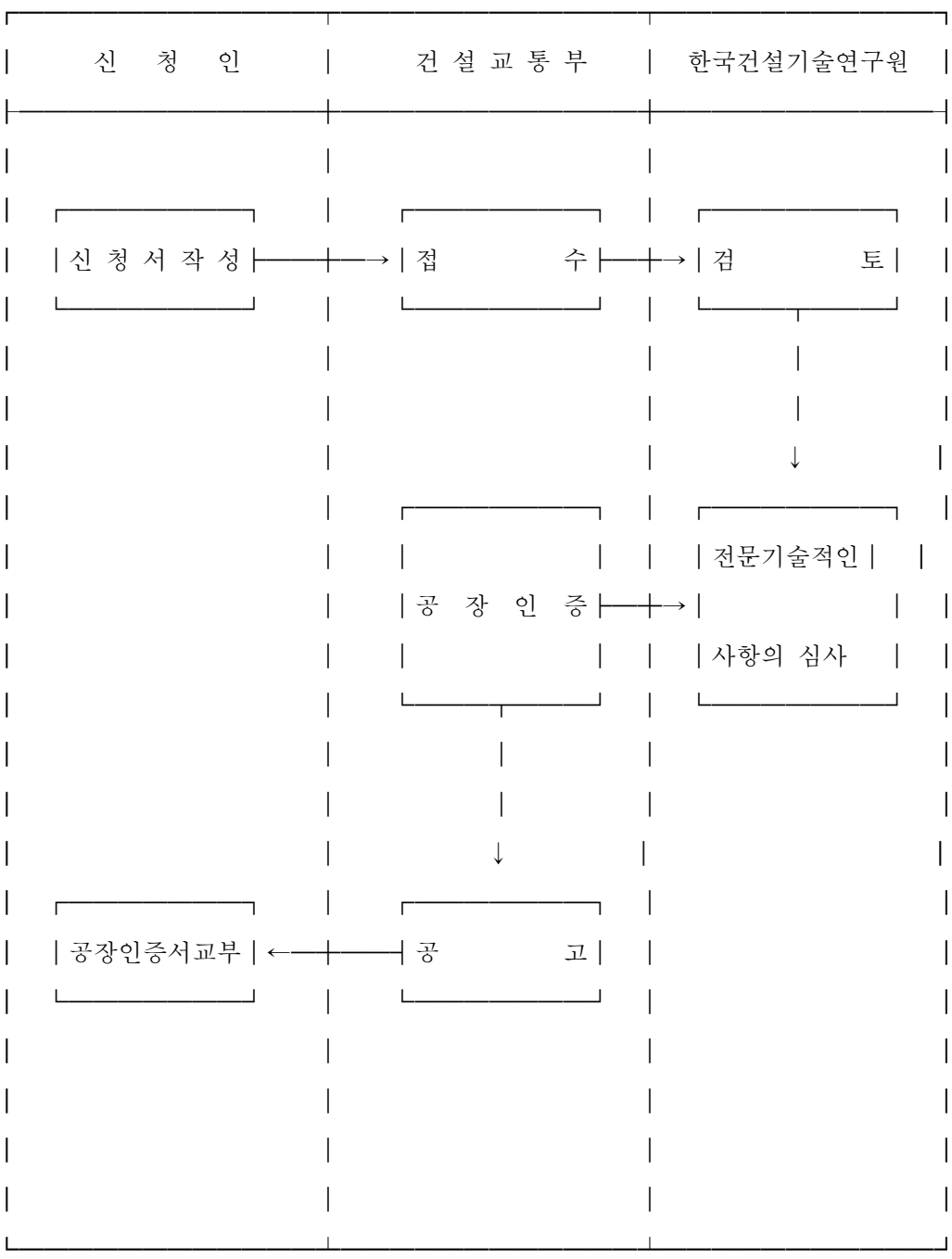

■ 공장인증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1.8.13>

제 호
(Cer. No.)

공 장 인 증 서
(FACTORY CERTIFICATE)

1. 회 사 명 :
(Name of Company)
2. 대 표 자 :
(President's Name)
3. 법인등록번호 :
(Company Reg. No.)
4. 공장소재지 :
(Factory Address)
5. 분 야 :
(Specialty)
6. 등 급 :
(Class)
7. 유효기간 :
(Validity Period)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등급을 인증합니다.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certifies that the above named factory has been approved to manufacture stee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3 of Article 24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년 월 일
(Date of Issue)

Minister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epublic of Korea

건설교통부장관 인

210㎜×297㎜(일반용지 60g/㎡)

■ 공장인증서교부대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1997.8.25>

공 장 인 증 서 교 부 대 장

번호	연월일	구 분 (인증분야)	등급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공장소재지	인증서교부 일자	인증서교부 수령인

30307-03811비 297㎜×210㎜

97.7.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공장인증대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1997.8.25>

공 장 인 증 대 장

인증번호 :

분야 및 등급		인 증 일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공 장 명		공장등록번호	
공 장 소재지		전 화	
보 유 면 허	제 호	면 허 일	

기 재 사 항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일

30307-03911비 210㎜×297㎜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 품질시험·검사의뢰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1997.8.25>

(앞 쪽)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재료명	(※)		
②시험검사 종목		③재고량 (롯드의 크기)	
④시료채취지 명 및 장소	시 구 동 도 군 면 리 번지( )		
⑤시료채취량		⑥시료채취자	소속 성명 (인)
⑦시료채취일		⑧시료채취입회자	소속 성명 (인)
⑨공사명			
⑩발주자			
⑪시공자			
⑫시험검사성 과이용목적			
⑬시료내역 및 시방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 유별번호 □-□□□□-□□	시험실번호 : 작업지시 호
시험검사번호 □□-□□□□	(. . .)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 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	※ 시험수수료 : 원

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0307-04011일 210㎜×297㎜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이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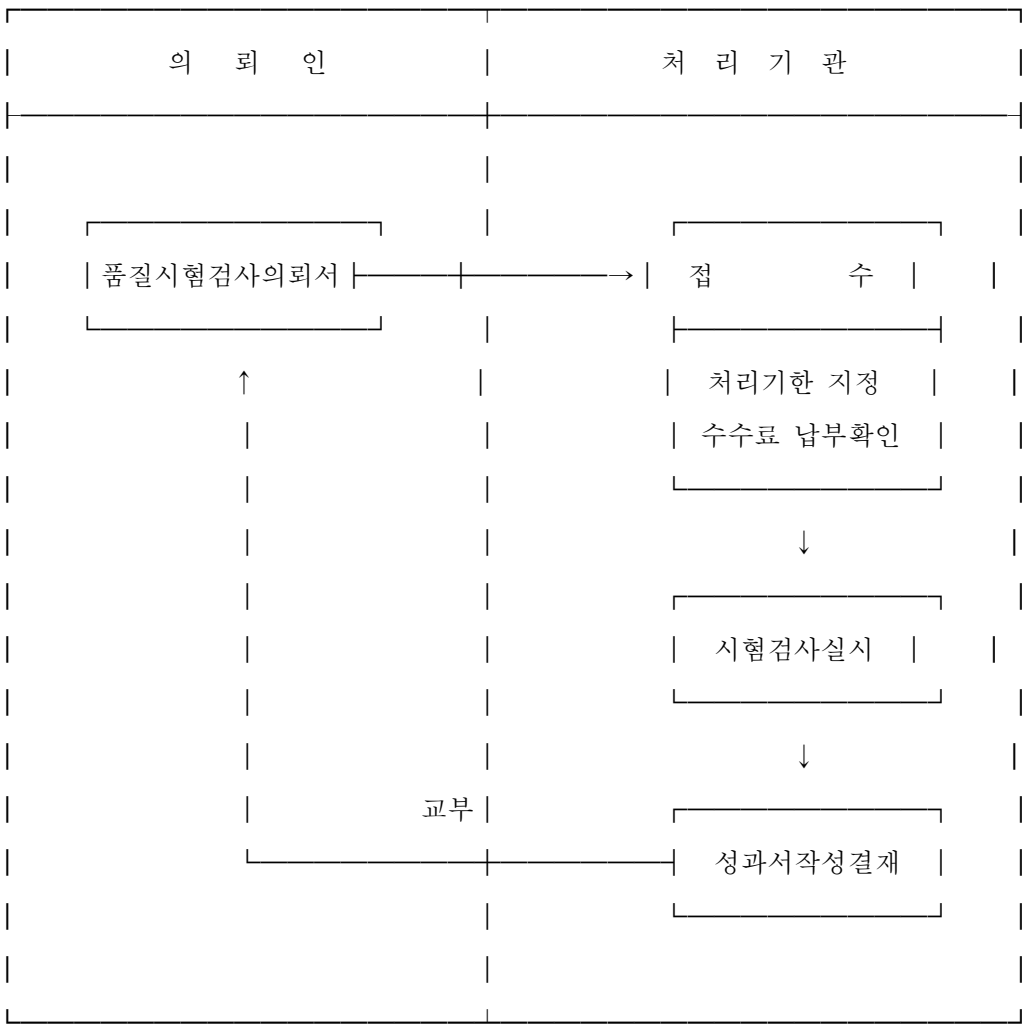

■ 품질시험·검사대행실적상황통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1997.8.25>

기 관 명

주소 전 화 :
문서번호 발 신 :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제 목 품질시험검사대행실적상황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① 일련번호	②의 뢰 연월일	③ 의뢰자	④ 공사명	⑤ 재료	⑥ 시험검사 종목	⑦ 수수료	⑧처 리 연월일

30307-02711보 210㎜×297㎜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1999.12.6>

(앞 쪽)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소 재 지	시험실 : (전화 : FAX :)	
		사무실 : (전화 : FAX :)	
⑤신 청 분 야		⑥사무실면적	㎡
⑦기취득한업종면허 및 면허번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시험실 배치평면도 및 면적검토서를 말한다)
2. 시험장비의 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과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사본
3. 기술인력의 성명자격 및 경력 등과 기술인력의 보유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분야를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시험업무처리의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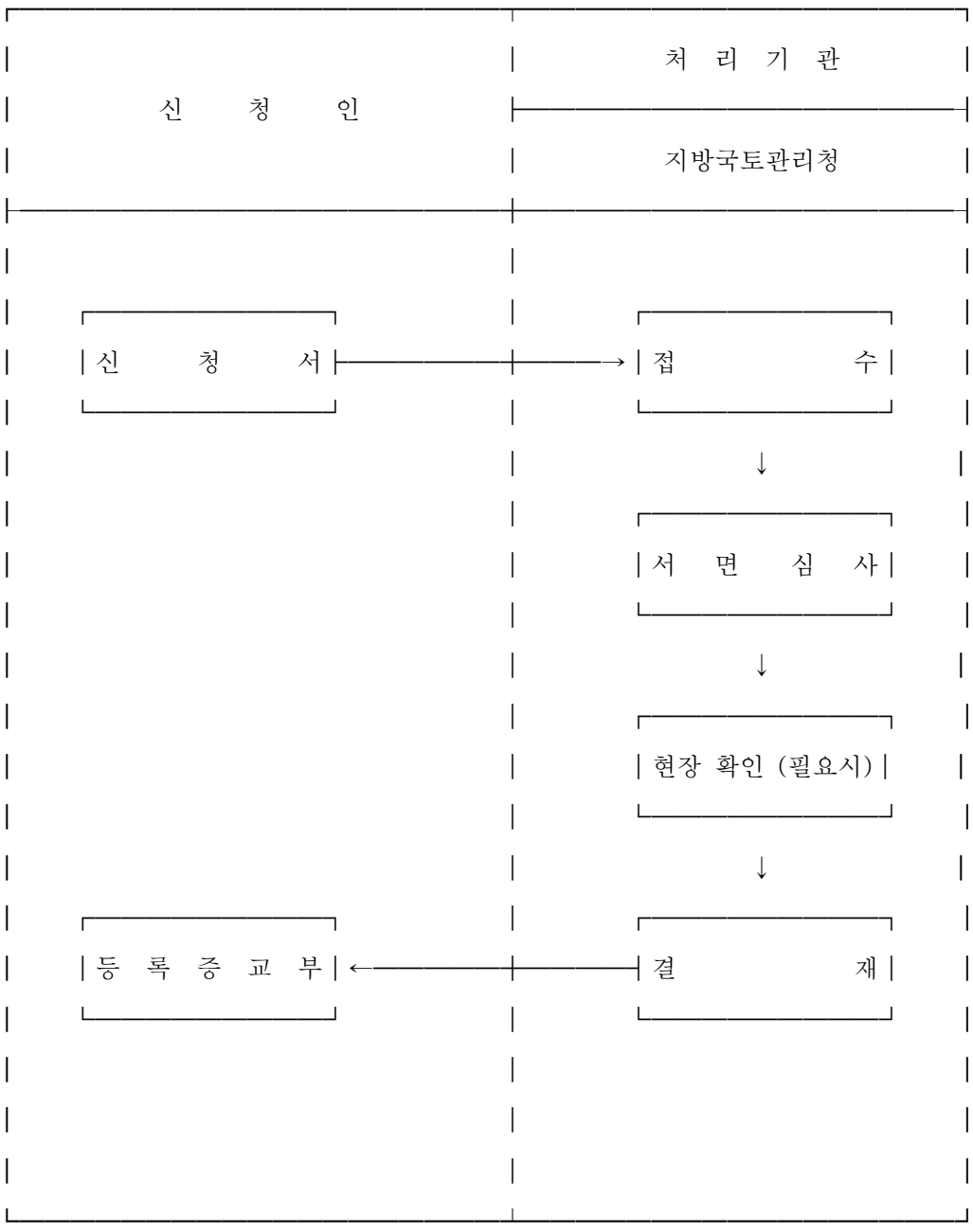

■ 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대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1999.12.6>

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대장

①분 야	등록 제 호	②등록일자	
③상 호		⑤보유하고 있는 업종면허 및 면허번호	
④대표자			
⑤시험실 소재지	전화 : FAX :		
⑦시험실	제곱미터		

⑧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기재사항 변경

⑨구분	⑩변경내용	⑪변경일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1999.12.6>

제 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분 야 :

등록일자 : 년 월 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1999.12.6>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②분 야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FAX :)		
⑥등 록 번 호			⑦등 록 일 자	

변 경 내 역

⑧변경구분	⑨변경일자	⑩변경전	⑪변경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1999.12.6>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 호		②분 야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⑥등 록 번 호			⑦등 록 일 자	
⑧재교부 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1.8.13>

(앞 쪽)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또는 명칭		④전화	
	⑤주된영업소의 소재지		⑥ 국적	
등록사항	⑦감리종류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⑧기술인력	총 명(수석감리사 명, 감리사 이하 명)		
	⑨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⑩임원			
	⑪장비	따로 붙임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과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
6.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8.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기재)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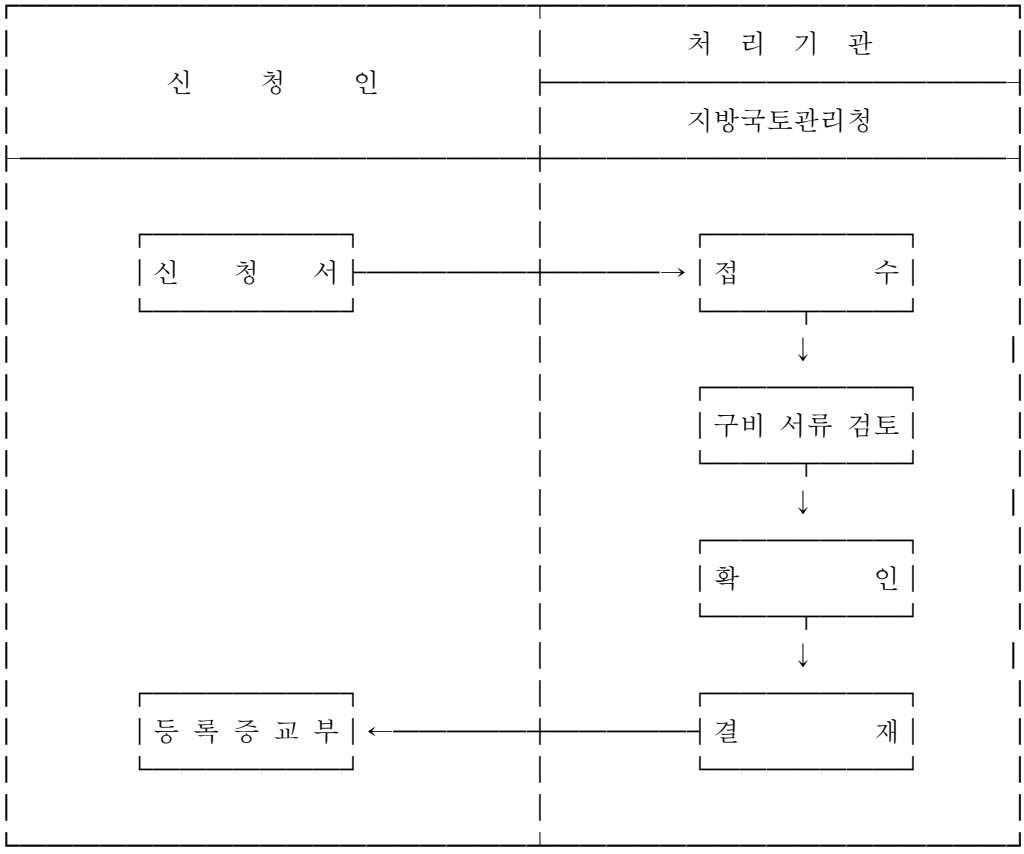

■ 건설기술인력현황(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1999.12.6>

건 설 기 술 인 력 현 황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기술자격 취득연월일	기술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기술자격 자격번호	최종출신학교및학과 졸업연월일	입사 연월일	근무 부서	직위	주소	직무 분야

※ 직무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해당 건설직무분야를 기재합니다.

30307-10511일
95.9.5 승인
297㎜×210㎜
(인쇄용지(2급) 60g/㎡)

■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1999.12.6>

경 력 확 인 서				처리기간	
				즉 시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1. 근무처 경력

소속회사	회 사 명			
	건설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입 사 일	. . .	퇴 사 일	. . .

2. 기술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 여 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 종류	담당 업무	공법	직위
1	~.								
2	~.								
3	~.								
4	~.								
5	~.								
6	~.								
7	~.								

위와 같이 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인)

※ 비 고

1. 기술경력의 기재요령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2. 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리전문회사등록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01.8.13>

(제1쪽)

감 리 전 문 회 사 등 록 부

감 리 종 류		□종합, □토목, □건축, □설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속 국 가 명				등록일자	
사무실	소 재 지	(전화)		확보구분	
	순사무실면적	㎡		입주연월일	
겸업사항					
자본금	붙임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금액 외국인투자율 외국인 투자금액				

장 비 보 유 현 황

취득일자	품 명	규격	수량	처분일자	취득일자	품 명	규격	수량	처분일자

상훈	연 월 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공 사 명	비고

제재	연 월 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공 사 명	비고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제2쪽)

감 리 원 현 황					
등재연월일	감 리 원 수			변 경 내 용	기록자
	계	수석감리사	감리사이하		

(제3쪽)

기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기 록 자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951012>

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전 문 회 사 등 록 증

상호 또는 명칭 :

영업소의 소재지 :

소 속 국 가 명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감 리 업 종 :

등 록 연 월 일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30307-05411일 210㎜×297㎜ 95.9.5 승인

(인쇄용지(2급) 120g/㎡)

■ 감리원관리원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1999.12.6>

(제1쪽)

감 리 원 관 리 원 부

증 명 사 진

감리원등급 :

고유관리번호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주 소			직무분야	

기술자격	취득 연월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취득 연월일	기술자격 종목등급	자격번호

학력	기간	학교명 및 학과명	졸업 / 학위	직무분야
	. . . ~ . . .			
	. . . ~ . . .			

교육훈련	기간	종류	기관	수료증번호
	. . . ~ . . .			
	. . . ~ . . .			
	. . . ~ . . .			

상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요지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7-10641비 210㎜×297㎜

95.9.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제2쪽)

경					력		
연번	근무기간	회사명	등급 직위	발주청/사업명	담당업무 및 직 책	참여공종 업무분야	기 록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7-10642비
95.9.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제3쪽)

변 경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기 록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7-10643비
95.9.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 감리원증교부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1997.8.25>

회 사 명	처리기간 10일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번호 / 담 당	
받 음	시행일 :
제 목 감리원증교부신청서	발 신 : 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소속 아래 건설기술인력의 감리원증교부를 신청합니다.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증명사진 2매씩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원

30307-10711민 210㎜×297㎜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 감리원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1999.12.6>

감 리 원 증

(표 지)

감 리 원 증

○ ○ ○ 협 회

(제1쪽)

주 의 사 항

1.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이 증을 항시 휴대하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감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리전문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소속 회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이 증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4. 감리원이 감리전문회사에 입사 또는 퇴사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을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사 또는 퇴사의 사실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이 증의 기록내용중 교육이수사항은 교육기관소속회사 변동사항은 소속회사의 장, 등급주소기술자격 등의 변경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40㎜×180㎜(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발 급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증명사진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협 회 장 (인)

140㎜×180㎜(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제3쪽)

▶ 감리원등급

일 자	직무분야	감리원등급	확 인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자	등록번호

140㎜×180㎜(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제4쪽)

▶ 학력

졸업연월일	학 교 명	학과(전공분야)	학 위

▶ 교육훈련

기 간	과 정 명	기 관 명	교육기관의 장(인)

140㎜×180㎜(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제5쪽)

▶ 소속회사 변동사항

입사일~퇴사일	회 사 명	업 종	등록번호	회사의 장 확인	
				입 사	퇴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180㎜(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제6쪽)

▶ 기록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항목	변 경 내 용	확 인

140㎜×180㎜(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 감리원증발급대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1997.8.25>

감 리 원 증 발 급 대 장

발급번호	회 사 명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감리원등급	계인	담당자확인

30307-10811비 297㎜×210㎜

97.7.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감리원증재교부신청(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1997.8.25>

회 사 명	처리기간 3일
우편번호 / 주 소 / 전 화 / FAX번호 / 담 당	
문서번호 받 음 시행일 : 제 목 감리원증재교부신청 발 신 :	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소속

아래의 감리원의 감리원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구비서류 : 1. 증명사진 각 2매
2. 훼손된 감리원증 또는 분실사유서

수수료 원

30307-11011인 210㎜×297㎜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1999.12.6>

(앞 쪽)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상 호(명칭)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전화 :)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감 리 종 류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등록사항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변 경 항 목	구 비 서 류
대표자 및 임원	1. 취임임원의 명단 및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 2.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상호 또는 명칭 및 자본금	등기부등본 1부
기 술 인 력	1.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과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 2.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감리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장 비	1. 장비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위치) 1부 2. 장비보유를 증빙하는 자료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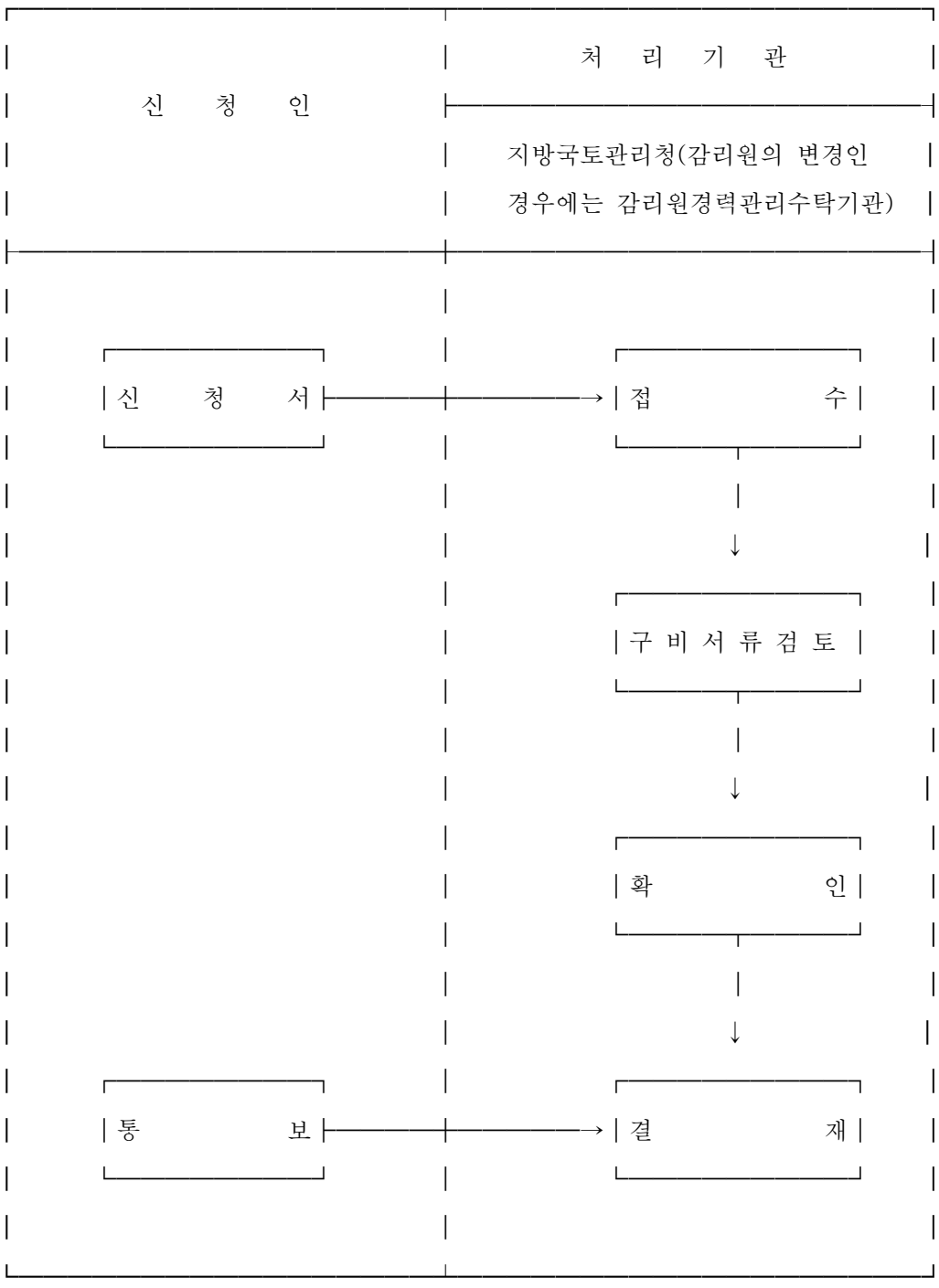

■ 감리전문회사휴업·폐업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1999.12.6>

(앞 쪽)

감리전문회사(□ 휴업 □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 호(명칭)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전화 :)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감 리 종 류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부터 . . . 까지(년 월)	폐업일	. . .
	휴업폐업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30307-00111민

97.7.18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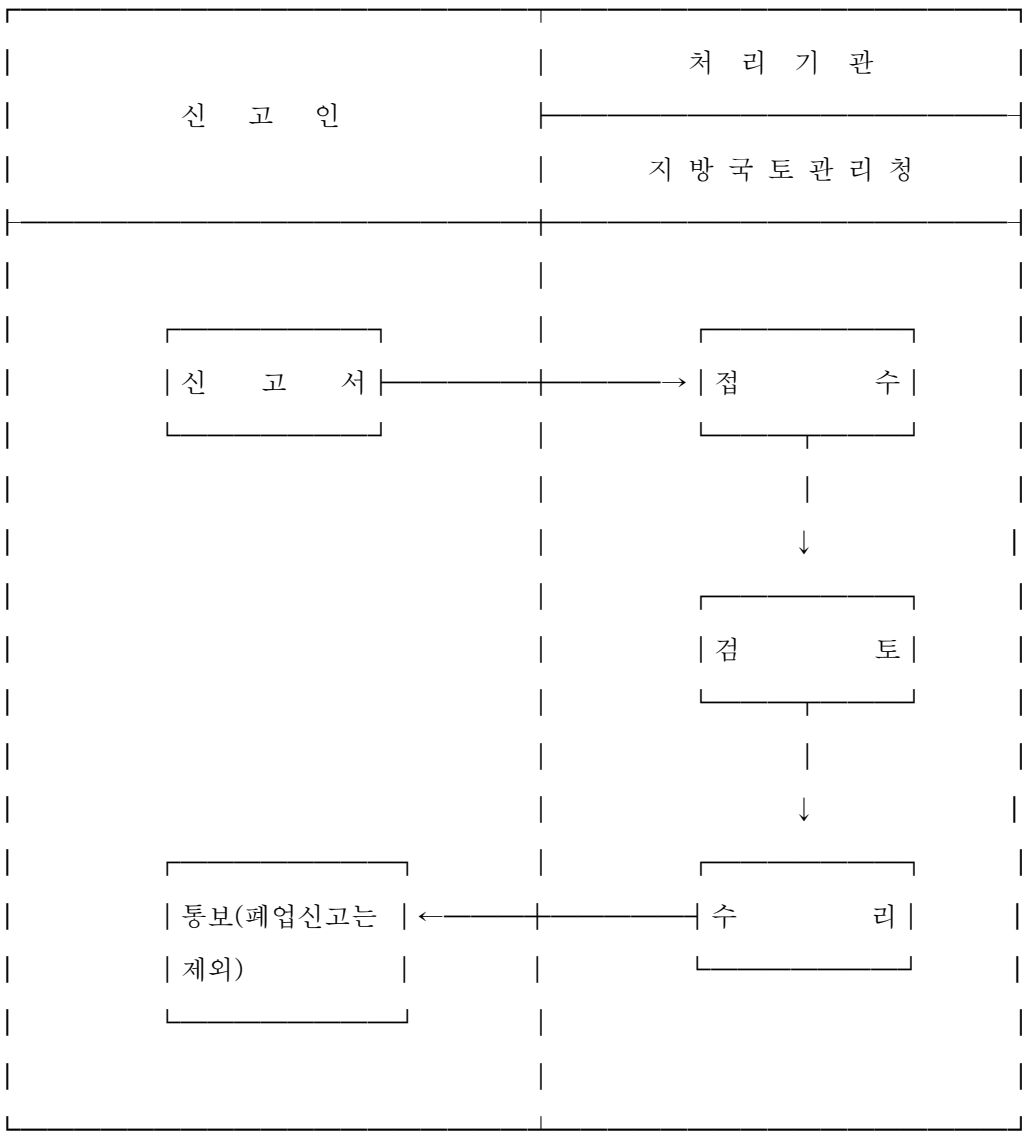

■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1999.12.6>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 호(명칭)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감 리 종 류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귀하

※ 구비서류 : 훼손된 등록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30307-05611민 210㎜×297㎜

95.9.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설 1997.8.25>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명	
	사업 개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보조사업비 재원별부담내역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

30307-00411일 210㎜×297㎜
97.7.18 승인 (일반용지 60g/㎡)

■ 시공평가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1999.12.6>

시 공 평 가 표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
1. 품질관리 (40~45)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 계획수립	1	수립충실	일부미흡	미흡	미수립				
		○ 품질관리 실시	5								
		-시험여부 및 각종 기록 상태		충실	일부미	미흡	미수립				
		-시험실규모 및 시설여건		30% 초과	10% 초과	법정	미달				
		-시험기자재 비치 및 작동상태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시험사 경력 및 배치사항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하	미배치				
	구조물등 규격관리 및 자재관리 적정	○ 구조물 규격 불량률 -개소당 ±10㎜ 허용오차	4~5 ( )	없음	10% 미만	10~20%	20% 초과시				
		-전체 ±25㎜ 허용오차									
		○ 가설물 규격 불량률 -개소당 ±10㎜ 허용오차	2	없음	10% 미만	10~20%	20%초과시				
		-전체 ±25㎜ 허용오차									
		○ 시공상세도 작성 및 활용	3	충실작성 및 활용	일부부족작성 및 활용	상당히 부족	미작성				
		○ 자재생산관리 시스템	3	극히 양호	양호	보통	불량				
	시설물등의 균열 및 마무리 상태	○ 주요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5~7 ( )	없음	~0.2㎜ 소수	~0.2㎜ 다수, 0.2~0.4㎜ 소수	0.4㎜~				
		○ 기타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3	없음							
		○ 콘크리트 등 주요구조물 마무리상태	5~7 ( )	극히 양호	소수	보통	불량				
	공정별 점검 및 기록관리 실적	○ 공사일지 등 작성	1	작성충실	일부미흡	형식적 작성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 시공단계별 자체점검률	3	100%	90%	80%	60%				
	내구성 및 배수방수상태	○ 내구성	1	극히양호	양호	보통	불량				
		○ 배수방수상태	3	극히양호	양호	보통	불량				
2. 공정관리 (10~15)	과학적 공정관리	○ 공정표 작성 및 기법 여부	2~4 ( )	충실작성 및 최신기법	충실작성 및 재래기법	형식적 작성 및 재래기법	미작성				
	공사기간내 시행여부	○ 추진계획 대비실적	4~6 ( )	계획초과	정상	5% 이하 지연	5% 초과 지연				
	공사난이도	○ 공사장주변 여건	2	산악, 도심지	심한 구릉지 및 연약지반 도심지 주변	구릉지 및 연약지반	평지				
		○ 시공난이도	2~3 ( )	100%	90%	80%	80% 미만				
3. 하도급 관리 (9~10)	하도급 계약 적정	○ 저가하도급 여부	3~4 ( )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공사비 지불 적정	○ 대금지불시기	2	적기지불	5일 이상지연	10일 이상 지연	15일 이상 지연
	하도급계열화 및 관리	○ 적정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준수	2	모두 준수	1건 미준수	2건 미준수	3건 미준수
		○ 하도급업체와 협조체제 -공사현장관련 세부조직도 작성여부 -업무협조 및 관련자료 협조 등 -공정별 사후관리	2	모두 준수	1건 미준수	2건 미준수	3건 미준수
4. 기술개발 (9~10)	신기술도입 및 공법 개선	○ 신기술도입 건수	2	2건 이상	있음	없음	-
		○ 공법개선 건수	3~4 ( )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 적정공법 선택비율	2	100%	90%	80%	80% 미만
	기술정보자료 활용	○ 관련자료 비치 및 정보전산화정도(공사관련 전문서적, 신공법기술서적, 시청각자료 등)	2	적정자료비치 및 완전전산화	적정자료비치 및 전산화 미흡	일부자료 및 전산화 미흡	일부자료 및 전산화 미실시
5. 안전 및 환경관리 (5)	안전관리비 활용 및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계획시행상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활용비율 -위험안전표지판 설치상태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2	100%	90%	80%	80% 미만
	주변환경과 친화성	○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	1	충실한 수행 및 시행	충실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	계획 및 실시 미흡	계획미수립
		○ 환경보호의 자원절약 -폐자재 발생비율	2	2%	5%	10%	15% 이상
6. 현장관리 (7~10)	행정지시사항 이행	○ 지시사항 이행실태 및 민원처리 여부	1~2 ( )	신속적정 이행	3일 이내 지연	5일 이내 지연	5일 이상 지연
	인원배치 적정성	○ 현장인원배치 및 경력	2~3	100%상주 10년 이상 50% 이상	90%상주 5년 이상 50% 이상	80%상주 5년 이상 50% 이상	70%상주 5년 이상 50% 이상
	시공계획	○ 시공계획서 작성 및 시행 여부	2	충실작성 및 시행	충실작성 및 일부시행	작성 및 일부 시행	미수립
	현장정돈상태	○ 지적내용 -자재 산재 방치 -사용기구 방치 -쓰레기 방치	2~3 ( )	없음	1건 지적	2건 지적	3건 지적
7. 기 타 (10~15)	공사특성에 따른 발주기관의 평가	○ 공사특성에 따른 기준	10~15 ( )				
합 계			100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평가표의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및 배점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는 시공평가표의 평가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시공평가총괄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시 공 평 가 총 괄 표

공사발주관서명 : 공사비단위 : 백만원

순위	공사명	공사 개요	공사 구분	공 사 비	공사 기간	시공회사	대표자	평점	비 고

30306-03411인 210㎜×297㎜ 93.12.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설계용역평가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1999.12.6>

설 계 용 역 평 가 표

용역발주청 : 확인자 : 발주청 (인)

관계자 : 용역평가자 (인)

용 역 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개요	착공 (용역기간)	과 업 내 용	
	준공	용 역 금 액	
평가항목		평 가 연 월 일	

계	배점	세 부 평 가 항 목	평 점	비 고
1. 사전조사	25~35	사전자료조사 적정여부		
		토질, 기초조사, 시험 적정여부		
		현장측량 적정여부		
		자재기준 제시 여부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정도		
2. 구조계산	10~20	구조계산 적정여부		
		구조계산결과 적용 적정여부		
		구조물 설계위치 적정여부		
3. 내역산출	10~20	수량산출 적정여부		
		공사비산출(견적)내용 적정여부		
4. 도서작성	25~35	설계서 작성 적정여부		
		공사시방서 작성 적정여부		
		설계도면 작성 적정여부		
		기술자 서명날인 적정여부		
		설계자문 결과 적용여부		
5. 기 타	10~15	각종 시정지시 이행여부		
		친환경건설설계 반영여부		
		건설폐자재활용 설계반영 여부		
		신기술 적용여부		

※ 비 고

1. 설계완료후의 평가표는 위 평가표를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50% 적용).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상 위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설계결과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5점의 범위안에서 각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우수건설업자지정결과통보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신설 1999.12.6>

우수건설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1. 지정현황

우수건설업자명	면 허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2. 시공능력평가 총괄표

순위	건설업자명	시공평가점수	하자발생감점	하도급위반감점	기술개발투자가점	부실벌점감점	KSA인증가점	50억원이상건수가점	200억원이상건수가점	시공능력평점	우수건설업자지정여부

3. 우수건설업자별 지정요건 우수건설업자명 :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여부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사실		있음	없음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3) 하도급관련 벌금형 받은 사실		있음	없음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여부 등	
(1) 시공평가평점이 90점 이상 여부 및 시공능력평가업체 10% 이내		평가평점(점) 대상업체수(개)	
(2) 3년간 시공평가 90% 이상 80점 이상 여부		있음	없음
(3) 5년간 당해면허보유 여부		있음	없음
(4) 면허취소여부		있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